

저소득층 노후소득 보장을 위한 공사연계연금 연구

2017. 3

정원석 · 강성호 · 마지혜

머 리 말

우리나라는 노인 절반이 빈곤층일 정도로 노인빈곤 문제가 심각하다. 정부는 이러한 심각한 노인빈곤을 완화하기 위해 일정 소득수준 이하의 노인들에게 생활비를 지급하는 기초연금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노후빈곤에 대한 근본적인 처방이 될 수 없고 2040년에는 매년 100조 원 이상의 재정 지출을 발생시켜 향후 정부 재정에 큰 부담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미래의 노후빈곤을 해결하기 위한 가장 근본적인 방법은 은퇴 이후 빈곤층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은 중·저소득층이 충분한 연금자산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하지만 현재 국민연금과 퇴직연금으로 기대할 수 있는 노후소득은 낮은 수준이며, 세금을 경감해 주는 방식으로 제공되고 있는 사적연금에 대한 세제혜택은 충분한 사적연금 가입유인을 제공해주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현재 정책상의 한계를 뛰어넘어 중·저소득층에 충분한 사적연금 납입유인을 제공할 수 있는 방안으로 사적연금 가입에 대한 보조금 지급을 들 수 있다. 본 보고서에는 사적연금에 대한 보조금을 지급한 나라들의 사례와 성과를 살펴보고, 우리나라에 사적연금 보조금 제도를 도입할 경우 어떠한 효과가 있는지, 그리고 보조금 지급으로 인한 재정지출과 이를 통한 연금자산 축적효과는 얼마나 되는지를 종합적으로 분석한 결과를 담았다.

국민의 노후소득원 확보에 대한 염려와 복지 수준의 확대 요구가 커지고 있다. 본 연구가 국민의 노후소득원 확보와 미래 국가재정의 안정적 운용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게 하는데 작은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마지막으로 본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자 개인의 의견이며 우리 원의 공식적인 의견이 아님을 밝혀 둔다.

2017년 3월
보 험 연 구 원
원장 한 기 정

■ 목차

요약 / 1

I. 서론 / 13

1. 연구배경 및 목적 / 13

II. 해외 사적연금 보조금 정책 / 20

1. 독일 - 리스터연금 / 20

2. 뉴질랜드 - 키위플랜 / 36

3. 소결 / 45

III. 공사연계연금 효과분석 / 48

1. 공사연계연금 설계원칙 / 48

2. 분석자료 및 분석가정 / 49

3. 분석결과 / 54

IV. 공사연계연금 도입 방안 / 82

1. 제도설계 개요 / 82

2. 소결 / 87

V. 결론 / 88

| 참고문헌 | / 90

| 부록 |

I. 소득계층별 가입률을 고려한 지원효과 / 93

II. 소득대체율 산출사례 / 96

■ 표 차례

- 〈표 I-1〉 기초연금 재정소요 예상 / 13
- 〈표 I-2〉 은퇴기 소득계층 이동 / 14
- 〈표 II-1〉 리스터연금 가입액과 보조금 확대 / 24
- 〈표 II-2〉 리스터연금 가입대상 / 25
- 〈표 II-3〉 미혼 가구주의 소득에 따른 리스터연금 보험료 및 보조금 / 28
- 〈표 II-4〉 두 자녀가 있는 가구의 소득에 따른 리스터연금 보험료 및 보조금 / 28
- 〈표 II-5〉 리스터연금 가입형태별 가입자 추이 / 30
- 〈표 II-6〉 리스터연금 보조금 지급의 저축유인효과 / 35
- 〈표 II-7〉 키워플랜의 가입자 수 증가 추이 / 40
- 〈표 II-8〉 기본가입요율 변경과 키워플랜 납입수준 비율 / 43
- 〈표 II-9〉 연도별 가입거부(Opt-out)자 숫자 / 44
- 〈표 II-10〉 독일과 한국의 공사적연금 소득대체율 비교 / 46
- 〈표 II-11〉 리스터연금과 키워플랜 요약 / 47
- 〈표 III-1〉 시나리오별 공사연계연금 기본가정 / 52
- 〈표 III-2〉 추가가정 / 53
- 〈표 III-3〉 리스터연금형 공사연계연금의 지원 효과(연간기준)
: 4인 가구(두 자녀 부부) / 55
- 〈표 III-4〉 리스터연금형 공사연계연금의 지원 효과(연간기준): 1인 가구 / 56
- 〈표 III-5〉 리스터연금형 공사연계연금 소득대체율 추정
: 4인 가구(두 자녀 부부) / 57
- 〈표 III-6〉 리스터연금형 공사연계연금 소득대체율 추정: 1인 가구 / 58
- 〈표 III-7〉 연금저축형 공사연계연금의 지원 효과(연간기준)
: 4인 가구(두 자녀 부부) / 59
- 〈표 III-8〉 연금저축형 공사연계연금의 지원 효과(연간기준): 1인 가구 / 60
- 〈표 III-9〉 연금저축형 공사연계연금 소득대체율 추정
: 4인 가구(두 자녀 부부) / 61
- 〈표 III-10〉 연금저축형 공사연계연금 소득대체율 추정: 1인 가구 / 63

■ 표 차례

- 〈표 Ⅲ-11〉 공적연금 보충형 공사연계연금의 지원 효과(연간기준)
: 4인 가구(두 자녀 부부) / 64
- 〈표 Ⅲ-12〉 공적연금 보충형 공사연계연금의 지원 효과(연간기준): 1인 가구 / 65
- 〈표 Ⅲ-13〉 공적연금 보충형 공사연계연금 소득대체율 추정
: 4인 가구(두 자녀 부부) / 66
- 〈표 Ⅲ-14〉 공적연금 보충형 공사연계연금 소득대체율 추정: 1인 가구 / 67
- 〈표 Ⅲ-15〉 리스터연금형 보조금 지급 전후 소득계층 이동 / 69
- 〈표 Ⅲ-16〉 리스터연금형 보조금 지급에 따른 가입기간별 노인빈곤율 추정 / 70
- 〈표 Ⅲ-17〉 연금저축형 보조금 지급 전후 소득계층 이동 / 71
- 〈표 Ⅲ-18〉 연금저축형 보조금 지급에 따른 가입기간별 노인빈곤율 추정 / 71
- 〈표 Ⅲ-19〉 공적연금 보충형 보조금 지급 전후 소득계층 이동 / 72
- 〈표 Ⅲ-20〉 공적연금 보충형 보조금 지급에 따른 가입기간별 노인빈곤율 추정 / 73
- 〈표 Ⅲ-21〉 리스터연금형 보조금 지급에 따른 재정부담 효과 / 74
- 〈표 Ⅲ-22〉 연금저축형 보조금 지급에 따른 재정부담 효과 / 75
- 〈표 Ⅲ-23〉 공적연금 보충형 보조금 지급에 따른 재정부담 효과 / 76
- 〈표 Ⅲ-24〉 리스터연금형 공사연계연금 빈곤여부별 재정지원 효과 / 77
- 〈표 Ⅲ-25〉 연금저축형 공사연계연금 빈곤여부별 재정지원 효과 / 78
- 〈표 Ⅲ-26〉 공적연금 보충형 공사연계연금 빈곤여부별 재정지원 효과 / 79

■ 그림 차례

- 〈그림 Ⅱ-1〉 독일의 노후소득 보장체계 / 21
- 〈그림 Ⅱ-2〉 리스터연금 가입형태별 가입자 추이 / 31
- 〈그림 Ⅱ-3〉 사적연금 종류별 가입률 / 32
- 〈그림 Ⅱ-4〉 보충적 사적연금 가입률 / 32
- 〈그림 Ⅱ-5〉 연령별 리스터연금 가입률 변화 / 33
- 〈그림 Ⅱ-6〉 자녀 숫자별 리스터연금 가입률 / 33
- 〈그림 Ⅱ-7〉 소득계층별 리스터연금 가입률 / 34
- 〈그림 Ⅱ-8〉 리스터연금 도입 이후 소득계층별 연금지출변화 / 35
- 〈그림 Ⅱ-9〉 키위플랜 가입거부(Opt-out)비율 / 38
- 〈그림 Ⅱ-10〉 키위플랜의 가입자와 증가 추이 / 40
- 〈그림 Ⅱ-11〉 키위플랜 도입 이후 사적연금 가입률 / 41
- 〈그림 Ⅱ-12〉 뉴질랜드 소득계층 분포와 키위플랜 가입대상자 가입률 / 41
- 〈그림 Ⅱ-13〉 키위플랜 납입금의 소득 원천별 분포 / 42
- 〈그림 Ⅱ-14〉 납입금 옵션 선택 비율 / 43
- 〈그림 Ⅱ-15〉 자동가입 대상자 중 가입거부(Opt-out) 비율 / 44

The effects analysis of private pension subsidy

Old age poverty rate in Korea is 49.6% which is the highest among OECD countries. To deal with the problem, Korean government introduced basic pension which is paid from the government budget. However, basic pension expenditure will become 100 trillion KRW in 2040 that will be a serious financial burden for the government. Moreover, basic pension could not be a fundamental solution for old age poverty problem.

To cope with the aging and old age poverty problem, developed countries such as Germany and New Zealand are giving subsidy to private pension subscribers which gives strong incentive to accumulating pension fund. For example after introducing Riester pension in Germany, the number of private pension subscribers has grown to more than 16 million within 10 years and in New Zealand, during 5 years, after starting to give private pension subsidy, private pension participation rate has been increase from 20% to 65%.

We design a simple private pension subsidy model and assess the policy effect. We find that, if Korea implement the private pension subsidy policy, One KRW subsidy will lead 2 to 3 KRW pension savings and increased pension saving will reduce old age poverty rate up to 6%p. We also find that though the government will need to spend up to 10 trillion KRW a year to practice the policy that spending will be smaller than basic pension expenditure.

We also provide detail suggestions such as criterions of subscribers and some rules for financial institutions and government to implement the policy in Korea.

요약

I. 서론

1. 연구 배경 및 목적

- 현재 OECD 1위인 65세 이상 노인빈곤율은 2012년 기준 48.5%에서 2013년 기준 49.6%로 또 다시 증가함.
 - 심각한 노인빈곤 문제 완화를 위해 정부는 일정소득 이하 노인들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기 시작하였음.
 - 기초연금은 빈곤층 노인의 생활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나, 이로 인한 재정지출이 2040년에는 100조 원에 달해 정부 재정에 큰 부담이 될 것으로 예상됨.
- 심각한 노인빈곤과 이로 인한 재정지출의 근본적인 원인은 상당수 국민들이 은퇴 이후 사용할 충분한 노후소득원을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임.
 - 은퇴 이후 소득계층 이동을 살펴본 연구에 따르면 은퇴 이후 빈곤층으로 전락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조사됨.¹⁾
 - 고소득층이 은퇴 이후 빈곤층으로 전락하는 경우는 20% 수준으로 나타난 반면, 중산층이 은퇴 이후 빈곤층으로 전락하는 경우는 53%, 빈곤층이 은퇴 이후 빈곤층에 머무는 경우는 80%에 달함.
 - 따라서, 중산층과 저소득층이 충분한 노후소득원을 확보하도록 유인하는 것이 노인빈곤을 완화의 핵심임.

1) 정원석·김미화(2015).

- 정부는 국민의 노후소득원 확보를 위해 국민연금과 퇴직연금을 의무화하였으나 이로부터 기대되는 소득대체율은 40% 수준에 불과함.
 - 따라서 OECD가 권고하는 70%의 소득대체율을 달성하고 심각한 노인빈곤율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개인연금의 활성화가 필요함.
 - 특히 노후 빈곤층으로 전락하는 비율이 높은 저소득층과 중산층의 연금자산 확충을 위한 개인연금 활성화가 절실함.

- 하지만 대표적인 개인연금인 연금저축에 가입한 중·저소득층 비율이 매우 저조해 이들 계층의 연금저축 납입유인 제공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남.
 - 2015년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세제적격 연금저축(이하 연금저축)에 가입한 근로자의 비율은 13.2%에 불과함.
 - 특히 전체 근로자의 81.5%를 차지하는 연소득 4,000만 원 이하 근로자의 연금저축 가입률은 4.7%에 불과함.
 - 이는 중·저소득계층에 과세미달자가 많은 점 등의 문제로 인해 세제혜택으로는 이들 소득계층에 연금저축 납입유인을 제공할 수 없기 때문임.

- 중산층과 저소득층의 연금저축 가입 및 납입유인 제고를 위해 선진국의 사례를 참고하여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음.
 - 본 보고서에서는 선진국의 사적연금에 대한 보조금 지급사례를 살펴보고 시사점을 도출함.
 - 보조금 제도를 우리나라에 도입할 경우 노인 빈곤완화 효과와 저축유인효과 그리고 재정지출규모를 추정하였음.

II. 해외 사적연금 보조금 정책

1. 독일 - 리스터연금

- 독일은 2001년 45년 가입자 기준 70%던 소득대체율을 2030년까지 58.5%로 하향조정하는 공적연금 개혁을 단행함.
 - 공적연금 개혁과 함께 줄어든 노후소득 부족분을 보충하기 위해 공적연금이 가입자가 사적연금 가입 시 보조금을 지급하는 ‘리스터연금’을 도입함.
 - 독일 사회노동청(BMSA)은 공적연금 가입자가 리스터연금을 가입 시 공적연금 개혁으로 인한 공적연금 감소분을 충당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
- 리스터연금은 공적연금 가입자가 가입할 수 있으며 가입금액은 연소득의 4%(최대 2,100유로)이며 보조금 수준은 가입자 가족 숫자에 따라 결정됨.
 - 부부의 경우 가입자 본인과 배우자 한 사람당 154유로(독신의 경우에도 154유로)가 보조금으로 지급되며, 자녀 한 사람당 185유로의 보조금이 추가로 지급됨.
 - 단, 보조금이 리스터연금 가입금액(연소득의 4%)을 초과할 경우 가입자는 최소납입금액 60유로를 납입해야 함.

〈요약 표 1〉 두 자녀가 있는 가구의 소득에 따른 리스터연금 보험료 및 보조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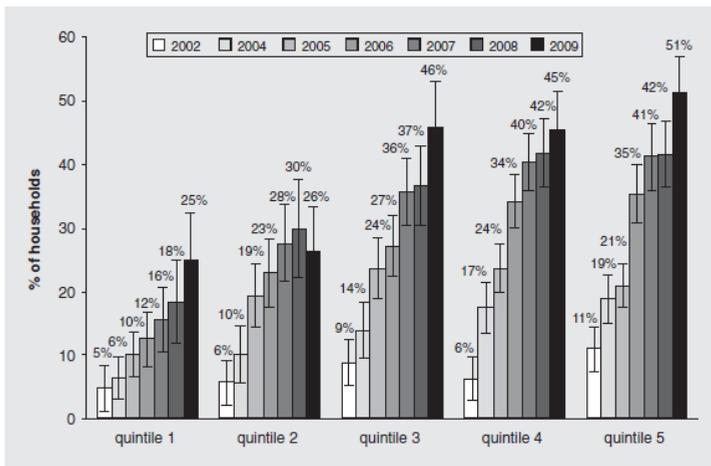
(단위: 유로, %)

전년도 소득	기본보조금	자녀보조금	본인부담	전체 납입보험료	추가적 세금혜택	지원금비중
5,000	308	370	60	738	-	92
15,000	308	370	60	738	-	92
25,000	308	370	322	1,000	-	68
40,000	308	370	922	1,600	-	42
50,000	308	370	1,322	2,000	-	34
75,000	308	370	1,422	2,100	-	32
100,000	308	370	1,422	2,100	14	33

- 리스터연금 도입 이후 가입자 숫자는 꾸준히 증가하여 2016년 1분기 현재 가입자 수는 1,648만 명에 이르고 있음.
 - 계약형태별로는 보험계약이 66.5%로 가장 많고, 은행계약이 4.9%, 펀드계약이 19% 그리고 주택리스터연금 계약이 9.7%로 나타남.

- 특히, 저소득층의 리스터연금 가입률은 2002년 5%에서 2009년 25%까지 5배 성장하였음.
 - 과거 과세미달로 인해 세제혜택을 받지 못하던 저소득층이 결정세액 유무와 상관없이 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된 부분이 작용한 것으로 보임.
 - 리스터연금의 파격적인 보조금 수준 역시 가입자유인의 요인으로 판단됨.
 - 최근 연구는 리스터연금 지원금으로 정부가 1유로를 지출했을 때 약 2~2.4유로의 노후자금이 추가로 축적된 것으로 추정하였음.

〈요약 그림 1〉 소득계층별 리스터연금 가입률



자료: Axel Börsch-Supan et al(2012).

2. 뉴질랜드 - 키위플랜

- 뉴질랜드는 1989년 이후 사적연금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는 대신 연금납입에 대한 세제혜택을 중단하는 정책기조를 유지하였음.
 - 이후 퇴직연금 가입률은 2003년 13.89%에서 2011년 10.38%로 지속적으로 감소하였음.
 - 이러한 가입자의 감소는 슈퍼에누에이션 형태로 운용되는 뉴질랜드 퇴직연금 기금의 지속성에 심각한 위협이 되었음.

- 지속적인 연금가입자 감소에 대한 대응으로 자동가입과 보조금 지급을 통한 사적연금 가입유인 제공을 골자로 하는 임의가입형 퇴직연금(KiwiSaver, 이하 키위플랜)이 도입되었음.
 - 18세 이상 근로자는 첫 취업 시 자동적으로 키위플랜에 가입하게 됨.
 - 단, 본인이 원하지 않으면 8주 이내에 키위플랜 가입을 거부할 수 있음.
 - 또한, 직장이 없더라도 가입이 가능하며 정부보조금 역시 수령할 수 있음.
 - 사업주 역시 키위플랜에 가입한 근로자 연간 급여의 3%를 키위플랜에 함께 납입해야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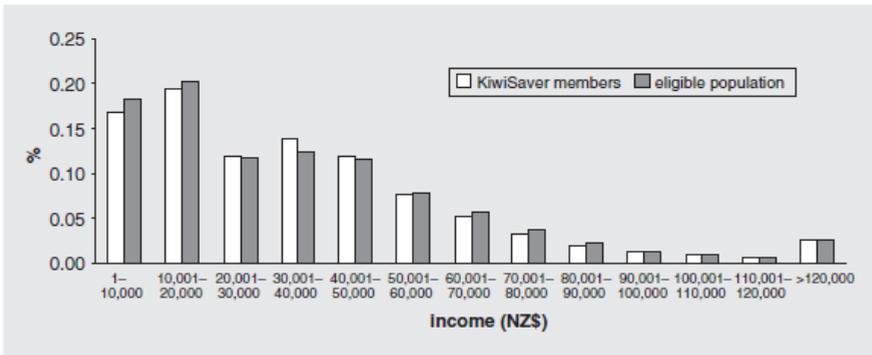
- 키위플랜에 최소납입금액 이상을 납입하고 있는 가입자는 정부로부터 보조금을 수령할 수 있음.
 - 최초가입 시 초기보조금 1,000NZD(뉴질랜드 달러)를 수령하며, 이후 가입자 납입금 1NZD 당 0.5NZD를 보조금으로 수령할 수 있음.
 - 단, 1년에 수령할 수 있는 보조금의 최대액수는 521.43NZD로 제한됨.
 - 3년 이상 가입자가 생애최초 주택 구입 시 가입기간 1년당 1,000NZD, 최대 5년에 대해 5,000NZD를 수령할 수 있음.

- 키위플랜 도입 첫째 71.6만 명에 불과하던 가입자 수는 2013년 214.7만 명으로

성장하였음.

- 또한 키위플랜 도입 이전 20% 수준이던 사적연금 가입률은 2013년 65%를 상회할 정도로 성장함.
- 특히 모든 소득계층에서 키위플랜 가입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요약 그림 2〉 뉴질랜드 소득계층 분포와 키위플랜 가입대상자 가입률



자료: 뉴질랜드 국세청(2011).

Ⅲ. 공사연계연금 효과분석

1. 공사연계연금 설계원칙

- 본 연구에서 제안하고 있는 공사연계연금의 설계원칙은 다음과 같음.
 - 첫째, 공적연금 가입을 전제로 공사연계연금에 가입하도록 함.
 - 둘째, 중산층 이하의 가입자에 대해 재정적 지원이 수반되어야 함.
 - 셋째, 제도 운영에 있어 공사협력(감시 및 감독은 정부, 적립금의 관리, 운영 및 지급은 금융기관)을 기본 모델로 하여야 함.
 - 넷째, 노후소득 보장 강화를 위해 종신연금 수령을 원칙으로 함.

2. 분석자료 및 분석가정

가. 분석자료

- 분석을 위해 통계청 가계동향조사(2015년 기준)의 소득수준, 가구형태 그리고 공적연금 가입여부 등의 분포를 활용하였음.

나. 분석가정

- 노후소득 보장 및 보조금 지원 수준을 파악하기 위해 보조금 지급 방식을 크게 3가지 시나리오(안)로 설정하였음.
 - 첫 번째 안은 독일의 보조금 수준을, 두 번째 안은 현행 연금저축 수준의 보조금을, 세 번째 안은 국민연금 목표 소득대체율인 40%를 달성할 수 있는 수준의 보험료 및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설정함.
 - 공적연금 가입자를 대상으로 하며, 최소 가입기간은 10년, 연금수령 기간은 65세 이후 20년, 수지상등의 원칙 등을 공통적으로 가정함.
- 보조금 지원에 따른 빈곤개선 및 재정부담 효과를 추정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추가가정을 설정함.
 - 첫째, 현재 근로세대인 대상자가 노인세대가 되는 상황을 가정함.
 - 둘째, 빈곤선은 중위소득의 50%로 함.
 - 셋째, 빈곤율은 빈곤선 이하에 있는 사람의 비율로 하였으며, OECD에서 발표한 2013년 기준 노인빈곤율 49.6%을 현재 노인빈곤율²⁾로 사용함.
 - 넷째, 전체 재정 효과를 추정하기 위해 가계동향조사 자료의 모집단 가중치를 적용함.

2) 보조금 지원 전의 노인빈곤율을 '기준노인빈곤율'이라는 의미로 사용함.

3. 분석결과

가. 공사연계연금의 지원수준 및 노후소득 개선 효과

- 독일의 보조금 지급 수준과 방식을 우리나라에 적용한 리스터연금형 공사연계연금의 효과는 다음과 같이 추정되었음.
 - 납입보험료 대비 지원금 수준은 소득수준에 따라 다르며, 4인 가구의 경우 50.7~94.8%, 1인 가구의 경우 19.6~76.6% 수준인 것으로 추정됨.
 - 공사연계연금에 20년 가입 시 발생할 소득대체율은 4인가구의 경우 2.1~37.5% 증가하고 1인 가구는 2.1~8.3% 증가하는 것으로 추정됨.

- 기존 연금저축 수준의 보조금을 지급하는 연금저축형 공사연계연금의 효과는 다음과 같이 추정되었음.
 - 납입보험료 대비 지원금 수준은 소득수준에 따라 다르며, 4인가구의 경우 24.1~86.1%, 1인가구 15.4~58.3% 수준인 것으로 추정됨.
 - 공사연계연금에 20년 가입 시 발생할 소득대체율은 4인가구의 경우 3.1~17.9%, 1인 가구의 경우 3.1~6.0% 증가하는 것으로 추정됨.

- 공적연금의 소득대체율을 달성하기 위한 수준의 보험요율과 보조금이 지급되는 공적연금 보충형 공사연계연금의 효과는 다음과 같이 추정되었음.
 - 납입보험료 대비 지원금 수준은 소득수준에 따라 다르며, 4인가구의 경우 25.6~86.1%, 1인 가구의 경우 15.7~58.3% 수준인 것으로 추정됨.
 - 공사연계연금에 20년 가입 시 발생할 소득대체율은 4인가구의 경우 5.4~35.7%, 1인 가구의 경우 5.4~11.9% 증가하는 것으로 추정됨.

나. 보조금의 탈빈곤 및 빈곤율 완화 효과

- 리스터연금형 공사연계연금 도입 시 노인빈곤율은 최대 2.9%p 감소할 것으로 추정됨.
 - 상대빈곤선이 변하지 않을 경우 가입기간 10년(20년, 30년) 기준으로 빈곤층의 0.3%(0.9%, 1.1%), 중산층의 1.8%(3.8%, 6.0%)가 상향이동하고 고소득층은 변하지 않음.
 - 전체 공적연금 가입자가 10년, 20년, 30년, 40년간 공사연계연금 가입 시 노인 빈곤율은 각각 0.7%p, 1.7%p, 2.2%p, 2.9%p 감소할 것으로 추정됨.

- 연금저축형 공사연계연금 도입 시 노인빈곤율은 최대 2.7%p 감소할 것으로 추정됨.
 - 상대빈곤선이 변하지 않을 경우 가입기간 10년(20년, 30년) 기준으로 빈곤층의 0.3%(0.9%, 1.1%), 중산층의 1.1%(2.7%, 4.0%)는 상향이동, 고소득층은 변하지 않음.
 - 전체 공적연금 가입자가 10년, 20년, 30년, 40년간 공사연계연금 가입 시 노인 빈곤율은 각각 0.6%p, 1.3%p, 2.0%p, 2.7%p 감소할 것으로 추정됨.

- 공적연금 보충형 공사연계연금 도입 시 노인빈곤율은 최대 5.9%p 감소할 것으로 추정됨.
 - 상대빈곤선이 변하지 않을 경우 가입기간 10년(20년, 30년) 기준으로 빈곤층의 0.9%(1.7%, 3.2%), 중산층의 2.7%(5.5%, 9.1%)는 상향이동, 고소득층은 변하지 않음.
 - 전체 공적연금 가입자가 10년, 20년, 30년, 40년간 공사연계연금 가입 시 노인 빈곤율은 각각 1.3%p, 2.9%p, 4.5%p, 5.9%p 감소할 것으로 추정됨.

다. 재정부담 효과 및 평가

- 리스터연금형 공사연계연금 도입 시 필요한 재원은 연간 8.4조 원으로 추정되었으며, 연금저축형의 경우 연간 5.1조 원 그리고 공적연금 보충형의 경우 연간 10.4조 원의 재원이 필요할 것으로 추정되었음.
- 공사연계연금과 기초연금에 대해 빈곤개선 대비 재정부담 효과를 비교해 보면 공사연계연금이 비용효과적인 것으로 분석됨.
 - 공적연금 보충형 연계연금이 투입되는 10.4조 원 중 빈곤층에게 지급되는 연간 2.8조 원의 보조금이 꾸준히 지급될 경우 빈곤율은 최대 6%p 완화될 것으로 추정됨.
 - 반면, 기초연금은 2015년에 10조 원 규모에서 2040년에는 100조 원의 재원이 예상되고, 이로 인한 노인빈곤율 완화 효과가 약 10%p(45.1% → 34.7%)로 추정된 사례가 있음(이용하·김원섭 2013).
 - 이를 통해 볼 때 공사연계연금의 투입 재정대비 노인빈곤 완화 효과는 공사연계연금이 기초연금에 비해 큰 것으로 추정됨.

IV. 공사연계연금 도입 방안

- 우리나라 공사연계연금의 가입자격은 공적연금 가입자로 한정하고, 지급하는 보조금 수준은 공적연금이 목표하고 있는 소득대체율을 달성할 수 있는 수준으로 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공적연금의 기능을 보완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지원금의 수준을 소득계층별로 차별화하는 것 역시 고려할 수 있음.
- 공사연계연금의 원활한 보급을 위해 뉴질랜드 키위플랜과 같이 근로자 자동가입

제도를 도입하고 근로자가 아닌 경우 국민연금 임의가입을 전제로 공사연계연금에 가입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단, 고용주는 이미 퇴직연금 가입이 의무화되어 있으므로 고용주에게는 추가적인 기여금 부담을 부과하지 않음.

■ 국가의 재정이 투입되는 만큼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가입자 납입금 및 보조금의 원금보장의무를 지우고 적정 사업비 및 수수료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둘 필요가 있음.

○ 또한 공사연계연금을 통한 투자에 대한 수익과 위험성에 대한 충분한 설명의무를 부과해야 함.

■ 정부는 상품인증기준 및 가입자격 심사 검증을 위한 공사연계연금 사무국을 개설 운영함.

○ 사무국은 소득검증을 위한 국세청, 자동가입을 위한 고용노동부 그리고 국민연금 가입여부 검증을 위한 복지부 등과 협업함.

V. 결론

■ 우리나라의 심각한 노인빈곤율의 원인은 중·저소득층이 충분한 노후소득원을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임.

○ 따라서 이들 계층에 충분한 연금저축 납입유인 제공을 통한 노후빈곤층 전략 방지는 미래의 더 큰 재정지출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음.

– 무엇보다 충분한 노후소득 확보로 인한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은 단순한 재정지출 감소보다 훨씬 더 긍정적인 효과임.

■ 독일과 뉴질랜드 사례를 활용하여 사적연금에 대한 보조금 지급의 효과를 검토

한 결과 보조금 지급은 노후빈곤 완화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분석됨.

○ 보조금 지급은 이로 인한 재정지출의 2~3배 노후소득원을 확보하도록 유도하고 노인빈곤율을 최대 6%p 감소시킬 것으로 예상되었음.

- 보조금 지급을 전제로 하는 공사연계연금 도입을 위해서는 정책 추진 주체인 공적영역과 서비스전달의 주체인 사적영역의 적극적인 협력이 필요함.

I. 서론

1. 연구배경 및 목적

가. 연구배경

우리나라의 OECD 기준 65세 이상 노인빈곤율은 2012년 48.5%에서 2013년 49.6%로 또 다시 증가하였다(2014년 기준 48.8%로 다소 감소). 이러한 심각한 노인 빈곤 문제는 개인의 문제를 넘어 노인빈곤 완화를 위한 대책이 대선공약이 될 정도로 사회적 이슈가 되었다. 그리고 이에 대한 대책으로 소득이 일정한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노인을 대상으로 매월 약 20만 원을 지급하는 기초연금이 도입되었다. 빈곤층 노인에 대한 기초연금 지원은 당장의 빈곤층 노인의 생활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나, 이로 인한 재정지출은 향후 연간 100조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어 향후 정부 재정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표 1-1〉 기초연금 재정소요 예상

(단위: 조 원)

구분	2013년	2020년	2030년	2040년
재정소요	9.6	17.2	49.3	99.8

자료: 보건복지부 설명자료(2013. 9).

심각한 노인빈곤의 근본적인 원인은 근로기에 노후소득원 확보를 위한 충분한 저축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으로 풀이할 수 있다. 정원석·김미화(2015)가 노후보장패널 자료를 바탕으로 분석한 연구에 따르면 근로기 고소득층이 노후 빈곤층으로

전락하는 경우는 20%로 낮은 수준인데 반해 중산층은 53%가 빈곤층으로 전락하였으며, 빈곤층은 80%가 노후에도 빈곤층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따라서 이들 중산층과 저소득층이 노후빈곤에 빠지지 않도록 충분한 저축을 유도하는 것은 노인빈곤을 예방하기 위한 중요한 부분이다.

〈표 1-2〉 은퇴기 소득계층 이동

(단위: 명, %)

구분	1차 조사 (2004년)	이동	4차 조사 (2010년)		
			빈곤	중위	상위
빈곤	720 (40.0)	→	578 (32.1)	138 (7.7)	4 (0.2)
	이동률		80.2	19.1	0.5
중위	866 (48.0)	→	458 (25.4)	390 (21.6)	18 (1.0)
	이동률		52.9	45.0	2.1
상위	216 (12.0)	→	43 (2.4)	141 (7.8)	32 (1.8)
	이동률		19.9	65.2	14.8
합계	1,802 (100)	→	1,079 (59.9)	669 (37.1)	54 (3.0)

자료: 정원석·김미화(2015) 재구성.

우리나라는 국민들의 충분한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 공적연금(국민연금), 준공적연금(퇴직연금) 그리고 개인연금으로 구성된 3층 연금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1층의 국민연금은 일정연령 이상의 모든 국민이 의무적으로 가입하게 하도록 하고 있으나, 주부 혹은 일용직 근로자 등 일정한 소득이 없는 경우 가입에 예외를 두는 등의 가입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 또한 일정한 소득이 있는 당연가입자 역시 은퇴 연령이 53세에 불과하다. 따라서 이러한 짧은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고려하면 국민연금으로부터 기대할 수 있는 소득대체율은 25% 안팎에 불과하다.

2층의 퇴직연금은 2016년부터 퇴직연금 가입의무화로 인해 그 저변이 확대되고 있으며, 가입자는 퇴직연금으로부터 약 15%의 추가적인 소득대체율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농·어민 및 자영업자 등은 퇴직연금에 가입할 수 없다

는 점은 퇴직연금이 제공하는 노후소득원으로서 기능의 한계라고 할 수 있다.

3층의 개인연금¹⁾은 가입에 특별한 조건이 없이 개인의 의사에 따라 금융회사와 금융상품에 관한 계약을 맺는 형태로 이루어진다. 하지만 불확실한 미래 소비를 위해 확실한 현재의 유동성을 자발적으로 포기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따라서 정부는 개인연금을 장려하기 위해 세제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개인연금은 앞서 논의한 국민연금과 퇴직연금의 부족분을 보충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OECD가 권장하는 노후 소득대체율이 70%임을 감안할 때, 우리 국민이 노후를 위해 개인연금에 적립금을 쌓아서 충당해야 할 노후 소득대체율은 약 20~30%에 이른다. 하지만 소득이 낮아 저축여력이 적으며, 특히 여러 가지 공제를 적용할 경우 결정세액이 0원 이하가 되는 저소득층은 은퇴 이후 빈곤층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대비한 개인연금 가입이 저조한 상황이다.

따라서 중산층 및 저소득층의 경우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 공적연금을 든든히 하면서 사적연금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유도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소득대체율을 높이기 위한 방법으로 쉽게 떠올릴 수 있는 방법은 공적연금의 보장률을 인상하는 것이다. 하지만 최근 정치권에서 공적연금 소득대체율을 50%로 높이는 방안에 대한 논의가 있었으나 기여금 대비 지급해야 하는 연금에 필요한 추가적인 재원조달의 문제로 논의가 중단된 사례에서 보듯이, 노인빈곤 문제를 공적연금으로 해결하기는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때문에 국민의 안정적인 노후소득 보장 강화를 위해 사적연금을 강화하는 논의들이 진행되어 왔다. 그리고 지금까지 진행된 많은 논의들은 주로 퇴직연금 측면에서 퇴직연금 도입 의무화 및 개인형 퇴직연금(이하 IRP) 도입 등과 같이 퇴직연금 연속성 강화 등 제도에 관한 논의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다. 그리고 개인연금, 특히 연금저축 활성화를 위한 논의로는 가입 및 납입유인 증대를 위한 연금저축 납입액에 대한 세제혜택 한도 증액에 관한 논의(김병권 외 2013) 그리고 세제혜택 방식 변경

1) 개인연금은 모든 금융기관에서 판매할 수 있고, 적립금 납입 시 세제혜택이 주어지는 세제적격 연금저축(이하 연금저축)과 생명보험사에서만 판매가 가능하고 납입 시 세제혜택이 주어지지 않는 연금보험으로 구분할 수 있으나, 본 보고서에서는 개인연금에 관한 논의를 연금저축에 한정하여 전개함.

에 따른 효과에 관한 논의들(문성훈·김수성 2014)이 주류를 이루어 왔다. 물론 지금까지 논의된 사적연금 활성화 방안 중 퇴직연금은 퇴직연금 가입 대상 확대 및 가입 의무화 등이 실현되어 노후소득 보장에 중요한 발전을 이루었다. 하지만 세제혜택을 중심으로 활성화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개인연금(연금저축)의 경우 결정세액이 0원 이하인 과세미달자의 경우 세금을 감면해 주는 방식인 세제혜택으로는 아무런 개인연금(연금저축) 가입유인을 제공할 수 없다는 한계를 가진다(정원석·문성훈 2016). 그리고 이러한 한계로 인해 연금저축에 관한 세제혜택 한도가 지속적으로 상향조정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015년 국세통계연보를 분석한 결과, 전체 근로자중 연금저축 가입률은 13.2%에 불과하며 특히 전체 근로자의 81.5%를 차지하는 연소득 4,000만 원 이하자의 연금저축 가입률은 4.7%에 머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정원석 2017). 따라서 노후소득 보장 강화를 위한 사적연금 활성화를 위해 기존 세제혜택에 관한 논의에서 진일보한 획기적인 정책방안에 관한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특히 최근 정부는 개인이 연금저축과 연금보험 등 개인연금을 통합 관리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개인연금법을 추진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논의의 연장선상에서 노후소득 보장을 위한 소득대체율을 높이기 위해 해외에서 도입한 바 있는 수익비가 1인 적립금 방식의 사적연금에 보조금을 지급하여 사적연금 가입을 활성화 시키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물론 사적연금 가입자를 대상으로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보다 지금도 사각지대가 존재하는 공적연금에 대한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이 노후소득 보장 강화를 위한 좀 더 근본적인 해법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공적연금에 대한 보조금은 현재도 두루누리 사업 등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으며, 또한 모든 소득계층이 납입한 보험료보다 더 많은 연금을 수령하며, 저소득층의 납입금 대비 최대 4배 이상을 수령하는 공적연금의 구조적 특성상 공적연금 가입자에 보조금을 지급해 공적연금을 확대하는 정책은 향후 연금 수령 시 더 큰 연금재정의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부분을 고려해야 한다. 이러한 문제 때문에 독일 등 선진국들 역시 공적연금의 재정부담을 고려하여 공적연금의 역할을 축소하는 대신 보조금 등을 지급하여 사적연금의 역할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연금체계를 바꿔 나가고 있

다는 점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특히 사적연금에 대한 보조금 지급에는 정부 재정이 투입되는 만큼, 재정지원에 필요한 재원의 소요 및 효과의 측정은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본 보고서에서는 공적 연금 가입자가 사적연금 가입 시 보조금을 지급할 경우 소요되는 재정 부담과 이로 인한 노후소득원 확보 효과를 추정하였다.

나. 선행연구

현재 시행되고 있는 세제혜택을 통한 사적연금에 대한 가입유인 제공이 소득계층별 연금저축 납입액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대표적인 연구로는 정원석·강성호(2015)의 연구를 들 수 있다. 이들은 미시 경제학적 접근으로 2기간 모델을 활용한 이론 분석 및 데이터를 이용한 계량 경제학적 실증분석을 통해 저소득층에 더 많은 세제혜택을 제공하고 고소득층의 세제혜택을 조정하기 위한 세액공제로의 전환이 저축여력이 적고, 결정산출이 낮거나 없는 면세점 이하의 저소득층의 연금저축 증대에 영향을 주지 못하며, 오히려 한계세율 15%를 적용받는 중산층의 연금저축을 줄일 것으로 예측하였다. 문성훈·김수성(2014) 역시 제도에 관한 세무적 분석 및 사례에 관한 시뮬레이션을 바탕으로 세액공제로의 전환이 중산층의 연금저축 납입을 줄일 것으로 예상하였으며, 따라서 연금저축에 관한 세제혜택 방식을 세액공제와 소득공제 중 선택할 수 있도록 할 것을 주장하였다.

세제혜택 변화가 연금저축 소득계층별 납입액에 영향을 미친 것을 소득계층별로 분석한 최초의 연구로는 정원석(2016)의 연구를 들 수 있는데, 동 연구는 국세통계 연보의 통계량을 활용하여 세액공제 전환 이후 저소득층의 연금저축 납입액이 급격히 감소하였음을 보였다. 또한 정원석·문성훈(2016)은 연금저축의 세액공제 전환이 중산층 및 저소득층의 연금저축 납입유인을 감소시켰으며, 그 이유는 세액공제 전환으로 인한 면세점 이하자의 증가 때문이라고 주장하였다. 그리고 세금을 감면해주는 현재 방식으로는 면세점 이하 저소득층에 대한 연금저축 납입유인을 제공할 수 없으므로 면세점 이하자에게 실질적인 연금저축 납입유인을 제공할 수 있는 사적연

금 납입액에 대한 보조금 지급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연금저축 납입액에 대한 보조금 지급은 이미 독일에서 시행 중인데, 독일과 유사한 형태의 사적연금에 대한 보조금 지급이 국민의 노후소득 보장 제고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연구로는 김원섭·강성호(2008)의 연구를 들 수 있다. 이들은 독일의 보조금 지급 제도인 리스터연금을 국내에 도입할 경우 소득대체율이 제고되는 정도를 노동패널 데이터를 이용하여 추정하였다. 조재훈·양성문(2013) 역시 노동패널 데이터를 활용하여 소득분위의 정보를 산출하고 이를 보조금 지급 시 이들의 소득계층이 이동할 확률을 계산하여 정책의 효과를 추정하였다. 하지만 이들 연구는 노후소득 수준의 개선 효과에 초점을 맞추고 비용측면의 논의는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한계를 지닌다.

사적연금에 대한 보조금 지급의 비용과 효용을 모두 고려한 연구는 김원식 외(2016)의 연구를 들 수 있다. 동 연구는 재정패널 데이터를 활용하여 연금저축에 투입한 재정지출 대비 효과가 최소 1.36배에서 최대 8.05배에 이른다고 주장하였다. 하지만 이들의 연구는 소득계층 분포 및 면세점 이하자에 대한 효과를 고려하지 않고 정책의 효과를 분석했다는 한계가 있다. 추가적인 소득이 노후소득 보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에 관한 연구로는 강성호·정봉은·김유미(2016)의 연구를 들 수 있다. 동 연구는 정년연장으로 인해 증가한 소득이 노후소득 보장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였다. 이는 방법론적인 측면에서 소득증가가 노후소득 보장에 미치는 효과를 추정한다는 측면에서 본 연구가 다루고 있는 보조금 지급이 노후소득 보장에 미치는 영향과 유사하다. 하지만 동 연구는 사적연금에 대한 보조금 지급효과를 추정한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본 연구와는 다른 맥락의 연구라 하겠다.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의 한계를 보완하여 보조금 지급 제도 도입 시 재정소요 및 연금적립금 유인 효과를 분석하였다. 그리고 사적연금에 대한 보조금 지급 제도를 우리나라에 도입할 경우 고려해야 할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 논의하였다.

이후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장에서는 독일과 뉴질랜드의 사적연금 가입에 대한 보조금 지급 사례를 통해 보조금 지급이 국민의 사적연금 가입 및 납입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다. 3장에서는 사적연금에 대한 보조금 지급 방식에 대한 설계와 지급 시

노후소득 개선 효과, 탈빈곤효과 그리고 재정투입 및 저축유인효과를 분석한다. 4장에서는 공사연계연금 도입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5장에서는 결론을 맺는다.

II. 해외 사적연금 보조금 정책

1. 독일 - 리스터연금

가. 독일 노후소득 보장 체계

독일은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공적연금, 퇴직연금 그리고 개인연금의 3층 노후 소득 보장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1층의 공적연금은 의무가입이며 직군에 따라 개별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공적연금은 직종에 따라 생산직, 사무직 등을 대상으로 하는 국민연금과 공무원, 법관, 직업군인 등을 대상으로 하는 공무원연금 그리고 농민을 대상으로 하는 농민연금과 예술가, 문학가 등 자유직업인(프리랜서)을 대상으로 하는 특별연금 등으로 나눌 수 있다. 2층은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퇴직연금으로 근로자들이 가입하고 있다. 3층은 개인이 자발적으로 가입하는 개인연금에 해당한다. 이전까지는 공적연금이 노후소득 보장의 대부분을 감당하였으나 독일정부는 2001년 연금개혁을 통해 리스터연금을 도입하여 3층의 개인연금을 강화하고 있다.

독일정부의 노후소득 보장을 위한 정책 기조가 개인연금을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전환하게 된 배경으로는 급속한 인구고령화로 인한 공적연금의 재정문제를 들 수 있다. 현재 독일 공적연금은 적립금이 미미하여 근로기 가입자에게 공적연금 보험료를 수취하여 은퇴자들에게 연금을 지급하는 부과방식(Pay-as-you-go)으로 운영되고 있다. 독일정부의 예상에 따르면 인구고령화로 인해 2000년에는 연금 납입자 100명이 24명의 연금을 책임져야 하며, 2030년에는 43명의 연금을 감당해야 할 정도로 연금의 재정안정성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었다(BMGS 2003). 심각한 부양비 증가는 연금보험료 증가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어 2006년 기준 전체 예산 중 사회보험료 비

중이 41%, 이 중 공적연금 보험료율이 19.5%에 이르는 상황에서 더 이상 사회보험료 인상은 불가능하다는 데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 되었다(Seeleib-Kaiser 2001).

이러한 사회적 공감대에 따라 독일정부는 2001년과 2004년 연금개혁조치를 통해 공적연금 45년 가입자의 소득대체율이 70%에서 2030년에는 58.5%까지 하락하는 대신 공적연금의 보험료율은 장기적으로 안정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Schmaehl 2004), 공적연금 감소분을 적립식으로 운영되는 사적연금으로 충당하기 위해 사적 연금에 대해 보조금을 지급하는 리스터연금을 도입하였다.

〈그림 II-1〉 독일의 노후소득 보장체계



자료: 류건식 외(2017).

나. 리스터연금

1) 리스터연금의 도입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여러 나라에서 인구감소 등으로 인해 부과식(Pay-as-you-go)으로 운영되는 공적연금의 지속가능성 및 사회적 부담에 대한 문제가 제기 되어 공적연금 기능 축소와 더불어 사적기능 강화가 추진되고 있다. 네덜란드의 경우 퇴직연금을 의무화하였으며, 스웨덴은 사적연금 가입을 의무화하는 방식으로 공적연금의 부족분을 보충하였다. 독일 역시 공적연금을 축소하고 사적연금을 강화하

는 추세는 동일하지만, 제도를 통해 사적연금 가입을 강제하는 것이 아니라 보조금을 지급하여 사적연금 가입을 유도한다는 측면에서 앞서 언급한 국가들과 사적연금 확대 방법에 차이를 보인다.

독일의 공적연금을 보완하기 위한 사적연금 보조금 정책은 2001년 연금개혁을 통해 도입되었으며 당시 독일 연방정부의 노동 및 사회보장부 장관 Walter Riester의 이름에서 Riester(리스터)연금으로 알려졌다(이하 리스터연금). 연금개혁에 따라 퇴직연금법이 개정되면서 리스터연금이 도입되고 일정기준을 충족하는(Certified) 대상자들에게 리스터연금에 대한 보조금 지급이 개시되었다. 사적연금 가입자가 보조금을 수령하기 위해 일정한 조건을 충족시켜야 하는 이유는 리스터연금의 도입취지가 공적연금 감소분을 보충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공적연금 가입자만이 리스터연금 가입 및 보조금 수령 대상자가 될 수 있다. 그리고 리스터연금 가입유인은 연금납입액에 대한 보조금과 본인 부담금에 대한 소득공제 형태로 주어지는 것으로 설계되었다.

독일 정부의 연금개혁으로 2008년 50.5%이던 소득대체율이 2023년에는 46.2%로 삭감되나, 리스터연금에 가입한 근로자가 총 소득의 4%에 해당하는 금액을 리스터연금에 적립하고, 리스터연금 가입에 따른 보조금과 적립금이 매해 4%의 운용수익을 낼 경우 공적연금의 감소분을 충당하게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BMAS 2010).

2) 리스터연금의 개요

리스터연금 이전에도 세제적격 개인연금의 경우 납입금에 대해 세제혜택(소득공제)이 있는 사적연금 상품이 존재하였다. 하지만 리스터연금이 기존 사적연금과 차별화되는 점은 세금을 깎아 주는 방식의 세제혜택보다 보조금이 주된 혜택이 되며 세제혜택이 보조금보다 큰 경우에는 그 차액만큼 세제혜택으로 지급한다는 점이다. 따라서 실질적으로는 가입자가 보조금과 세제혜택 중 본인에게 유리한 방식을 선택하는 것으로 볼 수도 있다. 리스터연금의 종류로는 개인연금, 퇴직연금 그리고 주택연금 형태가 있다(김영미 2014). 우리가 흔히 지칭하는 리스터연금은 개인의 선택에

따라 가입하는 개인연금형 리스터연금을 의미하며, 은행, 증권, 금융투자회사, 보험사 등에서 운용하는 연금상품을 의미한다. 우리나라의 연금저축이 상품 제공자에 따라서 연금저축 신탁, 펀드, 보험으로 나뉘는 것처럼 리스터연금 역시 연금제공자의 상품에 따라 크게 리스터연금 보험과 리스터연금 펀드로 나눌 수 있다. 퇴직연금형 리스터연금은 임금의 일부가 퇴직연금으로 납입되는 방식으로 보이²⁾ 인증기준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보조금이 지급되는 특징이 있다. 주택연금형 리스터연금은 2008년 이후 주택마련을 위한 저축으로 적립 시 보조금을 수령하고 실거주를 위한 주택구입 시 적립금을 인출하여 주택구입자금으로 사용할 수 있다. 본 보고서에서는 개인연금형 리스터연금을 중심으로 논의를 전개한다.

3) 리스터연금의 인증조건

2001년 리스터연금이 처음 도입되었을 당시 인증기준은 11가지³⁾였으나 가입자 확대를 위해 2006년 다음과 같은 6가지 조건으로 줄어들었다. 첫째, 적립금과 정부 지원금을 합한 적립금을 연금으로 수령 시 종신연금의 최소 지급액을 보장해야 한다. 둘째, 연금지급 시 성별에 따른 차별 없이 연금액을 결정한다. 셋째, 60세 이전에는 연금지급이 불가능하다(2012년부터는 연금 지급 시점이 62세로 상향조정됨). 넷째, 리스터연금 제공자는 가입자에게 수수료, 비용, 위험도 수익률 등 상품관련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다섯째, 리스터연금의 신계약비 및 수수료 등의 제반 비용은 5년

2) 외형상으로는 사업주가 퇴직연금 기여금을 납입하나 이는 실질적으로 근로자가 원래 받아야 할 전체 임금 중 일부를 사업주가 형태를 달리하여 퇴직연금으로 납입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음.

3) 제도 초기 리스터연금 상품 11가지 인증기준은 다음과 같음. ① 가입자는 정기적이고 자발적인 연금적립금을 납입해야 한다. ② 연금의 지급은 60세와 은퇴연령 중 늦은 시점으로 한다. ③ 연금지급 신청 시에 연금지급이 보장되어야 한다. ④ 연금의 지급은 종신형으로 지급되어야 하며 총 지급액의 합은 적립금의 명목가치 이상이 보장되어야 한다. ⑤ 연금지급은 최소 85세까지 계속되어야 하며 이후에는 최소수준의 연금이 보장되어야 한다. ⑥ 보충적 유족연금 등은 보조금 지급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⑦ 마케팅 및 계약 유지비용은 최소 10년 이상에 걸쳐 상각해야 한다. ⑧ 투자자는 사업비에 관한 자세한 정보를 받아야 한다. ⑨ 가입자는 본인 적립금의 투자처와 수익률 등에 관한 정보를 안내 받아야 한다. ⑩ 가입자는 적립기간 중 일정기간 동안 적립금 납입을 유예할 수 있는 기간을 가질 수 있다. ⑪ 해당 적립금 및 연금수령액은 제3자에게 이전될 수 없다.

이상에 걸쳐 상각해야 한다. 여섯째, 리스더연금의 해약 혹은 납입유예를 원할 경우 각 분기말을 기준으로 가능하다. 단, 대출에 대한 담보로 설정할 수는 없다.

이와 같은 리스더연금 상품 인증기준의 특징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리스더연금 상품 인증 조건이 11가지에서 6가지로 줄어들었으므로 지원과정이 단순화되었다. 둘째, 60세 이후 일시금 수령 가능 비율이 종전 20%에서 30%로 상향조정되고, 가입자의 최소 납입금액이 60유로로 표준화되어 가입자의 가입부담을 줄였다. 셋째, 투자자에 대한 정보전달이 제고되고, 투자옵션 및 포트폴리오 구조 위험도 등이 제공되며, 또한 연금상품 제공자는 투자 안에 대한 여타 옵션과의 비교를 가입자에게 제공해야 하도록 규정하여 투자자에 대한 정보 제공 의무를 강조하였다. 넷째로는 마케팅 및 관리비용(사업비) 상각기간을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하였다. 후술하겠으나 이러한 단순화 작업 이후 리스더연금 가입자 수는 크게 증가하였다.

4) 보조금 및 가입자격

리스더연금의 가입금액과 보조금 지급액은 2002년부터 2008년까지 점진적으로 상향조정되었다. 2002년에는 총 소득 중 1%(최대 525유로)로 출발한 가입금액이 2006년 총 소득의 3%(최대 1,575유로)로 그리고 2008년에는 총 소득의 4%(최대 2,100유로)까지 증가하였다. 보조금 규모 역시 2002년 가입자 한 사람당 연간 기본보조금 38유로, 자녀 한 사람당 보조금 46유로이던 것이 2008년에는 연간 기본보조금 154유로, 자녀 한 사람당 보조금 185유로로 상향조정되었다. 또한 2008년 이후 출생자 자녀에 대해서는 자녀 한 사람당 300유로가 지급된다.

〈표 II-1〉 리스더연금 가입액과 보조금 확대

연도	가입금액 (총 소득 중 %)	기본보조금 (유로/연)	자녀보조금 (유로/연)	소득공제한도 (유로/연)
2002	1	38	46	525
2004/05	2	76	92	1,050
2006	3	114	138	1,575
2008	4	154	185	2,100

자료: Axel Börsch-Supan et al.(2012).

리스터연금에 가입해 보조금을 수령할 수 있는 자격은 공적연금(당연)가입자로 한정되어 있다. 이는 리스터연금의 도입 목적이 줄어드는 공적연금의 부족분을 보충하기 위함이기 때문이다. 이를 자세히 살펴보면 공적연금에 가입되어 있는 군인, 공무원(Civil Servant) 및 근로자와 배우자, 공적연금 당연가입 대상에 속하는 농부 등 자영업자가 포함되며, 비정규직이나 사용자가 사회보험료 납입에 합의한 근로자 및 조기 퇴직연금 수급자 등도 가입대상에 포함된다. 하지만 임금 보충형 사회보장제도 수혜자(실업급여, 양육수당 등) 및 공적연금 당연가입 대상이 아닌 자영업자의 경우 리스터연금 가입이 제한된다. 단, 전업주부의 경우 공적연금에 가입되어 있지 않더라도 배우자가 공적연금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에는 리스터연금 가입이 가능하다.

〈표 II-2〉 리스터연금 가입대상

보조금 수급대상(가입대상)	보조금 미수급대상(미가입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적연금에 의무가입된 근로자 ○ 직업훈련생, 직업군인 ○ 공무원을 비롯한 공무 소득 수령자 ○ 병역의무 수행 중인 자(사회복무포함) ○ 공적연금가입의무가 있는 자영업자 ○ 피고용인과 같은 자영업자 ○ 보수를 받지 않고 일하는 간호직원 ○ 저소득 근로자(월수입 400~800유로) ○ 시간제 근로자(월수입 400유로 미만) ○ 실업보험 수급자, 요양 및 간병환자 ○ 장애, 취업 불가능자 ○ 조기퇴직연금, 질병수당, 생계수당 수급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적연금에 가입하지 않은 자영업자 ○ 공적연금에 가입되어 있지 않았으나, 직역연금에 가입되어 있는 근로자와 자영업자 ○ 공무원연금 임의가입자 ○ 시간제 근로자(월수입 400유로 미만)이며 사회보장비 면제에 응한 자 ○ 완전노령연금 수령자 ○ 사회부조 혹은 복지혜택 수령자 ○ 학생

자료: 강성호 · 류건식(2016) 재구성.

5) 보조금 지급방식

리스터연금 보조금 지급 방식은 기본적으로 소득이 낮을수록 적은 본인부담금을 지도록 하여 저소득층에 유리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또한, 적용받는 한계세율이 높은 고소득층의 경우 소득공제 적용 시 세금 환급액이 보조금보다 많은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이 경우 세금 환급액에서 보조금을 차감한 금액만큼 세금환급을 받도록 하여 고소득층의 리스터연금 가입유인이 줄어들지 않도록 하였다.⁴⁾ 이는 실질적으로는 소득계층에 따라 보조금과 소득공제 중 유리한 방식을 선택하도록 한 것과 같다고 할 수 있다.

리스터연금 가입자는 연간 총 소득의 4%(최대 2,100유로)를 리스터연금에 가입한다. 이때, 154유로(부부의 경우 308유로)의 정부 기본 보조금 그리고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 한 사람당 185유로(2008년 이후 생의 경우 자녀 한 사람당 300유로)를 정액으로 수령하게 된다. 그리고 가입자는 총 소득의 4%(최대 2,100유로)에 해당하는 가입금액에서 보조금을 뺀 만큼을 본인부담금으로 납입하게 된다. 이러한 경우, 가입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금액이 더 큰 경우에는 소득공제로 인한 혜택금액에서 보조금을 뺀 금액만큼 추가적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한, 보조금의 총액이 보험료인 총 소득의 4%를 넘게 될 경우에는 보조금은 모두 수령하되 가입자는 이에 더하여 최소 납입금액인 60유로를 납입해야 한다.

보조금 수령을 위한 최소 납입금액과 함께 살펴보면 저소득층은 낮은 수준의 본인부담금만 납부하여도 고소득층과 동일한 수준의 보조금을 수령할 수 있다. 예를 들

4) 독일의 2015년 소득세율

(단위: 유로, %)

구분	미혼		기혼		세율		비고
	이상	미만	이상	미만	최저	최대	
과세 표준	-	8,354	-	16,708	0	0	-
	8,354	13,469	16,708	26,938	14	24	선형증가
	13,469	52,881	26,938	105,762	24	42	선형증가
	52,881	250,730	105,762	501,460	42	42	단일세율
	250,730	이상	501,460	-	45	45	단일세율

자료: https://en.wikipedia.org/wiki/Taxation_in_Germany#Income_tax_rate_in_2015.

어 연소득 5,000유로 이하인 독신 가입자가 기본보조금을 수령하려면 60유로의 본인납입금을 납입하면 되지만, 연소득 75,000유로 이상 고소득층 독신자는 같은 금액의 보조금을 수령하기 위해 본인납입금 1,946유로를 납입해야 한다. 그리고 보조금을 포함한 리스터연금 가입금액 전체는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단, 보조금과 이중 수혜를 막기 위해 소득공제 혜택으로 감면받는 세금과 보조금과의 차액만큼만 환급받을 수 있다. 따라서 결과적으로 가입자 입장에서는 보조금과 소득공제 중 더 유리한 혜택을 선택하는 것과 동일한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예를 들어, 미혼·무자녀이면서 전년도 총 소득이 5,000유로인 경우 기본 보조금 154유로를 모두 수령하기 위한 연금 가입액은 5,000유로의 4%인 200유로이다. 단, 실제 가입금액은 본인 최소 납입금액 60유로에 기본보조금 154유로를 더한 214유로가 된다. 이 경우 연금 납입액 중 정부보조금의 비중은 전체 가입금액 214유로 중 기본보조금으로 수령한 154유로가 되어 약 72%가 된다. 반면, 동일한 사람의 총 소득이 75,000유로로 한계세율이 42%인 경우 기본 보조금 수령을 위한 연금 가입금액은 상한선인 2,100유로가 되고 이 중 보조금 154유로와 추가적인 세제혜택 776.5유로⁵⁾를 합한 903유로의 정부 지원을 받게 되고 이를 제외한 1,197유로를 본인이 직접 납입해야 한다.

또한, 두 자녀가 있는 전년도 총 소득이 5,000유로인 기혼가정의 경우 총 소득의 4%에 해당하는 가입금액은 200유로이지만 부부에 해당하는 기본보조금 308유로와 자녀 보조금 370유로만으로도 총 678유로를 보조금으로 수령하여 최소 가입금액 200유로를 넘어서게 된다. 이러한 경우 보조금 수령을 위한 본인최소 부담금인 60유로만을 납입하게 되며 총 리스터연금 납입금액은 보조금과 본인 부담금액을 모두 더한 738유로가 된다. 따라서 전체 가입 금액 중 보조금 비율은 738유로 중 678유로가 되어 92%가 된다.

만약, 동일한 가구의 소득이 75,000유로인 경우 기본 보조금 수령을 위한 연금 가

5) 소득공제로 2,100유로에 한계세율을 곱한 0.42와 감면금액의 5%에 해당하는 사회연대세금(Solidity tax)을 함께 감면받으면 903유로가 됨. 여기서 보조금 154유로를 뺀 금액만큼인 776.5유로를 추가적 세금혜택으로 수령하게 됨.

입금액은 상한선인 2,100유로가 되고 이 중 부부 기본 보조금 308유로와 자녀 보조금 370유로를 제외한 1,422유로를 본인이 직접 납입해야 한다. 이때, 가입금액 2,100유로에 대한 소득공제로 절세되는 금액은 보조금보다 적은 수준이므로 세제혜택으로 인한 환급금액은 발생하지 않는다.

리스터연금 적립금의 운용단계에서는 과세하지 않으며, 수령 시 연금의 일정부분에 대해 소득세를 부과한다.⁶⁾ 단, 2005년 기준으로 연금 수령액의 40%는 과세대상에서 제외되고 나머지만 수령액의 60%는 개인소득세에 과세대상이 된다. 과세대상 제외 비율은 2020년까지 해마다 1.6%p씩 감소하고 이후 0.8%p씩 감소하여 2040년에는 연금 수령액 전체에 대해 과세한다. 2015년 현재 수령하고 있는 리스터연금에 대한 과세 대상 비율은 76%이다.

〈표 II-3〉 미혼 가구주의 소득에 따른 리스터연금 보험료 및 보조금

(단위: 유로, %)

전년도 소득	기본보조금	자녀보조금	본인부담	전체 납입보험료	추가적 세금혜택	지원금비중
5,000	154	-	60	214	-	72
15,000	154	-	446	600	-	26
25,000	154	-	846	1,000	141	30
40,000	154	-	1,446	1,600	432	37
50,000	154	-	1,846	2,000	672	41
75,000	154	-	1,946	2,100	777	44
100,000	154	-	1,946	2,100	777	44

자료: 류건식·이상우(2011).

〈표 II-4〉 두 자녀가 있는 가구의 소득에 따른 리스터연금 보험료 및 보조금

(단위: 유로, %)

전년도 소득	기본보조금	자녀보조금	본인부담	전체 납입보험료	추가적 세금혜택	지원금비중
5,000	308	370	60	738	-	92
15,000	308	370	60	738	-	92
25,000	308	370	322	1,000	-	68
40,000	308	370	922	1,600	-	42
50,000	308	370	1,322	2,000	-	34
75,000	308	370	1,422	2,100	-	32
100,000	308	370	1,422	2,100	14	33

자료: 류건식·이상우(2011).

6) Axel Börsch-Supan & Christopher Quinn(2015).

6) 기타 특징

만약 리스터연금을 60세 이전에 해지하고 적립금을 찾을 경우 정부로부터 수령한 보조금 혹은 세제혜택을 반납해야 한다. 따라서 적립금을 중도 수령하는 경우는 매우 적다. 또한 중도인출의 경우 2001년 리스터연금 도입 당시에는 10,000~50,000 유로까지 가능하고 65세까지 월부로 상환하는 것이 가능하였다. 하지만 2008년 주택연금 리스터연금이 도입되면서 내 집 마련을 위한 인출인 경우 적립금 전액 인출 및 해약이 가능하도록 개선하였다.

제도 도입 초기에는 연금 수령가능 연령에 도달한 경우 20%까지 일시금 인출이 가능하였으며 나머지는 종신행 연금으로 수령해야 했으나, 2005년 이후 일시금으로 수령할 수 있는 비율이 적립금의 30%로 증가하였다. 그리고 2006년 퇴직연금법 개정으로 남녀가 동일한 생명표를 적용받게 되어 남성이 수령하는 연금의 총액이 6.5%정도 증가하였다.

마지막으로, 줄어드는 공적연금 소득대체율의 영향을 상대적으로 많이 받는 청년층의 리스터연금 가입을 촉진하기 위해 2008년부터는 26세 이전 리스터연금에 가입하는 경우 가입 시 200유로를 지급하고 있다.

다. 리스터연금의 성과와 한계

1) 리스터연금의 성장

리스터연금의 성과 측정 항목으로는 가입자 숫자 및 세부계층별 가입률 등을 들 수 있다. 리스터연금의 가입자 숫자는 2001년 리스터연금 도입 당시 140만 명 수준이었으나 2005년 500만 명을 넘어섰으며 2016년 1분기 현재 1,648만 명에 이르고 있다. 전체 가입자 수는 제도 도입 초기부터 2004년까지 4~5백만 명 수준에서 정체를 보이다가 2005년 이후 빠르게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2004년 리스터연금의 상품인증 조건과 가입 방법을 단순화했기 때문으로 보인다(Axel

H, Börsch-Supan et al 2012). 리스터연금 계약형태별 시장점유율에서는 2016년 현재 보험계약이 전체의 2/3를 차지하고 있으며 펀드계약이 약 20%, 주택리스터연금이 약 10% 그리고 은행계약이 약 5%를 점유하고 있다. 리스터연금의 계약형태별 시장점유율 추이를 살펴보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보험계약의 점유율은 점진적으로 하락하고 있는데 반해 펀드계약의 비율은 2005년 이후 20% 수준으로 증가한 후 점유율이 유지되고 있다. 은행계약의 경우 5% 수준을 꾸준히 유지하고 있으며 주택리스터연금 역시 2008년 이후 꾸준히 성장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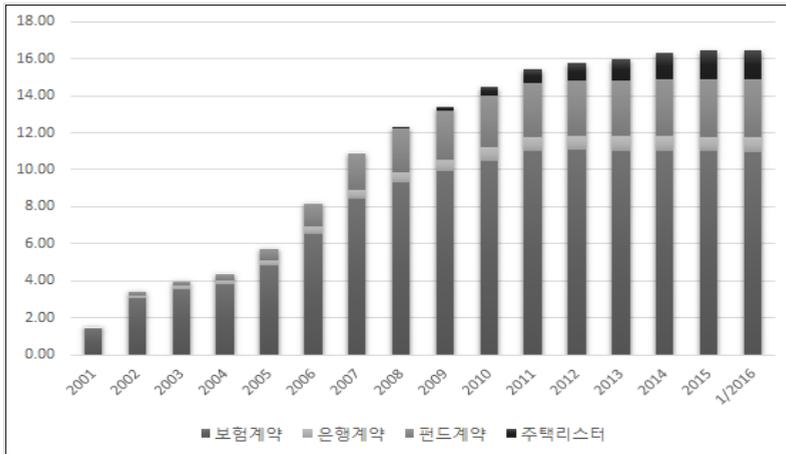
〈표 II -5〉 리스터연금 가입형태별 가입자 추이

(단위: 백만 명, %)

연도	보험계약		은행계약		펀드계약		주택리스터		합계
	건수	점유율	건수	점유율	건수	점유율	건수	점유율	
2001	1.40	100.0	0.00	0.0	0.00	0.0	0.00	0.0	1.40
2002	3.08	90.5	0.15	4.4	0.17	5.1	0.00	0.0	3.41
2003	3.53	89.0	0.20	5.0	0.24	6.1	0.00	0.0	3.97
2004	3.81	87.8	0.21	4.9	0.32	7.3	0.00	0.0	4.34
2005	4.86	85.4	0.26	4.6	0.57	10.1	0.00	0.0	5.69
2006	6.56	80.6	0.35	4.3	1.23	15.1	0.00	0.0	8.14
2007	8.45	77.9	0.48	4.4	1.92	17.7	0.00	0.0	10.86
2008	9.29	75.8	0.55	4.5	2.39	19.5	0.02	0.2	12.25
2009	9.91	74.1	0.63	4.7	2.63	19.7	0.20	1.5	13.37
2010	10.49	72.5	0.70	4.9	2.82	19.5	0.46	3.2	14.46
2011	10.99	71.3	0.75	4.9	2.95	19.2	0.72	4.7	15.42
2012	11.06	70.1	0.78	4.9	2.99	18.9	0.95	6.0	15.78
2013	11.01	68.8	0.81	5.0	3.03	18.9	1.15	7.2	16.00
2014	11.03	67.7	0.81	5.0	3.07	18.8	1.38	8.5	16.30
2015	10.99	66.7	0.80	4.9	3.13	19.0	1.56	9.5	16.48
2016.1	10.96	66.5	0.80	4.9	3.13	19.0	1.59	9.7	16.48

자료: 독일연방사회노동부(2016), <http://www.bmas.de/DE/Themen/Rente/Zusaetzliche-Altersvorsorge/zusaetzliche-altersvorsorge.html>.

〈그림 II-2〉 리스터연금 가입형태별 가입자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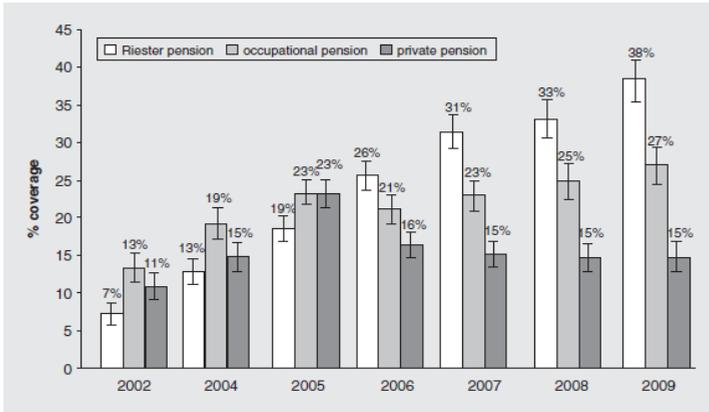


자료: 독일연방사회노동부(2016)에서 제공하는 자료 수치를 이용하여 재구성.

2) 리스터연금의 성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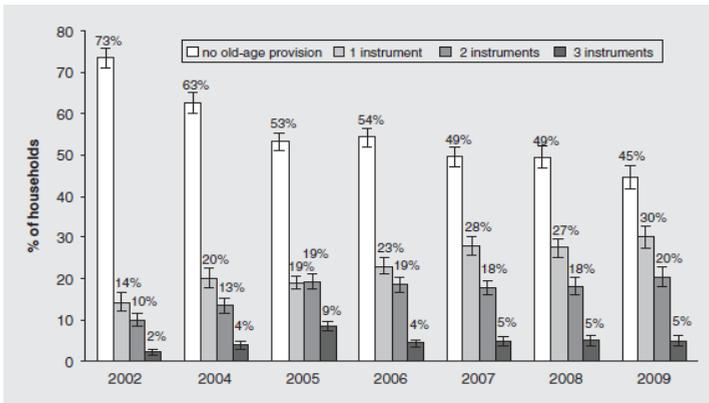
리스터연금이 도입된 이후 퇴직연금 가입 역시 함께 성장하였으며, 여타 사적연금의 성장은 정체된 상태를 보이고 있다(〈그림 II-3〉 참조). 가입률을 기준으로 2006년 리스터연금은 퇴직연금의 가입률을 넘어섰다. 2002년 공적연금 이외에 한 가지 이상의 보충적 사적연금을 가진 가구의 비율은 26%에 머물렀으나, 2009년에는 약 55%의 가구가 한 가지 이상의 보충적 사적연금을 구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II-4〉 참조). 특히 하나의 보충적 사적연금을 가진 가구의 비중은 2002년부터 2009년 사이 16%p 증가하였고, 두 가지 사적연금에 가입한 경우 역시 10% 포인트 증가하였는데, 이는 공적연금 축소와 함께 사적연금 가입에 대한 지원이 강화되어 리스터연금과 퇴직연금 가입이 동시에 늘어난 것에서 그 이유를 찾을 수 있다.

〈그림 II-3〉 사적연금 종류별 가입률



자료: Axel Börsch-Supan et al(20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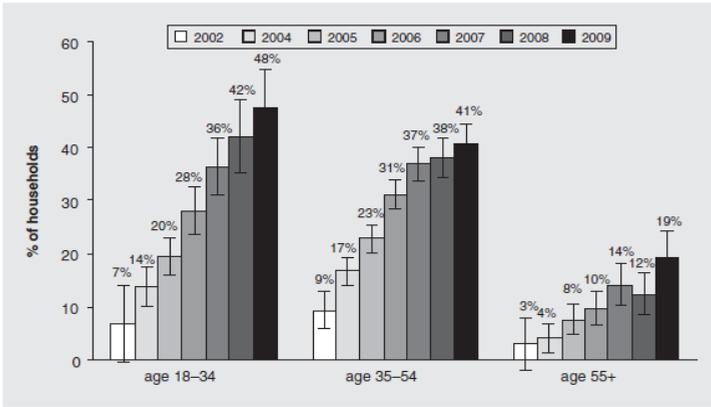
〈그림 II-4〉 보충적 사적연금 가입률



자료: Axel Börsch-Supan et al(2012).

공적연금 급여 수준이 점진적으로 하향조정됨에 따라 연령이 낮을수록 공적연금의 급여수준은 더욱 낮아지며 낮아지는 공적연금의 급여수준을 보충하기 위해 젊은 층의 리스터연금 가입유인은 증가하였다. 이에 따라, 18~34세의 경우 2002년 7%이던 리스터연금 가입률이 2009년 48%까지 증가한 반면 55세 이상자는 3%이던 가입률이 19%까지 증가하여 젊은층의 리스터연금 증가가 크게 두드러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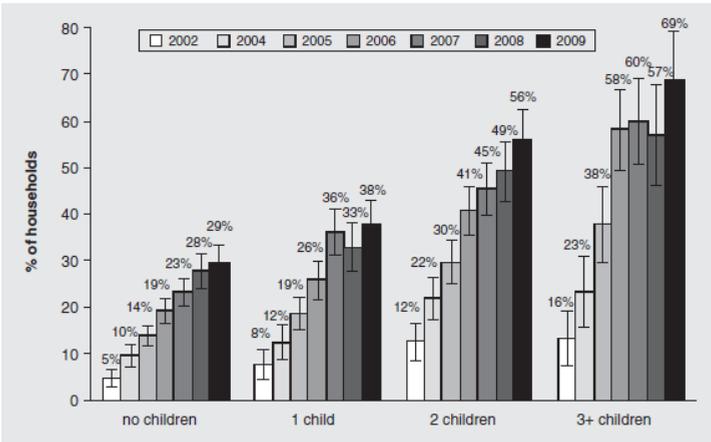
〈그림 II-5〉 연령별 리스터연금 가입률 변화



자료: Axel Börsch-Supan et al(2012).

또한, 가정에 자녀가 많을수록 더 높은 그리고 더 빠른 가입률과 가입률의 증가세를 보여 주었다. 이는 자녀 숫자가 많을수록 더 많은 리스터연금 보조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다자녀를 둔 부모들이 리스터연금에 적극적으로 가입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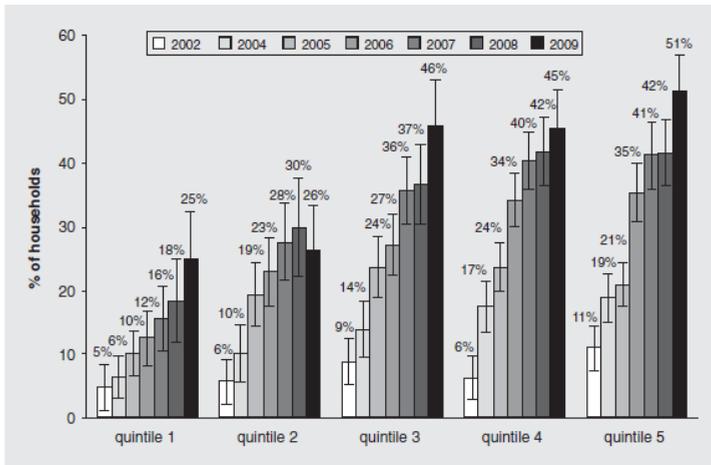
〈그림 II-6〉 자녀 숫자별 리스터연금 가입률



자료: Axel Börsch-Supan et al(2012).

소득수준별 가입을 살펴보면, 절대적인 가입률은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가입률 역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소득이 높음에 따라 저축 여력이 크며, 소득공제 혜택을 고려할 경우 리스터연금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혜택이 크기 때문으로 풀이할 수 있다. 가입률은 전 계층이 고르게 증가한 가운데 저소득층이라 할 수 있는 1분위와 2분위의 가입률 증가가 주목할 만하다. 특히 1분위 계층의 경우 2002년 5% 수준이던 가입률은 2009년 25%까지 증가하였다. 이들 계층은 저축여력이 매우 적으며 세제상으로도 과세미달자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과거 소득공제 방식에서는 아무런 세제혜택을 받지 못하였다. 하지만 보조금 지급 이후 동 계층의 사적연금 가입이 증가한 것은 주목할 만한 변화이다.

〈그림 II-7〉 소득계층별 리스터연금 가입률



자료: Axel Börsch-Supan et al(2012).

리스터연금의 도입으로 사적연금 가입 및 납입이 활성화되었는데, 보조금 지급의 저축유인효과를 살펴본 최근 연구결과(Stolz and Rieckhoff 2013)에 따르면 리스터연금 도입으로 인한 저축유인효과는 정부가 1유로를 지원했을 때 약 2~2.4유로의 저축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6〉 리스터연금 보조금 지급의 저축유인효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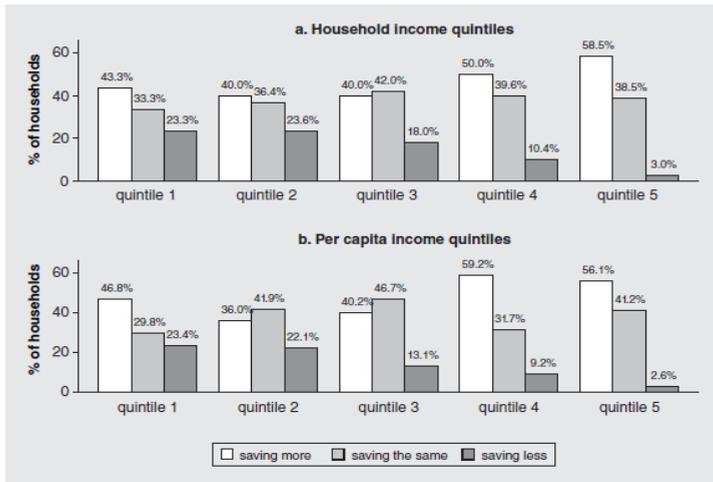
(단위: 천 유로)

연도	지급보조금(A)	총저축(B)	순저축(C=B-A)	저축유인효과(C/A)
2005	521,917	1,762,749	1,240,832	2.38
2006	1134339	3,635,886	2,501,547	2.21
2007	1,445,688	4,834,565	3,388,877	2.34
2008	2,543,300	7,815,500	5,272,200	2.07

자료: Stolz and Rieckhof, 각 연도.

또한, 리스터연금 도입 이후 모든 소득계층에서 저축이 늘었다고 응답하여, 리스터연금 도입으로 전체 저축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고, 리스터연금으로 인해 기존 저축이 이동하는 대체효과는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림 II-8〉 리스터연금 도입 이후 소득계층별 연금저축변화



자료: Axel Börsch-Supan et al(2012).

3) 리스터연금의 한계

리스터연금이 공적연금의 부담의 줄이고 사적기능을 통해 공적연금의 부족분을 감당할 만큼 성장했음에도 불구하고 리스터연금에 대한 비판 역시 존재한다.

가장 대표적인 비판은 리스터연금의 낮은 수익률에 관한 부분이다. 리스터연금의 최저 보장 수익률은 2001년 3.25%에서 2007년 2.25% 그리고 2012년에는 1.75%로 감소하여 제도 도입 초기 가정하였던 수익률 4%에 미치지 못함은 물론이고, 이러한 낮은 수익률은 반등의 기미조차 없이 꾸준히 감소하고 있다(Kornelia Hagen and Axel Kleinlein 2012).

또 다른 비판은 불투명하고 과도한 수수료에 관한 지적이다. 리스터연금의 수수료를 분석한 연구들에 따르면 리스터연금의 수수료 및 사업비는 높은 수준이고 또한 총 수수료의 규모를 가입자가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Gasche 2013; Oekotest 2011). 또한 복잡한 제도 설계로 인해 가입요건을 만족함에도 불구하고 쉽게 가입하지 못하는 경우 역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Geyer 2011).

2. 뉴질랜드 - 키위플랜

가. 뉴질랜드 노후소득 보장 체계와 키위플랜의 배경

뉴질랜드의 소득보장체계는 우리나라와 유사한 3층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 1층의 공적연금은 무기여 연금으로 10년 이상 뉴질랜드 거주자에게 주당 400뉴질랜드 달러(이하 NZD)⁸⁾를 지급한다. 2층은 퇴직연금으로 자동가입 제도로 운영되며 호주와 유사한 통합 기금형(이하 슈퍼애뉴에이션(Superannuation))의 형태를 띠고 있다. 3층의 개인연금은 임의가입 형태로 제공되고 있으며 개인연금 역시 슈퍼애뉴에이션의 형태를 띠고 있다.

뉴질랜드 정부는 1989년 이후 개인이 스스로를 위한 최적의 자원배분을 할 수 있다는 믿음하에 퇴직연금 및 개인연금 등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는 대신 사적연금에 대한 정부의 세제혜택 및 지원을 중단하였다. 이에 따라 고용주가 후원하는 퇴직연

7) 키위(Kiwi)는 뉴질랜드 국민을 지칭하는 애칭임.

8) 뉴질랜드 1달러 대 우리나라의 환율은 약 1 : 800원임.

금에 가입한 근로자의 비율은 2003년 13.89%에서 2011년 10.38%로 지속적으로 감소하였다.⁹⁾ 그리고 이러한 퇴직연금 가입자 및 적립금의 감소는 고령화와 맞물려 기금형으로 운영되는 뉴질랜드 슈퍼에누에이션의 지속가능성에 심각한 위협이 되었다. 이에 대한 대응으로 가입단계에서 자동가입과 보조금 지급을 통해 사적연금 가입률을 제고하여 개인 차원에서는 충분한 노후소득원을 확보하고 나아가 뉴질랜드의 금융산업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새로운 임의가입형 퇴직연금(KiwiSaver, 키위플랜)이 도입되었다.

나. 키위플랜(KiwiSaver)의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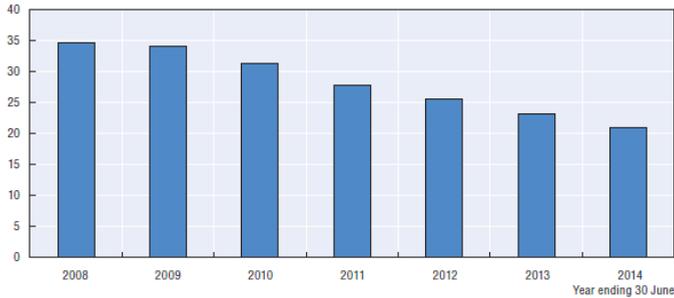
1) 키위플랜의 특징

뉴질랜드의 경우 정부의 지원 없이 고용주가 부담하는 퇴직연금 가입자의 비율이 줄어들에 따라 정부가 보조금을 지원하는 임의가입 형태의 퇴직연금(KiwiSaver 이하 키위플랜)이 2007년 도입되었다. 키위플랜의 가장 큰 특징은 자동가입과 정부의 보조금 지급을 들 수 있다.

뉴질랜드의 18세 이상 65세 이하 모든 직장인은 취업과 동시에 키위플랜에 자동으로 가입된다. 만약, 가입을 원하지 않을 경우 취업 후 8주 이내에 키위플랜 가입거부(Opt-out)의사를 밝혀야 하며 특별한 의사를 표현하지 않으면 가입이 유지된다. 키위플랜의 특이한 점은 자동가입 대상자가 아닌 18세 이하 및 미취업자는 본인의 희망에 따라 임의가입 형태로 키위플랜에 가입할 수 있다는 점이다. 때문에 뉴질랜드의 키위플랜은 퇴직연금의 성격과 개인연금의 성격을 모두 가진 것으로 볼 수 있다. 출금은 65세 이후 혹은 가입 후 5년 이후 중 나중 시점에 가능하다. 하지만 이민, 파산, 중대 질병 등에 걸려 적립금을 긴급하게 사용해야 할 경우에는 인출이 가능하다.

9) OECD(2013), Pension at a glance 2013.

〈그림 II-9〉 키위플랜 가입거부(Opt-out)비율



자료: OECD(2014), Pension outlook,

근로자는 본인 총 급여의 3%, 4% 혹은 8% 중 하나의 납입비율을 정할 수 있다. 고용주는 키위플랜에 가입한 근로자 연간 급여의 최소 3% 이상을 대응(Matching)해서 함께 기여해 주어야 한다. 기여금은 급여에서 뉴질랜드 국세청을 통해 매월 납입되며 국세청은 키위플랜 금융상품 제공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근로자의 계좌로 바로 입금해 준다. 국세청에서 금융기관 입금까지 통상 3개월의 시간이 걸리며 해당 기간에 대한 소정의 이자를 지급한다. 앞서 언급한 대로 키위플랜은 임의가입을 허용하고 있기 때문에 자영업자의 경우 금융기관을 통해 직접 가입할 수 있다. 단, 임의가입의 경우 국가가 지급하는 보조금은 수령이 가능하나 고용주가 지급하는 기여금은 수령할 수 없다.

2) 키위플랜 보조금 지급방식

가입유인 제공을 위해 최초 가입 시 보조금과 연간 보조금을 지급한다. 최초가입자의 경우 정부로부터 초기 보조금(Kick start) 1,000NZD(뉴질랜드 달러)를 수령하며, 최소 납입금액(총 급여의 3%)을 충족하는 가입자는 정부로부터 1년에 최대 521.43NZD를 지급받는다. 보조금 지급 방식은 가입자 납입금 1NZD 당 0.5NZD를 정부 보조금으로 지급하며 정부 보조금은 연간 최대 521.43NZD까지 수령할 수 있다. 또한 키위플랜에 가입한 근로자는 고용주로부터 급여의 최소 3%에 해당하는 지

원금을 키위플랜 계좌로 수령한다.¹⁰⁾ 생애최초 주택 구입 시 본인기여금과 운용이익으로 구성된 적립금을 인출할 수 있다. 하지만 정부로부터 수령한 초기 보조금(kick start subsidy)과 연지급 보조금(Annual subsidy)은 인출이 불가능하다.

키위플랜에 3년 이상 가입자들은 생애최초 주택 구입 시 보조금을 수령할 수 있는데, 가입기간 1년당 1,000NZD를 지급 받을 수 있으며 최대 5년간 가입기간에 대해 5,000NZD까지 보조금 수령이 가능하다. 이는 가입자 한 사람당 기준이므로 부부가 모두 키위플랜 가입자일 경우 부부 각자가 5,000NZD씩 보조금을 수령하여 최대 10,000NZD를 수령할 수 있다. 이러한 정부의 보조금과 고용주 매칭형태의 기여금 납입은 키위플랜에 대한 긍정적인 반응을 이끌어내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David Law et al 2011).

3) 과세방식 및 규제

뉴질랜드는 연금의 적립금 납입 시 및 운용 시에는 과세(Tax)하되, 수령 시에는 과세하지 않는(Exempt) TTE 과세 체계를 가지고 있는 나라로서 보조금 이외에 납입 시 특별한 세제혜택은 없다. 키위플랜 도입 초기 고용주의 2% 매칭펀드에 대해서는 손금으로 인정하였으나 2012년 이후 이러한 세제혜택 역시 사라졌다.

키위플랜은 여타 퇴직연금과 마찬가지로 금융시장 감독기구(Financial Markets Authority: FMA)의 규제를 받는다. 퇴직연금에 대한 규제와 한 가지 다른 점은 키위플랜은 수수료에 대한 규제가 존재한다는 점이다. 규제 당국은 각 금융기관의 키위플랜 및 여타 퇴직연금 사업자와 수수료를 비교하여 평가하는데, 비교·평가 시 가입상품의 종류, 가입자 숫자, 기초자산의 성격 등을 모두 고려하여 수수료를 비교한다.

10) 최초 2%였으나 2013년 이후 3%로 증가함.

다. 키위플랜의 성과 및 가입자 특징

1) 키위플랜의 성과

키위플랜 도입 이후 키위플랜의 가입자 숫자는 빠르게 성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키위플랜 도입 첫째 가입자 숫자는 71만 명 수준이었으나 2013년 총 가입자 숫자는 214만 명에 이를 정도로 증가하였다. 가입자 숫자의 증가율은 점진적으로 줄어들고 있는데, 이는 키위플랜에 가입 가능한 잠재적 가입자들이 이미 상당수 가입하였기 때문으로 풀이할 수 있다. 키위플랜 도입 이전 20% 수준이던 사적연금 가입자 숫자는 2013년 65%를 상회할 정도로 성장하였다. 키위플랜 도입은 뉴질랜드 사적연금 저변 확대에 큰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그림 II-11〉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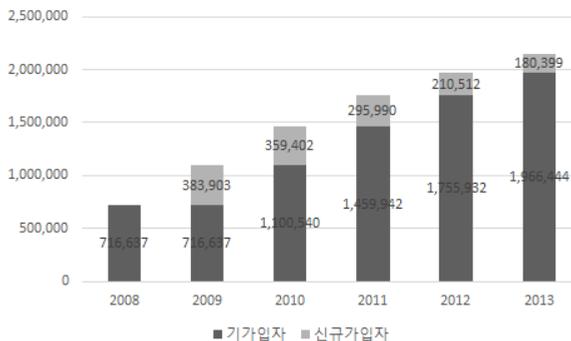
〈표 II-7〉 키위플랜의 가입자 수 증가 추이

(단위: 명, %)

구분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누적 가입자	716,637	1,100,540	1,459,942	1,755,932	1,966,444	2,146,843
신규 가입자	-	383,903	359,402	295,990	210,512	180,399
전년도대비 증가율	-	54	33	20	12	9

자료: Inland Revenue(20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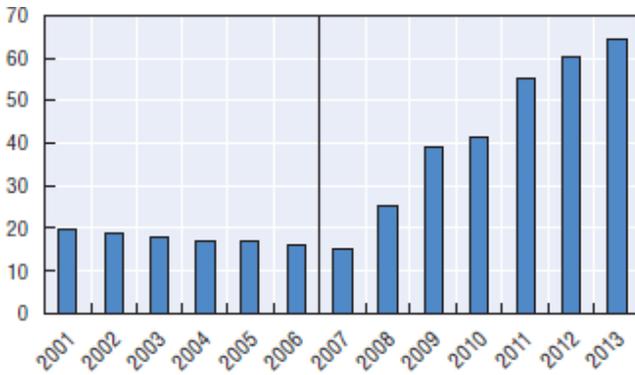
〈그림 II-10〉 키위플랜의 가입자와 증가 추이



자료: Inland Revenue(2015) 자료를 바탕으로 재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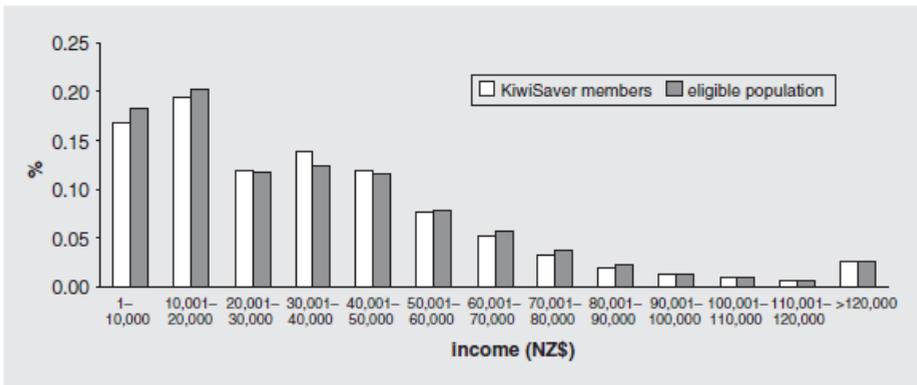
소득계층별 키위플랜 가입률을 살펴보면 소득이 낮은 계층부터 소득이 높은 계층까지 대부분의 대상자들이 키위플랜에 가입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전체 인구 중 차지하는 비율이 높은 50,000NZD 이하 계층의 가입률이 높은 것이 국민 전체 사적연금 가입률 제고를 이끈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연소득이 50,000NZD 이상 계층의 가입률이 100% 혹은 이를 상회하는데 이는 높은 소득으로 인해 저축여력이 충분하기 때문으로 판단할 수 있다(〈그림 II-12〉 참조).

〈그림 II-11〉 키위플랜 도입 이후 사적연금 가입률



자료: OECD(2014), Pension outlook.

〈그림 II-12〉 뉴질랜드 소득계층 분포와 키위플랜 가입대상자 가입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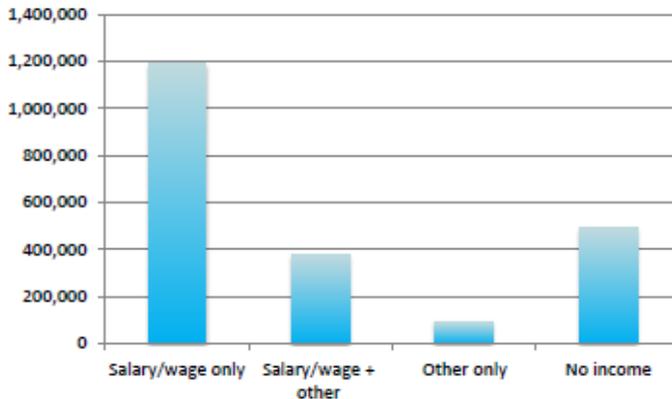


자료: David Law et al(2011).

2) 키위플랜 가입자의 특징

키위플랜 납입금은 주로(약 75%) 급여와 가입자 부담금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전체 가입자의 55%에 해당하는 120만여 명의 가입자는 본인 급여와 사업주로부터의 소득으로 키위플랜 기여금을 납입하였다. 또한 전체 가입자의 19%에 해당하는 약 40만여 명은 본인의 급여와 사업자의 기여금 그리고 여타 소득을 함께 이용하여 기여금을 납입하였으며, 키위플랜 납입은 하되 특별한 소득원이 없는 대부분 아동 혹은 학생들 등 임의가입자는 부모 등이 키위플랜 기여금을 납부하는 것으로 판단된다.¹¹⁾

〈그림 II-13〉 키위플랜 납입금의 소득 원천별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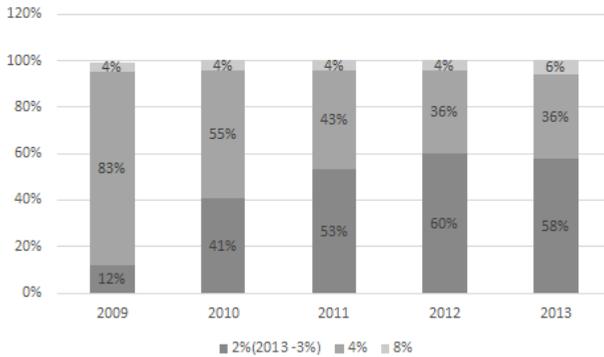
자료: Inland Revenue(2015).

키위플랜 납입액은 기본가입 요율(Default rate)에 따라 그 비율이 달라지는 경향을 보였다. 키위플랜은 납입금액을 총 급여의 2%, 4% 그리고 8% 중 선택할 수 있으며 선택을 하지 않을 경우 기본가입요율로 선택된다. 2007년 제도 도입 이후 2009년까지 가입자 기본가입요율은 4%였으나 2010년 2%로 하향조정되었으며 2013년에는 최저 가입요율이 3%로 상향조정되어 자동가입요율 역시 3%로 조정되었다.

11) David Law et al(2011).

가입자들은 기본가입요율을 선택하는 경향을 보였는데, 2009년에는 83%의 가입자가 기본가입요율인 총 소득의 4%를 선택하였다. 기본가입요율이 2%로 하향조정된 2010년부터는 2%요율 가입자가 증가하기 시작하여 2013년 무렵에는 전체 가입자의 약 60%가 기본가입요율인 3%요율에 가입하였다.

〈그림 II-14〉 납입금 옵션 선택 비율



자료: Inland Revenue(2015)의 수치를 활용하여 재구성.

특히 2009년 기본가입요율 변경 이후 최저요율을 선택하는 비중이 크게 증가하였다. 기본가입요율이 4%였던 2009년 이전 4%를 선택한 가입자 비율은 62%였고, 기본가입요율이 2%로 변경된 이후 이를 선택한 비율은 80%였다. 이를 바탕으로 가입자들의 납입요율 선택이 기본가입요율(Default rate)에 크게 영향을 받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표 II-8〉 기본가입요율 변경과 키워플랜 납입수준 비율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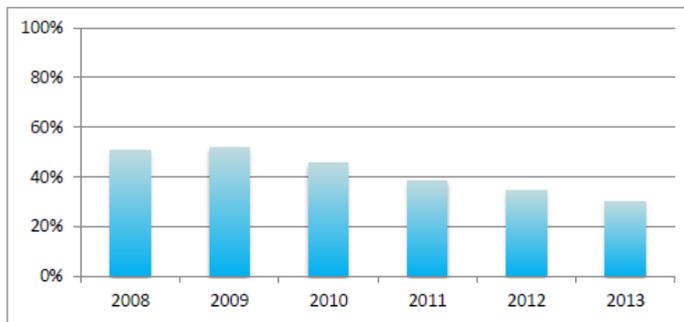
요율	2009년 이전	2009년 이후
2	33	80
4	62	18
8	5	2

주: 2009년 이후 2011년까지의 가입자를 기준으로 함.
 자료: Inland Revenue(2015).

키위플랜은 직장인의 경우 자동으로 가입되며 8주 이내에 가입해지가 가능하다. 자동가입 대상자 중 가입을 거부(Opt-out)한 사람의 비중은 점진적으로 줄어들고 있으며 특히 2010년 이후부터 가입거부(Opt-out)자는 눈에 띄게 줄어들기 시작하였다.

뉴질랜드 국세청이 분석한 가입거부자들의 특징을 보면 연령이 젊을수록(18~34세 근로자), 대학졸업자, 소득이 30,000NZD 이하자, 그리고 직위가 낮은 계층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리고 이들이 가입을 해지한 주요 이유로는 저축할 여유가 없어서(32%)와 본인이 더 나은 투자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30%)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림 II-15〉 자동가입 대상자 중 가입거부(Opt-out)비율



자료: Inland Revenue(2015).

〈표 II-9〉 연도별 가입거부(Opt-out)자 숫자

(단위: 명, %)

연도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옵트아웃	-	83,283	24,853	3,651	6,386	-6,063
누적	137,762	221,045	245,898	249,549	255,935	249,872
증가율	-	60	11	1	3	-2

자료: 뉴질랜드 국세청(2015).

3. 소결

일반적으로 개인연금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금융기관과 계약을 맺는 금융상품으로 퇴직연금과 함께 사적연금으로 분류된다. 또한 개인연금은 가입 및 수급조건에서 강제성이 부여되는 퇴직연금과 달리 소비자보호 이외에 정부 규제가 작용할 여지가 적어 시장에서 자율적으로 운영되어 왔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선진국 사례에서 보듯이 고령화와 노후대비 과정에서 사적연금의 역할에 변화가 발생하고 있다. 즉, 선진국에서는 공적연금이 노후소득 보장의 중심축을 담당해 온 지금까지와는 달리 개인연금 등 사적연금에 세제혜택 혹은 보조금의 지급을 통해 경제주체의 가입을 유도하고 공적 노후소득 보장을 보완하는 기능이 추가되는 경향이 있음을 볼 수 있었고, 특히 보조금을 지급하는 독일과 뉴질랜드의 경우 보조금 제도 도입 이후 사적연금 가입률이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특히 독일은 명목상 공적연금의 소득재분배 기능은 없는 것으로 보일 수 있으나 실업기간, 직업훈련기간, 자녀양육기간 등 저소득 및 무소득 기간을 가입기간으로 인정하는 방식으로 중·저소득층의 노후소득 보장에 힘쓰고 있다. 또한 공적연금의 보장수준이 줄어들면서 감소분에 대한 보충을 위해 저소득층과 다자녀가정에 혜택이 있는 사적연금에 대한 보조금제도를 도입하였는데, 이러한 사적연금에 대한 보조금 도입으로 소득재분배 기능이 더욱 강화된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 공적연금의 경우 명목상의 재분배 기능은 높은 수준이지만 무소득기간 등에 대한 크레딧이 독일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점, 저소득 자영업자 등의 경우 본인이 보험료를 모두 부담한다는 점, 그리고 고소득층의 평균수명이 저소득층에 비해 길다는 점 등을 고려할 경우 저소득층에 대한 소득이전 효과는 명목상 소득재분배 효과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 따라서 중·저소득층에 초점을 맞춘 공사연계연금 도입은 고령화에 대응한 사회안전망 확충의 측면에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표 II-10〉 독일과 한국의 공사적연금 소득대체를 비교

(단위: %)

구분	강제연금(공적+강제사적연금)						전체연금(강제연금+사적연금)					
	Gross mandatory public and private			Net mandatory public and private			Total gross with voluntary			Total net with voluntary		
평균소득 대비 배율	0.5	1	1.5	0.5	1	1.5	0.5	1	1.5	0.5	1	1.5
Germany	37.5	37.5	37.5	53.4	50.0	49.0	50.0	50.0	50.0	65.6	64.7	63.7
Korea	58.5	39.3	29.3	64.3	45.0	34.4	58.6	39.3	29.3	64.3	45.0	34.4

자료: OECD(2015), Pension at a glance.

독일(리스터연금)과 뉴질랜드(키위플랜)의 공통점이 사적연금에 대해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이라면 두 나라의 차이점으로는 리스터연금은 가입여부가 순수하게 개인의 선택에 맡겨져 있는 개인연금에 가까운 반면, 키위플랜은 직장을 얻을 경우 자동으로 가입되어 퇴직연금에 가까운 특성과 함께 직장이 없더라도 본인이 원할 경우 가입 및 정부 보조금 수령이 가능하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공통점과 차이점을 참고하여 우리나라 보조금 지급 제도 도입 시 보조금의 지급, 자동가입 제도 도입 등에 좋은 참고사항들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다음 장에서는 이러한 해외 사례에 이어 보조금 지급을 통한 사적연금 가입유인 제공의 대표적인 사례인 독일의 리스터연금을 고려(Benchmarking)하여 우리나라에도 정부가 인정하는 개인연금 형태에 세제혜택과 보조금이 제공되는 ‘공사연계연금(가칭)’ 도입의 대략적인 설계와 이러한 제도를 우리나라에 도입했을 때 일어날 수 있는 경제적 효과를 분석한다.

〈표 II-11〉 리스터연금과 키위플랜 요약

구분	리스터연금	키위플랜
도입배경 및 목적	줄어드는 공적연금의 보장률을 사적 연금 강화로 보충	사적연금 교육의 한계를 확인하고 보조금 지급을 통한 사적연금의 활성화로 방향을 전환
지원금 수준	기본보조금 부부 1인당 154유로, 자녀 1인당 보조금 185유로 지급	가입 시 보조금 1000NZD 지급, 1년간 최대 521NZD 보조금 지급 고용주가 급여의 3%를 지원
가입방식	임의가입의 형태를 띠며, 소득이 적을수록 본인부담금이 적음	직장인은 자동가입되나 탈퇴가 가능하며, 직장인이 아닌 사람은 임의 가입 할 수 있음
특징	사적연금의 특징이 강함 가입금 수준이 고정되어 있음	퇴직연금에 임의가입을 추가 가입금 수준을 정할 수 있음
성과	사적연금 가입률 증가	사적연금 가입률 증가

Ⅲ. 공사연계연금 효과분석

1. 공사연계연금 설계원칙

우리나라 공사연계연금은 다음의 몇 가지 원칙을 고려하여 설계할 필요가 있다.¹²⁾ 첫째, 공적연금 가입을 전제로 하여 가입하도록 하는 준공적 성격의 연금제도여야 한다. 다시 말해, 공사연계연금은 단순한 금융상품이 아닌 공적노후소득 보장 기능을 수행하는 새로운 연금제도라는 점에서, 기존의 사적연금과는 별도로 운영되어야 한다. 둘째, 중산층 이하 저소득층의 노후소득을 강화할 수 있도록 재정적 지원이 수반되어야 한다. 보험료 지원(보조금 및 세제혜택)을 소득계층별로 차등화하여 취약계층에 대한 실질적인 노후소득 보장이 제고될 수 있어야 한다. 셋째, 재정이 직접적으로 지원되는 만큼 기존의 사적연금과 달리 노후소득 보장을 위한 공사협력을 기본 모델로 하여 제도가 운영되어야 한다. 예를 들면, 제도에 대한 감시 및 감독은 정부에서, 적립금의 관리, 운영 및 지급은 시장에서 수행되도록 추진될 필요가 있다. 넷째, 종신연금 수령을 원칙으로 함으로써 노후소득 제고를 통한 장수리스크에 대응할 수 있어야 한다.

12) 강성호·류건식(2016) 참조.

2. 분석자료 및 분석가정

가. 분석자료

본 장에서는 공사연계연금 설계원칙을 바탕으로 동 연금에 보조금과 세제혜택을 지급할 경우 노후소득 보장과 재정에 미치는 효과에 대해 살펴본다. 이를 위해 보조금 지급방식을 세 가지 시나리오로 나누어 가정하여 분석을 실행하였으며, 분석을 위한 기초자료로는 통계청의 가계동향조사 자료(2015년 기준)를 활용하였다.

나. 시나리오별 분석가정

1) 기본가정

본 장에서는 보조금 지급 방식을 크게 3가지 시나리오(안)로 설정하여 노후소득 보장 및 보조금 지원 수준을 추정하였다. 첫 번째 시나리오(1안)는 독일 리스터연금의 지원금 수준을 현재 유로화와 원화의 환율을 고려하여 우리나라에 도입한 경우이다(가칭 리스터연금형). 이는 개인연금에 대한 보조금을 제공하는 대표적인 사례를 우리나라에 동일하게 적용해 본다는 점에서, 우리나라에 적용할 적합한 모형을 찾는 1단계 작업으로 볼 수 있다. 이때 독일의 리스터연금과 차이 나는 부분은 본인납입금에 적용되는 세제혜택에 소득공제가 아닌 세액공제 방식을 적용했다는 점이다. 이는 우리나라의 개인연금 세제가 2014년 이후 세액공제 방식¹³⁾으로 변경된 것을 반영하였기 때문이다. 두 번째 시나리오(2안)는 현행 연금저축에서처럼 공제대상소득 한도를 400만 원으로 하고, 여기에 우리나라 현실을 고려하여 연금저축의 세제혜택과 비슷한 수준으로 보조금을 제공하는 경우이다(가칭 연금저축형). 하지만 제 2안이 현재의 연금저축과 차별성을 갖는 부분은, 현재 연금저축은 세금을 깎아주는 방식으로 면세점 이하자에게는 실질적인 세제혜택이 없는 반면, 보조금의 지급은 저소

13) 독일 등 선진국 대부분은 개인연금에 대해 소득공제 방식을 적용하고 있음.

득층에 실질적인 사적연금 가입유인을 제공해 줄 수 있다는 점이다. 동 보조금 지급 안은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연금저축을 공사연계연금으로 전환 시 그 규모를 예측함에 있어 효과적일 것으로 판단된다. 보조금 지급 수준은 우리나라 연금저축의 세제혜택 수준을 고려하여 독일 리스터연금보다 다소 낮게 설정하였다. 따라서 리스터연금의 기본보조금, 자녀보조금은 첫 번째 시나리오(1안)에서 각각 약 20만 원, 39만 원이었으나, 두 번째 시나리오(2안)에서는 각각 10만 원, 15만 원으로 낮게 설정하고 있다. 본인 기여금은 최소한 기본보조금 수준 이상일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서 기본보조금 수준인 10만 원으로 설정하였으며, 최소 가입기간은 국민연금과 동일한 10년으로 하였다. 그리고 본인납입금에 대한 추가세제혜택(세액공제)은 현행 연금저축을 참고하여 소득수준에 따라 세액공제율 13.2%, 16.5%를 적용하였다.¹⁴⁾ 세 번째 시나리오(3안)는 두 번째 시나리오(2안)와 기본적으로 유사하나 현행 국민연금이 목표로 하고 있는 40년 납입 시 소득대체율 40%를 현실적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을 가정하였다. 즉, 국민연금은 평균소득자가 40년 근무 시 소득대체율 40%를 목표로 하고 있지만 근로자가 은퇴 시까지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하는 기간이 40년이 되는 경우는 많지 않으므로 국민연금의 실질 소득대체율은 25% 안팎에 그치고 있다(강성호 2015). 따라서 국민연금이 목표로 하고 있는 소득대체율과 예상되는 실제 소득대체율 간의 차이에 해당하는 15% 수준의 소득대체율을 충당할 수 있도록 공사연계연금의 보험료 및 보조금 수준을 설정하였다.¹⁵⁾ 국민연금과 관계를 고려하여 보험료는 국민연금과 동일하게 9%로 하였으며, 기본적으로 리스터연금 보조금 수준에 맞추어 기본보조금, 자녀보조금은 2안의 두 배 수준인 각각 20만 원, 30만 원으로 설정하였다. 또한 본인부담은 최소 기본보조금 수준 이상이 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서 기본보조금 수준인 20만 원을 최소기여금으로 설정하고 최소 가입기간은 국민연금과 동일하게 10년으로 하였다. 본인납입

14) 본인부담 보험료에 적용되는 세액공제율(세율)은 연소득 5,500만 원 이하자는 16.5%, 초과자는 13.2%를 적용하고 있으며, 동 분석에서도 이를 따랐음.

15) 현재 정부정책에 의하면 연간 5,500만 원(국세통계연보상 총 급여 기준)을 중위소득 수준으로 보고 있으며, 동 소득 수준을 기준으로 공사연계연금에 20~30년 가입 시 소득대체율이 10~15%가 될 수 있도록 가정을 설정함.

금에 대한 추가세제혜택(세액공제)은 앞서와 마찬가지로 현행 연금지축을 고려하여 소득수준에 따라 13.2%, 16.5%로 하되 공제대상소득한도는 현행 연금지축과 퇴직연금 본인부담금의 합산액인 연간 700만 원으로 설정하였다. 급여액 산정은 수지상등 원칙(수익비=1)에 의해 연금수령 연령인 65세부터 85세까지 적립금이 20년¹⁶⁾ 동안 연금으로 지급되는 것을 가정하였다. 우리 국민의 평균수명이 약 81세¹⁷⁾ 이므로 적립금 수령기간을 65세 이후 20년으로 잡는 것은 노후소득 보장 및 향후 기대여명 증가를 고려했을 때 충분한 기간을 설정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수령기간을 65세 이후 20년간 확정기간으로 수령하는 것으로 분석하였으나, 우리 국민의 기대여명에 대한 통계와 대수의 법칙이 성립함을 감안한다면 확정기간형 연금을 가정한 분석 역시 종신연금을 수령하는 경우와 동일한 분석 결과를 얻을 수 있다.

분석의 편의상 임금상승률, 물가상승률, 투자수익률은 동일(예, 3%)한 것으로 하였으며, 여타 조건들은 일정한 것으로 가정하였다. 따라서, 명목가치와 현재가치가 동일해져 결과에 대한 직관적인 해석과 분석의 편의를 도모할 수 있다.

앞서 제시한 시나리오(안)의 각각 특징과 공통점을 요약하면, 특징으로는 1안의 경우 보조금 규모가 독일 리스터연금과 유사한 수준인 성인 1인당 20만 원, 자녀 1인당 39만 원을 지급하며, 보험료율은 4%이다. 2안은 성인에 대한 보조금이 성인 1인당 10만 원 그리고 자녀보조금은 15만 원 수준으로 1안의 절반 혹은 그 이하라는 점이 특징이라 하겠다. 그리고 국민연금의 목표 소득대체율을 보완하는 수준으로 보험료율을 설정한 3안의 경우 성인 보조금은 일인당 20만 원, 자녀보조금은 일인당 30만 원으로 1안과 유사한 수준이지만, 보험료율은 9%로 높은 수준이다. 이는 3안이 1안 혹은 2안에 비해 가입자에게 더 많은 자기부담금을 요구하는 특징을 가진다고 해석 할 수 있다. 하지만 모든 안에서 주된 혜택이 보조금을 지급하여 면세점 이하자 역시 실질적인 사적연금 납입유인을 가진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가진다. 이러한 특징들을 정리하면, <표 Ⅲ-1>과 같다.

16) 모형에서는 종신연금을 65세부터 85세까지 수급하는 20년으로 보았음.

17) 세계은행 2012년 기준.

〈표 Ⅲ-1〉 시나리오별 공사연계연금 기본가정

구분	1인(리스터연금형 ¹⁾)	2인(연금저축형)	3인(공적연금 보충형)
특징	독일의 보조금 사례를 한국에 직접 적용	현재 연금저축 수준의 보조금을 지급	국민연금이 목표로 하고 있는 소득대체율 40%를 달성할 수 있는 수준의 보험료 및 보조금 책정
〈공통가정〉			
가입대상	- 공적연금 가입자(임의가입자 포함) - 미가입자 제외 - 기존 연금저축 가입여부와 무관하게 운영		
가입기간	- 최소 10년		
연금급여	- 수지상등 원칙(수익비=1), 수급기간(65세 이후 20년)		
기타	- 임금상승률, 물가상승률, 투자수익률 동일하게 적용 - 가구유형에서 4인 가구는 두 자녀(18세 미만)와 부부(1인 근로자)로 구성된 가구이며, 1인 가구는 무자녀 독신(1인 근로자) 가구임. - 설명의 편의를 위해 소득구분은 리스터연금을 설명하는 소득구간에 국민연금 최소, 최대적용소득 및 5,500만 원 소득수준을 추가하여 구분함 ¹⁸⁾		
〈차별가정〉			
보조금	- 기본: 1인당 연간 20만 원 - 자녀(18세 미만): 1인당 연간 39만 원 ²⁾	- 기본: 1인당 연간 10만 원 - 자녀(18세 미만): 1인당 연간 15만 원	- 기본: 1인당 연간 20만 원 - 자녀(18세 미만): 1인당 연간 30만 원
세액공제	- 공제율: 13.2%, 16.5% (공제한도: 연간 400만 원)	- 공제율: 13.2%, 16.5% (공제한도: 연간 400만 원)	- 공제율: 13.2%, 16.5% (공제한도: 연간 700만 원)
보험료	- 기준소득의 4%(연간 최소 본인부담 7.8만 원)	- 기준소득의 4%(연간 최소 본인부담 10만 원)	- 기준소득의 9%(연간 최소 본인부담 20만 원)

주: 1) 동 가정에서의 설정금액은 리스터연금에 적용되는 금액(유로화)에 유로환율 1,300원을 적용하여 환산하였음.

2) 리스터연금의 자녀보조금은 2008년 이전 출생자녀에 대해서는 185유로, 이후 출생자녀는 300유로(39만 원)가 적용되나, 여기서는 2008년 이후 출생자녀 기준인 39만 원으로 설정함.

2) 추가가정

보조금 지급의 비용대비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국가 단위에서 노후소득 보장 효과 및 빈곤율 개선과 재정부담 정도를 함께 파악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보조금 지원

18) 이에 의해 본 연구에서 구분한 소득구간은 연간 336만 원~1억 3천만 원으로 구분하여 이들의 지원수준과 소득대체율 수준을 분석함.

에 따른 빈곤개선 및 재정부담 효과를 추정하기 위해서는 앞의 <표 Ⅲ-1>에서 제시한 기본가정 외에 다음과 같은 추가 가정이 필요하다.

첫째, 공사연계연금 도입이 노인빈곤을 완화에 얼마나 효과적인 것인지를 분석하기 위해 대상자가 노인세대가 되는 상황을 고려하였다. 이를 위해 현재 근로세대가 앞의 기본가정에 따라 일정 기간 동안 공사연계연금에 가입하고 65세 이후에 연금을 수급하는 것을 모형에 반영하였다. 둘째, 빈곤선은 상대빈곤을 산출 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중위소득의 50%로 하였다. 또한 보조금 지급 전후 소득이 달라져 중위소득이 변할 수 있으므로 보조금 지급 및 연금소득 증가로 인해 중위소득이 상승하기 전과 후 두 가지 경우 모두를 분석하였다. 셋째, 빈곤율은 OECD에서 발표한 2013년 기준 노인빈곤율 49.6%를 기준노인빈곤율¹⁹⁾로 하였다. 그리고 빈곤율 개선 효과를 추정하기 위해 노인빈곤율이 49.6%일 때 빈곤선을 추정하고 연금가입에 따른 연금소득 증가로 노인빈곤율이 얼마나 감소하게 되는지를 추정하였다. 넷째, 재정에 미치는 효과를 살펴보기 위해 가계동향조사 자료의 모집단 가중치를 적용하여 전체 가구 규모를 추정하여 재정지출효과를 분석하였다. 이를 정리하면, <표 Ⅲ-2>와 같다.

<표 Ⅲ-2> 추가가정

구분	내용
분석자료	- 통계청의 가계동향조사 2015년 기준
분석대상	- 노인가구(근로세대가 노인세대가 되는 상황을 고려)
빈곤율	- 2013년 기준 노인빈곤율 49.6%일 때 빈곤선을 추정하고, 빈곤선 이하의 노인가구 비율을 산출함
소득계층 구분	- 빈곤층은 균등화중위소득 ¹⁾ 의 50% 미만, 중산층은 균등화중위소득의 50~150% 미만, 고소득층은 균등화중위소득의 150% 이상인 가구
기타	- 앞의 3가지 시나리오에 동일하게 적용

주: 균등화중위소득은 가구소득을 표준화하기 위해 가구소득을 가구원 수의 제곱으로 나누어 산출한 균등화소득의 중위 값임.

19) 보조금 지원 전의 상황을 '기준'이라는 의미로 사용함.

3. 분석결과

가. 공사연계연금의 지원수준 및 노후소득 개선 효과

여기서 3가지 시나리오에 의한 공사연계연금의 지원수준과 소득대체율 효과를 분석하고자 한다. 분석결과에 대한 정리는 4인 가구(두 자녀+부부)와 1인 가구로 구분하여 연간소득 수준별로 제시한다. 여기서 활용한 연간소득은 가정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현행 국민연금제도와 연계성을 고려하여 336만 원(국민연금 연간 최소소득), 5,200만 원(국민연금 연간 최대소득)²⁰⁾을 포함한 336만 원~1억 3천만 원으로 구분하였다.²¹⁾

따라서 동 소득수준 범위 내에 있는 가입자는 가구규모에 의해 보조금이 결정되는 것으로 가정하여 효과를 분석한다.

1) 1인: 리스터연금형

가) 리스터연금형 공사연계연금의 지원수준

먼저, 4인 가구(두 자녀+부부)의 전체납입보험료 대비 지원금(보조금 및 세제혜택) 비중을 살펴보면, 소득수준에 따라 50.7~94.8%로 분석되었다. <표 Ⅲ-3>에서 보면, 소득이 1,950만 원 이하에서 지원금 비중은 94.8%이며, 9,750만 원 이상인 경우 52.6%여서 지원금 수준은 소득에 완전 비례하는 형태가 아니라 일정 범위 내에서 비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4인 가구의 기본보조금, 자녀보조금은 각각 40만 원, 78만 원으로 동일하나, 본인부담은 소득수준에 비례하여 최소 7.8만 원에서 155만 원으로

20) 현행 국민연금제도에서 보험료 납부에 적용되는 상하한 소득은 월 28만 원~434만 원(2016년 7월~2017년 6월)이므로 연간소득으로 환산하면, 336만 원~5,200만 원임.

21) 아래 분석결과에 나타난 소득, 납입보험금, 지원금 등은 별다른 언급이 없는 한 연간 기준임.

추정되었다. 이로 인해 전체납입보험료는 126만 원~273만 원으로 추정되었다.

한편, 지원금 규모 결정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소득이 3,250만 원인 4인 가구의 경우를 살펴보자. 이들 가구가 공사연계연금에 가입할 경우 전체납입보험료는 본인 소득의 4%에 해당하는 130만 원이 된다. 이 중 부부기준 40만 원의 기본보조금과 78만 원의 자녀 보조금을 수령하면 본인부담금은 12만 원이 된다. 여기에 본인부담금 12만 원에 대해 16.5%의 세액공제(2만 원)를 받게 되면, 보조금과 세제혜택을 모두 합산한 총 지원금은 120만 원이 되는데, 이는 전체 가입액 130만 원의 92.3%에 해당한다.

〈표 Ⅲ-3〉 리스터연금형 공사연계연금의 지원 효과(연간기준): 4인 가구(두 자녀 부부)¹⁾
(단위: 만 원, %)

연간 소득 ²⁾	보조금(A)		본인부담보험료 (B)	전체납입보험료 (A+B) ³⁾	추가 세제혜택 ⁴⁾	지원금 비중 ⁵⁾
	기본 보조금	자녀 보조금				
336	40	78	7,8	126	1,3	94.8
650	40	78	7,8	126	1,3	94.8
1,950	40	78	7,8	126	1,3	94.8
3,250	40	78	12	130	2,0	92.3
5,200	40	78	90	208	14,8	63.9
5,500	40	78	102	220	16,8	61.3
6,500	40	78	142	260	18,7	52.6
9,750	40	78	155	273	20,5	50.7
13,000	40	78	155	273	20,5	50.7

- 주: 1) 독일 리스터연금 모형을 활용.
- 2) 독일의 전년도 표준소득(유로)을 한화로 전환하였으며(환율 1,300원 적용), 여기에 현행 국민연금제도와 연계성을 고려하여 336만 원(국민연금 연간 최소소득), 5,200만 원(국민연금 연간 최대소득)을 포함하여 336만 원~1억 3천만 원으로 구분함.
- 3) 전체납입보험료는 기본보조금, 자녀보조금, 본인부담보험료의 합산액임.
- 4) 본인부담 보험료에 세액공제율(세율)을 곱해 산출하되, 5,500만 원 이하 소득자는 16.5%, 이상 소득자는 13.2% 적용함.
- 5) 지원금비중=(기본보조금+자녀보조금+추가세제혜택)/전체납입보험료

다음으로 1인가구의 전체납입보험료 대비 지원금(보조금 및 세제혜택) 비중을 살펴보면, 역시 소득수준에 따라 19.6~76.6%로 다르게 나타났다.

4인 가구와 비교할 때 전반적으로 지원율이 낮게 나타나고 있는 것은 부양가족 수에 따른 차이라고 볼 수 있다. 즉, 20만 원의 기본보조금 이외에 배우자 및 자녀 보조금을 수령하지 못하므로 전체 가입액 중 보조금 비중은 4인 가구에 비해 현저히 낮다.

앞에서와 마찬가지로 연소득 3,250만 원인 독신 근로자의 경우 보조금 20만 원과 본인납입금 110만 원에 대한 16.5%의 세액공제 금액인 18만 원을 정부로부터 수령하게 되어 전체 가입금액 중 지원금의 비중은 29.4%가 된다. 이러한 지원수준은 동일 소득수준의 4인 가구에 비해 낮지만 본인납입금액 110만 원 납입 시 총 38만 원의 무위험 수익이 보장되는 금융상품을 찾기는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다는 점에서 독신 가입자에게도 상당한 가입유인을 제공한다고 볼 수 있다.

〈표 Ⅲ-4〉 리스터연금형 공사연계연금의 지원 효과(연간기준): 1인 가구¹⁾

(단위: 만 원, %)

연간 소득 ²⁾	보조금(A)		본인부담보험료 (B)	전체납입보험료 (A+B) ³⁾	추가 세제혜택 ⁴⁾	지원금 비중 ⁵⁾
	기본보조금	자녀보조금				
336	20	0	8	28	1.3	76.6
650	20	0	8	28	1.3	76.6
1,950	20	0	58	78	9.6	37.9
3,250	20	0	110	130	18.1	29.4
5,200	20	0	188	208	31.0	24.5
5,500	20	0	200	220	33.0	24.1
6,500	20	0	240	260	31.7	19.9
9,750	20	0	253	273	33.4	19.6
13,000	20	0	253	273	33.4	19.6

주: 1)~5) 모두 앞의 〈표 Ⅲ-3〉의 각주와 동일함.

나) 노후소득 개선 효과

먼저, 4인 가구가 공사연계연금에 가입할 경우 소득대체율(본인소득기준)은 20년 가입기준으로 2.1~37.5% 증가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즉, 20년 가입 시 연소득 336만 원(국민연금 연간 최소소득)인 경우 37.5%, 5,200만 원(국민연금 연간 최고소득)의 경우 4.0%, 최고소득인 1억 3천만 원의 경우 2.1%로 나타났다. 동 결과에서 보면, 공사연계연금에 지급되는 보조금의 소득재분배 기능으로 인해 저소득층일수록 소득대체율이 높다. 다만, 소득대체율 산출 시 분모에 적용된 소득을 자신의 소득이 아닌 전체가입자의 평균소득으로 할 경우 소득에 비례하는 것으로 나타난다.²²⁾

22) 일반적으로 소득대체율은 자신의 퇴직 전 소득을 보전하는 연금소득 수준으로 정의되므로 특별한 연금이 없는 한 소득대체율은 본인소득기준에 의한 것으로 설명함.

가입기간 변화에 따른 효과를 살펴보면, 일정소득(3,250만 원~6,500만 원)에서는 10년 단위당 2%p씩 비례적으로 증가하나, 1,950만 원 이하 저소득층에서는 소득수준이 낮아질수록 그 수준도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9,750만 원 및 1억 3천만 원 이상 고소득층은 10년 단위당 1.1~1.4%p 정도 증가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표 Ⅲ-5〉 리스터연금형 공사연계연금 소득대체율 추정: 4인 가구(두 자녀 부부)¹⁾
(단위: 만 원, %)

구분 가입기간 연간소득 ²⁾	본인소득기준 ³⁾				평균소득기준 ⁴⁾			
	10년	20년	30년	40년	10년	20년	30년	40년
336	18.7	37.5	56.2	74.9	1.1	2.2	3.3	4.4
650	9.7	19.4	29.0	38.7	1.1	2.2	3.3	4.4
1,950	3.2	6.5	9.7	12.9	1.1	2.2	3.3	4.4
3,250	2.0	4.0	6.0	8.0	1.1	2.3	3.4	4.5
5,200	2.0	4.0	6.0	8.0	1.8	3.6	5.4	7.2
5,500	2.0	4.0	6.0	8.0	1.9	3.8	5.7	7.6
6,500	2.0	4.0	6.0	8.0	2.3	4.5	6.8	9.0
9,750	1.4	2.8	4.2	5.6	2.4	4.7	7.1	9.5
13,000	1.1	2.1	3.2	4.2	2.4	4.7	7.1	9.5

- 주: 1) 독일 리스터연금 모형을 활용.
- 2) 독일의 전년도 표준소득(유로)을 한화로 전환하였으며(환율 1,300원 적용), 여기에 현행 국민연금제도와 연계성을 고려하여 336만 원(국민연금 연간 최소소득), 5,200만 원(국민연금 연간 최대소득)을 포함하여 336만 원~1억 3천만 원으로 구분함.
- 3) 소득대체율 산출 시 분모인 소득을 자신의 소득으로 하여 산출.
- 4) 소득대체율 산출 시 분모인 소득을 전체가입자의 평균소득으로 하여 산출.

1인 가구는 20년간 공사연계연금에 가입할 경우 소득대체율(본인소득기준)은 2.1~8.3%p 증가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즉, 20년 가입 시 연소득 336만 원(국민연금 연간 최소소득)인 경우 8.3%p, 5,200만 원(국민연금 연간 최고소득)의 경우 4.0%p, 최고소득인 1억 3천만 원의 경우 2.1%p 소득대체율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4인 가구와 비교할 때 1인 가구의 소득대체율이 3,250만 원 이하 소득층에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소득과 피부양자 규모를 고려하여 보조금을 지급하는 공사연계연금에서는 4인 가구에 비해 1인 가구의 보조금이 낮아 이로 인해 발생할 연금소득이 낮기 때문이다.

가입기간 변화에 따른 효과를 살펴보면, 일정소득(1,950만 원~6,500만 원)에서는 10년 단위당 2%p씩 비례적으로 증가하나, 650만 원 이하 저소득층에서는 소득수준이 낮아질수록 그 수준도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9,750만 원 및 1억 3천만 원 이상 고소득층은 10년 단위당 1.1~1.4%p 정도 증가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이를 4인 가구와 비교하면, 1,950만 원 이하에서는 소득대체율이 적지만, 3,250만 원 이상의 소득수준에서는 차이가 없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3,250만 원의 소득수준 이상에서도 보조금의 차이는 발생하지만 전체납입보험료는 동일하기 때문이다.²³⁾

정리하면, 공사연계연금은 가입기간에 비례하고 소득이 낮을수록 본인 부담금 비율이 줄어들며, 가구원 수가 많을수록 보조금 증가하여 직·간접적인 소득재분배 기능이 존재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현실적으로 저소득층에서 가입기간이 감소할 수 있으므로 이 경우 효과는 줄어들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한편, 소득대체율 산출 시 분모에 적용된 소득을 자신의 소득이 아닌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으로 할 경우 소득에 비례하는 것으로 나타난다.²⁴⁾

〈표 Ⅲ-6〉 리스터연금형 공사연계연금 소득대체율 추정: 1인 가구¹⁾

(단위: 만 원, %)

구분 가입기간 연간소득 ²⁾	본인소득기준 ³⁾				평균소득기준 ⁴⁾			
	10년	20년	30년	40년	10년	20년	30년	40년
336	4.1	8.3	12.4	16.6	0.2	0.5	0.7	1.0
650	2.1	4.3	6.4	8.6	0.2	0.5	0.7	1.0
1,950	2.0	4.0	6.0	8.0	0.7	1.4	2.0	2.7
3,250	2.0	4.0	6.0	8.0	1.1	2.3	3.4	4.5
5,200	2.0	4.0	6.0	8.0	1.8	3.6	5.4	7.2
5,500	2.0	4.0	6.0	8.0	1.9	3.8	5.7	7.6
6,500	2.0	4.0	6.0	8.0	2.3	4.5	6.8	9.0
9,750	1.4	2.8	4.2	5.6	2.4	4.7	7.1	9.5
13,000	1.1	2.1	3.2	4.2	2.4	4.7	7.1	9.5

주: 1)~4) 모두 앞의 〈표 Ⅲ-5〉의 각주와 동일함.

23) 소득대체율은 전체납입보험료에 의해 발생한 연금소득을 자신의 근로소득(연간소득)으로 나누어 산출되며, 이때 전체납입보험료에 의해 발생한 연금소득이 동일하고 근로소득이 동일하다면 소득대체율은 같아짐.

24) 일반적으로 소득대체율은 자신의 퇴직 전 소득을 보전하는 연금소득 수준으로 정의되므로 특별한 언급이 없는 한 소득대체율은 본인소득기준에 의한 것으로 설명함.

2) 2안: 연금저축형

가) 연금저축형 공사연계연금의 지원수준

먼저, 4인 가구가 공사연계연금에 가입 시 전체 가입액 중 지원금 비중은 24.1~86.1%로 소득수준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다. <표 Ⅲ-7>에 의하면, 소득이 650만 원 이하에서 지원금 비중은 86.1%로 가장 높았으며, 1억 3천만 원에서는 24.1%로 나타나 지원금은 일정 소득범위 내에서 재분배 기능을 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4인 가구의 기본보조금, 자녀보조금은 각각 20만 원, 30만 원으로 동일하나, 본인부담은 소득수준에 비례하여 최소 10만 원에서 350만 원으로 추정되었다. 이로 인해 전체납입보험료는 60만 원~400만 원으로 추정되었다.

<표 Ⅲ-7> 연금저축형 공사연계연금의 지원 효과(연간기준): 4인 가구(두 자녀 부부)¹⁾
(단위: 만 원, %)

연간 소득 ²⁾	보조금(A)		본인부담보험료 (B)	전체납입보험료 (A+B) ³⁾	추가 세제혜택	지원금 비중 ⁴⁾
	기본보조금	자녀보조금				
336	20	30	10	60	1.7	86.1
650	20	30	10	60	1.7	86.1
1,950	20	30	28	78	4.6	70.0
3,250	20	30	80	130	13.2	48.6
5,200	20	30	158	208	26.1	36.6
5,500	20	30	170	220	28.1	35.5
6,500	20	30	210	260	27.7	29.9
9,750	20	30	340	390	44.9	24.3
13,000	20	30	350	400	46.2	24.1

주: 1) 2안 연금저축형 공사연계연금 모형 가정에 의해 산출(임금상승률, 물가상승률, 투자수익률, 관리비용은 고려하지 않음).

2) 독일의 전년도 표준소득(유로)을 한화로 전환하였으며(환율 1,300원 적용), 여기에 현행 국민연금제도와 연계성을 고려하여 336만 원(국민연금 연간 최소소득), 5,200만 원(국민연금 연간 최대소득)을 포함하여 336만 원~1억 3천만 원으로 구분함.

3) 전체납입보험료는 기본보조금, 자녀보조금, 본인부담보험료의 합산액임.

4) 지원금비중=(기본보조금+자녀보조금+추가세제혜택)/전체납입보험료

다음으로, 1인 가구의 지원금 비중은 소득수준에 따라 다르며 15.4~58.3%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4인 가구에 비해 보조금이 적어 지원금 비중이 감소한 것이나 소득증가에 따라 줄어드는 추세는 유사하다.

〈표 Ⅲ-8〉에서 보면, 1인 가구의 보조금은 자녀보조금이 없고 기본보조금만 10만 원이 발생하며, 본인 소득의 4%가 적용된 본인부담보험료(최소 10만 원)는 소득에 비례하여 10만 원~390만 원으로 추정되었다. 이로 인해 보조금과 본인부담보험료의 합산인 전체납입보험료는 20만 원~400만 원으로 추정된다. 보조금과 별도로 지급되는 본인부담보험료에 대한 세액공제액인 추가세제혜택은 1.7만 원~51.5만 원으로 분석되었다.

보조금은 소득수준에 무관하게 동일금액이 지급되지만 추가세제혜택은 소득에 비례하는 형태여서 전체적인 지원금 비중은 두 가지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다.

〈표 Ⅲ-8〉 연금저축형 공사연계연금의 지원 효과(연간기준): 1인 가구¹⁾

(단위: 만 원, %)

연간 소득 ²⁾	보조금(A)		본인부담보험료 (B)	전체납입보험료 (A+B) ³⁾	추가 세제혜택	지원금 비중 ⁴⁾
	기본보조금	자녀보조금				
336	10	0	10	20	1.7	58.3
650	10	0	16	26	2.6	48.6
1,950	10	0	68	78	11.2	27.2
3,250	10	0	120	130	19.8	22.9
5,200	10	0	198	208	32.7	20.5
5,500	10	0	210	220	34.7	20.3
6,500	10	0	250	260	33.0	16.5
9,750	10	0	380	390	50.2	15.4
13,000	10	0	390	400	51.5	15.4

주: 1)~4) 모두 앞의 〈표 Ⅲ-7〉의 각주와 동일함.

나) 노후소득 개선 효과

먼저, 4인 가구의 경우의 공사연계연금의 소득대체율(본인소득기준)은 20년 가입 기준으로 3.1~17.9%로 추정되었다. 즉, 20년 가입 시 연소득 336만 원(국민연금 연

간 최소소득)인 경우 17.9%, 5,200만 원(국민연금 연간 최고소득)의 경우 4.0%, 최고소득인 1억 3천만 원의 경우 3.1%로 나타났다. 동 결과에서 보면, 공사연계연금에 지급되는 보조금의 소득재분배 기능으로 인해 저소득층일수록 소득대체율이 높다. 그러나 앞의 리스터연금형(제1안)에 비해 저소득층 소득대체율 증가폭이 상대적으로 낮고 고소득층 소득대체율은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추정되었다.

가입기간 변화에 따른 효과를 살펴보면, 일정소득 (1,950만 원~9,750만 원)에서는 10년 단위당 2%p씩 비례적으로 증가하나, 650만 원 이하 저소득층에서는 소득수준이 낮아질수록 증가하는 비율도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최고 소득층인 1억 3천만 원 소득자는 10년 단위당 1.5%p 정도 증가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이는 전체 공사연계연금 가입자에 대한 지원금이 가입액의 일정 비율이 아닌 정액으로 지원되기 때문에 저소득층일수록 납입액 대비 지원금의 비중이 높기 때문으로 풀이할 수 있다.

〈표 Ⅲ-9〉 연금지축형 공사연계연금 소득대체율 추정: 4인 가구(두 자녀 부부)¹⁾

(단위: 만 원, %)

구분 가입기간 연간소득 ²⁾	본인소득기준 ³⁾				평균소득기준 ⁴⁾			
	10년	20년	30년	40년	10년	20년	30년	40년
336	8.9	17.9	26.8	35.7	1.1	2.2	3.3	4.4
650	4.6	9.2	13.8	18.5	1.1	2.2	3.3	4.4
1,950	2.0	4.0	6.0	8.0	1.4	2.9	4.3	5.8
3,250	2.0	4.0	6.0	8.0	2.4	4.8	7.2	9.6
5,200	2.0	4.0	6.0	8.0	3.9	7.7	11.6	15.4
5,500	2.0	4.0	6.0	8.0	4.1	8.1	12.2	16.3
6,500	2.0	4.0	6.0	8.0	4.8	9.6	14.4	19.3
9,750	2.0	4.0	6.0	8.0	7.2	14.4	21.7	28.9
13,000	1.5	3.1	4.6	6.2	7.4	14.8	22.2	29.6

주: 1) 2인 연금지축형 공사연계연금 모형 가정에 의해 산출(임금상승률, 물가상승률, 투자수익률, 관리비용은 고려하지 않음)

2) 독일의 전년도 표준소득(유로)을 한화로 전환하였으며(환율 1,300원 적용), 여기에 현행 국민연금제도와 연계성을 고려하여 336만 원(국민연금 연간 최소소득), 5,200만 원(국민연금 연간 최대소득)을 포함하여 336만 원~1억 3천만 원으로 구분함.

3) 소득대체율 산출 시 분모인 소득을 자신의 소득으로 하여 산출.

4) 소득대체율 산출 시 분모인 소득을 전체가입자의 평균소득으로 하여 산출.

다음으로, 1인 가구의 경우 공사연계연금의 소득대체율(본인소득기준)은 20년 가입기준으로 3.1~6.0%로 추정되었다. 즉, 20년 가입 시 연소득 336만 원(국민연금 연간 최소소득)인 경우 6.0%, 연소득 5,200만 원(국민연금 연간 최고소득)의 경우 4.0%, 최고소득인 1억 3천만 원의 경우 3.1%로 나타났다. 이는 4인 가구와 비교할 때 1인 가구는 연소득 650만 원 이하 저소득층에서 소득대체율이 현저히 감소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가입기간 변화에 따른 효과를 살펴보면, 일정소득(650만 원~9,750만 원)에서는 10년 단위당 2%p씩 비례적으로 증가하나, 336만 원의 최저 소득층에서는 10년 단위당 약 3%p정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연소득 1억 3천만 원의 고소득층은 10년 단위당 1.5%p 정도 증가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이를 4인 가구와 비교하면, 650만 원 이하에서는 소득대체율이 적지만, 1,950만 원 이상 소득계층에서는 차이가 없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1,950만 원 이상 소득계층에서는 보조금의 차이는 발생하지만 전체납입보험료는 자녀 수와 관계없이 동일하기 때문이다.

정리하면, 리스터연금형(제1안)에서와 같이 연금저축형(제2안)에 따른 공사연계 연금은 가입기간에 비례하고 소득재분배 기능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현실적 측면에서는 직업 안정성 등의 차이로 인해 저소득층에서 가입기간이 감소할 수 있으므로 이 경우 동 제도의 노후소득 증대 효과는 줄어들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표 Ⅲ-10〉 연금저축형 공사연계연금 소득대체를 추정: 1인 가구¹⁾

(단위: 만 원, %)

구분 가입기간 연간소득 ²⁾	본인소득기준 ³⁾				평균소득기준 ⁴⁾			
	10년	20년	30년	40년	10년	20년	30년	40년
336	3.0	6.0	8.9	11.9	0.4	0.7	1.1	1.5
650	2.0	4.0	6.0	8.0	0.5	1.0	1.4	1.9
1,950	2.0	4.0	6.0	8.0	1.4	2.9	4.3	5.8
3,250	2.0	4.0	6.0	8.0	2.4	4.8	7.2	9.6
5,200	2.0	4.0	6.0	8.0	3.9	7.7	11.6	15.4
5,500	2.0	4.0	6.0	8.0	4.1	8.1	12.2	16.3
6,500	2.0	4.0	6.0	8.0	4.8	9.6	14.4	19.3
9,750	2.0	4.0	6.0	8.0	7.2	14.4	21.7	28.9
13,000	1.5	3.1	4.6	6.2	7.4	14.8	22.2	29.6

주: 1)~4) 모두 앞의 〈표 Ⅲ-9〉의 각주와 동일함.

3) 3안: 공적연금 보충형

가) 공적연금 보충형 공사연계연금의 지원수준

먼저, 4인 가구의 지원금 비중은 25.6~86.1%로 소득수준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다. 〈표 Ⅲ-11〉에 나타난 바와 같이 소득이 650만 원 이하에서 지원금 비중은 86.1%로 가장 높았으며, 9,750만 원 이상에서는 25.6%로 나타나 앞의 유형들과 유사하게 저소득층일수록 지원금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4인 가구의 기본보조금, 자녀보조금은 각각 40만 원, 60만 원으로 동일하나, 본인부담은 소득수준에 비례하여 최소 20만 원에서 600만 원으로 추정되었다. 이로 인해 전체납입보험료는 120~700만 원으로 추정되었다.

〈표 Ⅲ-11〉 공적연금 보충형 공사연계연금의 지원 효과(연간기준): 4인 가구(두 자녀 부부)¹⁾
(단위: 만 원, %)

연간 소득 ²⁾	보조금(A)		본인부담보험료 (B)	전체납입보험료 (A+B) ³⁾	추가 세제혜택	지원금 비중 ⁴⁾
	기본보조금	자녀보조금				
336	40	60	20	120	3.3	86.1
650	40	60	20	120	3.3	86.1
1,950	40	60	76	176	12.5	64.1
3,250	40	60	193	293	31.8	45.0
5,200	40	60	368	468	60.7	34.3
5,500	40	60	395	495	65.2	33.4
6,500	40	60	485	585	64.0	28.0
9,750	40	60	600	700	79.2	25.6
13,000	40	60	600	700	79.2	25.6

주: 1) 2인 연금지축형 공사연계연금 모형 가정에 의해 산출(임금상승률, 물가상승률, 투자수익률, 관리비용은 고려하지 않음).

2) 독일의 전년도 표준소득(유로)을 한화로 전환하였으며(환율 1,300원 적용), 여기에 현행 국민연금제도와 연계성을 고려하여 336만 원(국민연금 연간 최소소득), 5,200만 원(국민연금 연간 최대소득)을 포함하여 336만 원~1억 3천만 원으로 구분함.

3) 전체납입보험료는 기본보조금, 자녀보조금, 본인부담보험료의 합산액임.

4) 지원금비중=(기본보조금+자녀보조금+추가세제혜택)/전체납입보험료

다음으로, 1인 가구의 지원금 비중은 소득수준에 따라 다르며 15.7~58.3%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4인 가구에 비해 피부양자에 따른 보조금이 적어 지원금 비중이 감소한 것이나 소득증가에 따라 줄어드는 추세는 유사하다.

〈표 Ⅲ-12〉에서 보면, 1인 가구는 자녀보조금이 없고 기본보조금만 20만 원을 수령하며, 본인 소득의 4%가 적용된 본인부담보험료(최소 20만 원)는 소득에 비례하여 20~680만 원으로 추정되었다. 이로 인해 보조금과 본인부담보험료의 합산인 전체납입보험료는 40~700만 원으로 추정된다. 보조금과 별도로 지급되는 본인부담보험료에 대한 세액공제액인 추가세제혜택은 3.3~89.8만 원으로 분석되었다.

〈표 Ⅲ-12〉 공적연금 보충형 공사연계연금의 지원 효과(연간기준): 1인 가구¹⁾

(단위: 만 원, %)

연간 소득 ²⁾	보조금(A)		본인부담보험료(B)	전체납입보험료(A+B) ³⁾	추가 세제혜택	지원금 비중 ⁴⁾
	기본보조금	자녀보조금				
336	20	0	20	40	3.3	58.3
650	20	0	39	59	6.4	45.0
1,950	20	0	156	176	25.7	26.0
3,250	20	0	273	293	45.0	22.2
5,200	20	0	448	468	73.9	20.1
5,500	20	0	475	495	78.4	19.9
6,500	20	0	565	585	74.6	16.2
9,750	20	0	680	700	89.8	15.7
13,000	20	0	680	700	89.8	15.7

주: 1)~4) 모두 앞의 〈표 Ⅲ-11〉의 각주와 동일함.

나) 노후소득 개선 효과

먼저, 4인 가구의 경우의 공사연계연금의 소득대체율(본인소득기준)은 20년 가입 기준으로 5.4~35.7%로 추정되었다. 즉, 20년 가입 시 연소득 336만 원(국민연금 연간 최소소득)인 경우 35.7%, 5,200만 원(국민연금 연간 최고소득)의 경우 9.0%, 최고소득인 1억 3천만 원의 경우 5.4%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앞의 리스터연금형(제1안)과 유사한 수준이고 연금저축형(제2안)에 비해서는 상당히 높은 수준이다.

가입기간 변화에 따른 효과를 살펴보면, 일정소득(1,950만 원~6,500만 원)에서는 10년 단위당 4.5%p씩 비례적으로 증가하나, 650만 원 이하 저소득층에서는 소득수준이 낮아질수록 증가하는 비율도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고소득층인 9,750만 원과 1억 3천만 원 소득자는 가입기간이 10년 증가할 때마다 소득대체율이 2.7~3.6%p 정도 증가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표 Ⅲ-13〉 공적연금 보충형 공사연계연금 소득대체를 추정: 4인 가구(두 자녀 부부)¹⁾
(단위: 만 원, %)

구분 가입기간 연간소득 ²⁾	본인소득기준 ³⁾				평균소득기준 ⁴⁾			
	10년	20년	30년	40년	10년	20년	30년	40년
336	17.9	35.7	53.6	71.4	2.2	4.4	6.7	8.9
650	9.2	18.5	27.7	36.9	2.2	4.4	6.7	8.9
1,950	4.5	9.0	13.5	18.0	3.3	6.5	9.8	13.0
3,250	4.5	9.0	13.5	18.0	5.4	10.8	16.3	21.7
5,200	4.5	9.0	13.5	18.0	8.7	17.3	26.0	34.7
5,500	4.5	9.0	13.5	18.0	9.2	18.3	27.5	36.7
6,500	4.5	9.0	13.5	18.0	10.8	21.7	32.5	43.3
9,750	3.6	7.2	10.8	14.4	13.0	25.9	38.9	51.9
13,000	2.7	5.4	8.1	10.8	13.0	25.9	38.9	51.9

주: 1) 3인 공적연금 보충형 공사연계연금 모형 가정에 의해 산출(임금상승률, 물가상승률, 투자수익률, 관리비용은 고려하지 않음).

2) 독일의 전년도 표준소득(유로)을 한화로 전환하였으며(환율 1,300원 적용), 여기에 현행 국민연금제도와 연계성을 고려하여 336만 원(국민연금 연간 최소소득), 5,200만 원(국민연금 연간 최대소득)을 포함하여 336만 원~1억 3천만 원으로 구분함.

3) 소득대체를 산출 시 분모인 소득을 자신의 소득으로 하여 산출.

4) 소득대체를 산출 시 분모인 소득을 전체가입자의 평균소득으로 하여 산출.

다음으로, 1인 가구의 공사연계연금 가입으로 인한 소득대체율(본인소득기준)은 20년 가입기준으로 5.4~11.9%로 추정되었다. 즉, 20년 가입 시 연소득 336만 원(국민연금 연간 최소소득)인 경우 11.9%, 5,200만 원(국민연금 연간 최고소득)의 경우 9.0%, 최고소득인 1억 3천만 원의 경우 5.4%로 나타났다. 이는 4인 가구와 비교할 때 1인 가구는 650만 원 이하 저소득층에서 소득대체율이 현저히 감소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가입기간 변화에 따른 효과를 살펴보면, 일정소득(650만 원~6,500만 원)에서는 10년 단위당 4.5%p씩 비례적으로 증가하나, 336만 원의 최저 소득층에서는 10년 단위당 약 6%p정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9,750만 원과 1억 3천만 원의 고소득층은 10년 단위당 2.7~3.6%p 정도 증가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이를 4인 가구와 비교하면, 650만 원 이하에서는 소득대체율이 적지만, 1,950만 원 이상의 소득수준에서는 차이가 없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소득이 적을 경우 정액으로 지급되는

보조금의 비중이 높으며, 소득이 높을 경우에는 연계연금의 납입상한이 존재하여 기여금이 소득에 따라 선형적으로 증가하지 않기 때문에 풀이할 수 있다.

정리하면, 리스터연금형(제1안), 연금저축형(제2안), 공적연금 보충형(제3안)에 따른 공사연계연금도 가입기간에 비례하고 소득재분배 기능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따라서 공적연금 부족분 충당을 위한 보충형 유형에서도 현실적으로 저소득층에서 가입기간이 감소할 수 있으므로 이 경우 동 제도의 효과는 줄어들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표 Ⅲ-14〉 공적연금 보충형 공사연계연금 소득대체율 추정: 1인 가구¹⁾

(단위: 만 원, %)

구분 가입기간 연간소득 ²⁾	본인소득기준 ³⁾				평균소득기준 ⁴⁾			
	10년	20년	30년	40년	10년	20년	30년	40년
336	6.0	11.9	17.9	23.8	0.7	1.5	2.2	3.0
650	4.5	9.0	13.5	18.0	1.1	2.2	3.3	4.3
1,950	4.5	9.0	13.5	18.0	3.3	6.5	9.8	13.0
3,250	4.5	9.0	13.5	18.0	5.4	10.8	16.3	21.7
5,200	4.5	9.0	13.5	18.0	8.7	17.3	26.0	34.7
5,500	4.5	9.0	13.5	18.0	9.2	18.3	27.5	36.7
6,500	4.5	9.0	13.5	18.0	10.8	21.7	32.5	43.3
9,750	3.6	7.2	10.8	14.4	13.0	25.9	38.9	51.9
13,000	2.7	5.4	8.1	10.8	13.0	25.9	38.9	51.9

주: 1)~4) 모두 앞의 〈표 Ⅲ-13〉의 각주와 동일함.

나. 보조금의 탈빈곤 및 빈곤율 완화 효과

앞에서는 3가지 시나리오에 따른 공사연계연금의 지원수준과 소득대체율 효과를 분석하였다. 즉, 동 분석은 가입자의 소득수준 및 가구 규모에 따른 경제적 효과분석으로 개별가구 혹은 개인에 초점을 둔 것이었다.

여기서는 범위를 확대하여 공사연계연금 도입이 사회 혹은 국가 전체적으로 미치는 저소득층의 탈빈곤 및 전체 빈곤율의 완화 효과 그리고 재정지출 효과에 대해 분

석하고자 한다. 제도 도입의 효과를 추정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제도 도입에 대한 가입자의 탄력성을 이용하는 방법이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과거 사적연금에 대한 보조금을 지급한 적이 없기 때문에 제도에 대한 가입자의 탄력성을 이용할 수는 없다. 때문에 본 보고서에서는 공사연계연금의 가입대상자가 되는 공적연금 가입자 모두가 공사연계연금에 가입함을 가정하여 공사연계연금의 효과를 분석한다. 대상자 전체가 가입하는 것을 가정하여 분석한 이유는 전체 가입자 규모를 추정할 결과를 알고 있을 경우 이를 바탕으로 전체 중 일부가 가입하는 경우를 비교적 쉽게 예상할 수 있기 때문이다.²⁵⁾ 먼저 빈곤개선 효과에 대해 각 시나리오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1안: 독일 리스터연금형²⁶⁾

가) 계층이동 및 탈빈곤 효과²⁷⁾

공사연계연금 가입에 따라 발생한 연금소득으로 소득계층 이동이 발생하며, 가입기간이 늘어남에 따라 급여수준이 증가하여 상대적으로 계층이동도 활발해 질 것으로 보인다. 상대빈곤선²⁸⁾이 변화하지 않는 것으로 가정할 경우 가입기간 10년(20년, 30년)을 기준으로 보면, 빈곤층의 0.3%(0.9%, 1.1%), 중산층의 1.8%(3.8%, 6.0%)는 상향이동하고, 고소득층은 변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상대빈곤선이 변화하는 것으로 가정할 경우 빈곤층의 0.1%(0.3%, 0.3%)는 상향이동, 중산층의 0.4%(0.6%, 0.9%)는 하향이동, 0.2%(0.7%, 1.1%)는 상향이동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고소득층의 0.2%(0.3%, 0.7%)가 하향이동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²⁹⁾

25) 우리나라의 소득 및 가구분포와 독일 리스터연금 가입률을 고려한 공사연계연금 도입 시 빈곤율 완화 효과를 분석한 결과를 부록에 수록함.

26) 리스터연금 유로화 적용 값은 부록 참조.

27) 탈빈곤은 분석대상집단이 특정 정책 도입 이전에는 빈곤이었으나 도입 이후 비빈곤으로 전환되는 것을 의미함. 분석대상 전체에서 빈곤자의 비율을 의미하는 빈곤율과는 차이가 있음(강성호 외 2016).

28) OECD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를 빈곤선으로 설정함.

29) 공사연계연금 적용 이후 중산층이 오히려 빈곤층으로 전락하는 경우가 관찰됨. 이는 빈곤기준선 상승으로 인한 효과와 전체 중산층 중 공적연금 가입자만이 공사연계에 가입하

특히, 공사연계연금에 대한 보조금 지급에 따라 빈곤층의 노후소득 증가로 계층 이동 하는 경우는 '탈빈곤'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앞에서 설명한 빈곤층의 상향계층 이동 비율은 '탈빈곤 비율'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의하면 가입기간이 10년(20년, 30년)으로 빈곤선이 변화하지 않는다고 할 경우 가입기간 10년 시 탈빈곤 비율은 0.3%(0.9%, 1.1%)이며, 동일 조건으로 상대빈곤 선도 올라가는 것으로 가정할 경우 탈빈곤 비율은 0.1%(0.3%, 0.3%)로 분석되었다.

〈표 Ⅲ-15〉 리스터연금형 보조금 지급 전후 소득계층 이동

(단위: %)

지급 전 \ 지급 후	가입기간 10년			가입기간 20년			가입기간 30년		
	빈곤층	중산층	고소득층	빈곤층	중산층	고소득층	빈곤층	중산층	고소득층
빈곤층	99.7 (99.9)	0.3 (0.1)	0.0 (0.0)	99.1 (99.7)	0.9 (0.3)	0.0 (0.0)	98.9 (99.7)	1.1 (0.3)	0.0 (0.0)
중산층	0.0 (0.4)	98.2 (99.5)	1.8 (0.2)	0.0 (0.6)	96.2 (98.7)	3.8 (0.7)	0.0 (0.9)	94.0 (98.1)	6.0 (1.1)
고소득층	0.0 (0.0)	0.0 (0.2)	100.0 (99.8)	0.0 (0.0)	0.0 (0.3)	100.0 (99.7)	0.0 (0.0)	0.0 (0.7)	100.0 (99.3)

주: 1) 빈곤층은 균등화중위소득의 50% 미만, 중산층은 균등화중위소득의 50~150% 미만, 고소득층은 균등화 중위소득의 150% 이상인 가구.

2) ()은 빈곤선이 변화하는 것을 가정하여 산출한 경우임.

3) 65세 미만으로 4% 보험료를 최소납부액 이상으로 납부할 수 있는 공적연금 가입자를 대상으로 함.

나) 빈곤율 개선 효과

여기서는 계층이동이 아니라 노인 가구 전체에서 빈곤노인 가구가 차지하는 비율 인 노인빈곤율을 기준으로 공사연계연금의 빈곤율 개선 효과를 살펴본다.

〈표 Ⅲ-16〉은 보조금 지급에 따라 연금가입기간이 증가할수록 연금소득이 증대되어 노인빈곤율을 개선시키고 있다는 것을 보여 주고 있다. 이에 의하면, 10년 가입 시 노인빈곤율은 0.7%p 줄어들고, 20년 가입으로 늘어나게 되면 1.4%p, 30년 가입 시 2.2%p, 40년 가입 시 2.9%p만큼 노인빈곤율이 감소하게 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계 되어 하위 중산층중 공적연금에 가입하지 않은 사람들이 빈곤선 상승으로 인해 빈곤 층으로 분류되는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임.

〈표 Ⅲ-16〉 리스터연금형 보조금 지급에 따른 가입기간별 노인빈곤율 추정

(단위: %)

구분	2013년	가입기간			
		10년	20년	30년	40년
노인빈곤율	49.6	48.9	48.2	47.4	46.7
개선 효과	-	0.7	1.4	2.2	2.9

2) 2안: 연금저축형

가) 계층이동 및 탈빈곤 효과

제1안에서와 마찬가지로 제2안의 경우도 공사연계연금 가입에 따라 발생한 연금 소득으로 소득계층 이동이 발생하며, 가입기간이 늘어남에 따라 급여수준이 증가하여 상대적으로 계층이동도 활발해 질 것으로 보인다. 상대빈곤선이 변화하지 않는 것으로 가정할 경우 가입기간 10년(20년, 30년)을 기준으로 보면, 빈곤층의 0.3%(0.9%, 1.1%), 중산층의 1.1%(2.7%, 4.0%)는 상향이동하고, 고소득층은 변화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상대빈곤선이 변화하는 것으로 가정할 경우 빈곤층의 0.1%(0.3%, 0.3%)는 상향이동, 중산층의 0.4%(0.5%, 0.9%)는 하향이동, 0.0%(0.1%, 0.2%)는 상향이동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고소득층의 0.7%(0.7%, 1.6%)는 하향이동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마찬가지로 ‘탈빈곤 비율’은 빈곤선이 변화하지 않는다고 할 경우 0.3%(0.9%, 1.1%)이며, 상대 빈곤선도 올라가는 것으로 가정할 경우 0.1%(0.3%, 0.3%)라고 할 수 있다. 제1안의 분석결과와 비교할 때 계층이동 효과는 크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나 탈빈곤 비율은 유사한 것으로 평가된다.

〈표 Ⅲ-17〉 연금저축형 보조금 지급 전후 소득계층 이동

(단위: %)

지급 후 지급 전	가입기간 10년			가입기간 20년			가입기간 30년		
	빈곤층	중산층	고소득층	빈곤층	중산층	고소득층	빈곤층	중산층	고소득층
빈곤층	99.7 (99.9)	0.3 (0.1)	0.0 (0.0)	99.1 (99.7)	0.9 (0.3)	0.0 (0.0)	98.9 (99.7)	1.1 (0.3)	0.0 (0.0)
중산층	0.0 (0.4)	98.9 (99.6)	1.1 (0.0)	0.0 (0.5)	97.3 (99.4)	2.7 (0.1)	0.0 (0.9)	96.0 (98.9)	4.0 (0.2)
고소득층	0.0 (0.0)	0.0 (0.7)	100.0 (99.3)	0.0 (0.0)	0.0 (0.7)	100.0 (99.3)	0.0 (0.0)	0.0 (1.6)	100.0 (98.4)

주: 〈표 Ⅲ-15〉의 기준과 동일함.

나) 빈곤율 개선 효과

앞에서와 마찬가지로 방법으로 공사연계연금의 노인빈곤율 개선 효과를 살펴보면 다음 〈표 Ⅲ-18〉과 같다. 이에 의하면, 10년 가입 시 빈곤율은 0.6%p 줄어들고, 20년 가입으로 늘어나게 되면 1.3%p, 30년 가입 시 2.0%p, 40년 가입 시 2.7%p만큼 노인빈곤율이 감소하게 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제1안의 분석결과와 비교할 때, 제2안의 빈곤율 개선 효과는 다소 낮은 것으로 평가된다.

〈표 Ⅲ-18〉 연금저축형 보조금 지급에 따른 가입기간별 노인빈곤율 추정

(단위: %)

구분	2013년	가입기간			
		10년	20년	30년	40년
노인빈곤율	49.6	49.0	48.3	47.6	46.9
개선 효과	-	0.6	1.3	2.0	2.7

3) 3안: 공적연금 보충형

가) 계층이동 및 탈빈곤 효과

제1안 및 제2안과 동일하게 제3안의 경우도 공사연계연금의 가입기간이 늘어남에 따라 급여수준이 증가하고 이로 인해 노후에 계층이동도 활발해 질 것으로 보인다. 상대빈곤선이 변화하지 않는 것으로 가정할 경우 가입기간 10년(20년, 30년)을 기준으로 보면, 빈곤층의 0.9%(1.7%, 3.2%), 중산층의 2.7%(5.5%, 9.1%)는 상향이동하고, 고소득층은 변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상대빈곤선이 변화하는 것으로 가정할 경우 빈곤층의 0.3%(0.7%, 0.9%)는 상향이동, 중산층의 0.6%(1.2%, 2.1%)는 하향이동, 0.1%(0.3%, 0.4%)는 상향이동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고소득층의 0.9%(2.4%, 4.8%)는 하향이동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마찬가지로 '탈빈곤 비율'은 빈곤선이 변화하지 않는 것으로 가정할 경우 0.9%(1.7%, 3.2%)이며, 상대빈곤선도 올라가는 것으로 가정할 경우 0.3%(0.7%, 0.9%)라고 할 수 있다.

제2안에 비해 계층이동 효과 및 탈빈곤 비율 모두 높으며, 제1안과는 유사한 수준인 것으로 평가된다.

〈표 Ⅲ-19〉 공적연금 보충형 보조금 지급 전후 소득계층 이동

(단위: %)

지급 후 지급 전	가입기간 10년			가입기간 20년			가입기간 30년		
	빈곤층	중산층	고소득층	빈곤층	중산층	고소득층	빈곤층	중산층	고소득층
빈곤층	99.1 (99.7)	0.9 (0.3)	0.0 (0.0)	98.3 (99.3)	1.7 (0.7)	0.0 (0.0)	96.8 (99.1)	3.2 (0.9)	0.0 (0.0)
중산층	0.0 (0.6)	97.3 (99.3)	2.7 (0.1)	0.0 (1.2)	94.5 (98.5)	5.5 (0.3)	0.0 (2.1)	90.9 (97.5)	9.1 (0.4)
고소득층	0.0 (0.0)	0.0 (0.9)	100.0 (99.1)	0.0 (0.0)	0.0 (2.4)	100.0 (97.6)	0.0 (0.0)	0.0 (4.8)	100.0 (95.2)

주: 〈표 Ⅲ-15〉의 기준과 동일함.

나) 빈곤율 개선 효과

앞에서와 마찬가지로 방법으로 공사연계연금의 노인빈곤율 개선 효과를 살펴보면 다음 <표 Ⅲ-20>과 같다. 이에 의하면, 10년 가입 시 빈곤율은 1.3%p 줄어들고, 20년 가입으로 늘어나게 되면 2.9%p, 30년 가입 시 4.5%p, 40년 가입 시 5.9%p만큼 노인빈곤율이 감소하게 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제1안 및 제2안에 비해 제3안의 빈곤율 개선 효과는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표 Ⅲ-20> 공적연금 보충형 보조금 지급에 따른 가입기간별 노인빈곤율 추정

(단위: %)

구분	2013년	가입기간			
		10년	20년	30년	40년
노인빈곤율	49.6	48.3	46.7	45.1	43.7
개선 효과	-	1.3	2.9	4.5	5.9

다. 재정부담 효과 및 평가

공사연계연금이 개인적 측면에서 노후소득을 제고시키고 사회적으로 노인빈곤율도 낮추는 효과가 있다고 하더라도 투입되는 비용이 너무 크다면 합리적인 정책이라 할 수 없을 것이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앞서 분석한 시나리오별로 제도 도입으로 인한 재정지출 규모를 통계청 가계동향 조사를 통해 얻은 소득과 가구구성의 분포를 고려하여 추정하였다.

1) 1안: 독일 리스터연금형³⁰⁾(환율 적용)

국민연금 가입자에 대해 독일 리스터연금형으로 공사연계연금에 대한 보조금을 지원할 경우 연간 지원금액은 8.4조 원으로 추정되었다. 이는 '성인 기본보조금' 3.9조 원, '자녀보조금' 2.4조 원, '세제혜택' 2.1조 원으로 구성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 Ⅲ-21〉 리스터연금형 보조금 지급에 따른 재정부담 효과

구분		기본 보조금	자녀 보조금	세제 혜택	지원 금액	본인부담 보험료	전체납입 보험료
부부+2인 자녀	평균 (만 원)	40	48	18	106	126	214
	합계 (조 원)	1.2	1.5	0.5	3.2	3.8	6.5
독신 가구	평균 (만 원)	20	0	17	37	110	130
	합계 (조 원)	0.4	0.0	0.3	0.7	2.1	2.5
기타	평균 (만 원)	39	16	21	76	145	199
	합계 (조 원)	2.3	0.9	1.2	4.4	8.5	11.7
전체	평균 (만 원)	36	22	19	77	133	191
	합계 (조 원)	3.9	2.4	2.1	8.4	14.4	20.7

2) 2안: 연금저축형

국민연금 가입자 가구에 대해 연금저축형으로 공사연계연금에 대한 보조금을 지원한다면 연간 지원금액은 5.1조 원으로 추정되었다. 이는 '성인 기본보조금' 1.9조 원, '자녀보조금' 1.5조 원, '세제혜택' 1.7조 원으로 구성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30) 리스터연금 유로화 적용 값은 부록 참조.

〈표 Ⅲ-22〉 연금저축형 보조금 지급에 따른 재정부담 효과

구분		기본 보조금	자녀 보조금	세제 혜택	지원 금액	본인부담 보험료	전체납입 보험료
부부+2인 자녀	평균 (만 원)	20	30	14	64	95	145
	합계 (조 원)	0.6	0.9	0.4	1.9	2.9	4.4
독신 가구	평균 (만 원)	10	0	16	26	102	112
	합계 (조 원)	0.2	0.0	0.3	0.5	2.0	2.2
기타	평균 (만 원)	20	10	16	46	110	139
	합계 (조 원)	1.1	0.6	1.0	2.7	6.5	8.2
전체	평균 (만 원)	18	14	16	47	104	136
	합계 (조 원)	1.9	1.5	1.7	5.1	11.3	14.7

3) 3안: 공적연금 보충형

국민연금 가입자 가구에 대해 공적연금 보충형으로 공사연계연금에 대한 보조금을 지원한다면 연간 지원금액은 10.4조 원으로 추정되었다. 이는 ‘성인 기본보조금’ 3.9조 원, ‘자녀보조금’ 3.0조 원, ‘세제혜택’ 3.5조 원으로 구성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 Ⅲ-23〉 공적연금 보충형 보조금 지급에 따른 재정부담 효과

구분		기본 보조금	자녀 보조금	세제 혜택	지원 금액	본인부담 보험료	전체납입 보험료
부부+2인 자녀	평균 (만 원)	40	60	29	129	194	294
	합계 (조 원)	1.2	1.8	0.9	3.9	5.9	8.9
독신 가구	평균 (만 원)	20	0	35	55	218	238
	합계 (조 원)	0.4	0.0	0.7	1.1	4.2	4.6
기타	평균 (만 원)	39	20	34	92	225	284
	합계 (조 원)	2.3	1.2	2.0	5.4	13.3	16.7
전체	평균 (만 원)	36	27	33	96	215	278
	합계 (조 원)	3.9	3.0	3.5	10.4	23.3	30.2

4) 기초연금 효과와의 비교

앞에서 살펴본 공사연계연금의 재정부담 수준을 파악하기 위해 기초연금의 재정과 비교를 통해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기초연금은 현재 65세 이상의 저소득 노인 70%를 대상으로 조세재원을 사용하여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신의 기여분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에 반해 공사연계연금은 자신이 기여한 보험료에 대해 매칭으로 보조금을 제공하므로 연금소득의 재원은 본인부담 보험료와 보조금으로 구성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앞에서 분석한 공사연계연금 가입에 따른 빈곤율 개선 효과와 동일한 효과를 제공하는 기초연금 재원 수준은 공사연계연금에서의 지원금액과 본인부담보험료의 합산액인 전체납입보험료만큼이어야 한다.

이를 산식으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다.

- 빈곤개선 효과 = f(기초연금재원) = g(공사연계연금재원)

(여기서, 기초연금재원=전액국고보조, 공사연계연금재원=국고보조+본인부담보험료)

독일식 리스터연금의 지원 수준을 그대로 도입하는 경우를 통계청 가계동향조사의 소득 및 연령 분포를 감안하여 보조금 지급에 필요한 연간 재정지출을 추산한 결과 약 8.4조 원으로 계산되었다. 이 중 중산층 이상 계층에 매년 가구당 평균 82만 원 씩 약 6.3조 원이 지급될 것으로 나타났으며, 빈곤층에는 평균 66만 원씩 약 2.1조 원이 지급될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다른 조건이 변하지 않을 경우 49.6%의 노인빈곤율이 유지된다고 가정할 때, 국민연금 가입자 모두가 리스터 연금을 벤치마크한 공사연계연금에 40년간 가입하면 노인빈곤율은 46.7%로 약 3%p의 줄어 들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Ⅲ-24〉 리스터연금형 공사연계연금 빈곤여부별 재정지원 효과

구분		2013년 노인빈곤율 49.6%	가입기간			
			10년 48.9%	20년 48.2%	30년 47.4%	40년 46.7%
비빈곤	평균(만 원)	82	82	82	82	82
	합계(조 원)	6.3	6.4	6.5	6.6	6.7
빈곤	평균(만 원)	66	66	65	64	64
	합계(조 원)	2.1	2.0	1.9	1.8	1.7
합계	평균(만 원)	77	77	77	77	77
	합계(조 원)	8.4	8.4	8.4	8.4	8.4

현재의 연금저축을 벤치마크한 공사연금을 도입할 경우 필요한 재정소요를 소득 수준과 가구원 구성을 고려하여 추산한 결과 연간 약 5.1조 원의 재원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었다. 이 중 3.8조 원은 중산층 이상 계층에 지급될 것으로 예상되었으며, 1.4조 원은 빈곤층에 지급될 것으로 나타났다. 공사연계연금 가입대상자가 40년간 가입할 경우 노인빈곤율은 약 2.6%p(49.6% → 46.9%) 감소할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Ⅲ-25〉 연금저축형 공사연계연금 빈곤여부별 재정지원 효과

구분		2013년 노인빈곤율 49.6%	가입기간			
			10년 49.0%	20년 48.3%	30년 47.6%	40년 46.9%
비빈곤	평균(만 원)	49	49	49	49	49
	합계(조 원)	3.8	3.8	3.9	3.9	4.0
빈곤	평균(만 원)	44	44	43	43	43
	합계(조 원)	1.4	1.3	1.3	1.2	1.1
합계	평균(만 원)	47	47	47	47	47
	합계(조 원)	5.1	5.1	5.1	5.1	5.1

공적연금 보충형 연금의 경우 통계청 가계동향 조사상의 소득 및 가구구성 분포를 활용하여 가중평균 한 가구당 지원금액은 연간 96만 원으로 추정되었다(〈표 Ⅲ-26〉 참조). 이를 중산층 이상과 빈곤층으로 구분하여 보면, 중산층 이상의 경우 평균 98만 원 정도를 수령하는 것으로 나타나 중산층 이상이 수령하는 보조금의 총액은 약 7.5조 원인 것으로 나타났고, 빈곤층의 경우 평균 91만 원 정도를 수령하여 총 2.8조 원 정도의 재정이 투입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른 조건이 모두 동일할 경우 49.6%의 노인빈곤율이 유지된다고 가정할 때, 보조금 지급 대상자 모두가 40년간 공사연계연금에 가입하여 연금을 수령하면 노인빈곤율은 기존보다 약 6% 개선된 43.7%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즉, 빈곤층에 대한 연간 2.8조 원의 보조금 지급이 꾸준히 이루어질 경우 빈곤율을 최대 6%p 완화할 수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이를 기초연금의 빈곤율 개선 효과와 비교해 보면, 2015년에 10조 원으로 시작하여 그 규모가 매년 점증하여 2040년에는 100조 원의 재원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는 기초연금 지급으로 인한 노인빈곤율 완화 효과가 약 10%p(45.1% → 34.7%)인 것(이용하·김원섭 2013)을 감안하면 공사연계연금의 투입 재정대비 노인빈곤 완화 효과는 공사연계연금이 기초연금에 비해 훨씬 더 크다 하겠다.

〈표 Ⅲ-26〉 공적연금 보충형 공사연계연금 빈곤여부별 재정지원 효과

구분		2013년 노인빈곤율 49.6%	가입기간			
			10년 48.3%	20년 46.7%	30년 45.1%	40년 43.7%
비빈곤	평균(만 원)	98	98	98	98	98
	합계(조 원)	7.5	7.8	8.1	8.3	8.6
빈곤	평균(만 원)	91	90	88	88	87
	합계(조 원)	2.8	2.6	2.3	2.1	1.8
합계	평균(만 원)	96	96	96	96	96
	합계(조 원)	10.4	10.4	10.4	10.4	10.4

라. 소결

본 장에서는 공사연계연금의 효과를 3가지 시나리오(안)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독일의 보조금 지급 수준을 국내에 적용할 경우 그 효과를 분석함으로써 기준으로 삼았고, 현재 시행되고 있는 연금저축의 지원 수준을 보조금으로 지급하는 경우의 효과를 분석하여 기존 세제혜택과 유사한 수준의 정책 효과를 분석하였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국민연금이 목표로 하고 있는 소득대체율을 달성하기 위한 수준의 보조금 지급 시 필요 재원과 효과를 분석하였다.

보조금 지급에 관한 재정지출과 빈곤율 완화 효과를 일정한 가정하에 시나리오 별로 분석해 본 결과 리스터리연금형 보조금 지급 제도를 도입하여 현재 국민연금 가입자들이 모두 가입할 경우 연간 8.4조 원의 재원이 필요할 것으로 추정되며 이 중 2.1조 원은 저소득층에 그리고 6.3조 원은 중산층 이상에 보조금으로 지원될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리고 8.4조 원의 보조금 지출은 약 14.4조 원의 추가적인 연금자산 적립을 발생시킬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연금자산 적립이 40년간 꾸준히 이루어질 경우(다른 조건이 변하지 않는다고 할 때) 노인빈곤율은 46.7%까지 감소할 것으로 분석되었다. 2안으로 제시된 연금저축형의 경우 국민연금 가입자들이 모두 가입할 경우 연간 5.1조 원으로 1안에 비해서 다소 적은 재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었다. 이 중 1.4조 원은 빈곤층이 그리고 3.8조 원은 중산층 이상이 보조금으로 수령할 것

으로 분석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재정지출은 약 11.3조 원의 노후자금을 추가로 적립시킬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이러한 노후자금의 적립은 장기적으로 노인빈곤율을 46.9%까지 감소시킬 것으로 예상되었다. 마지막 3안으로 공적연금의 부족분을 충족시키기 위한 수준의 보조금 지급의 경우 약 10.4조 원의 재원이 필요하며, 이 중 2.8조 원이 빈곤층에게 그리고 7.5조 원이 중산층 이상에게 지급될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리고 보조금의 지급은 약 23.3조 원의 연금자산을 추가로 축적시켜 40년 적립 시 빈곤율을 43.7%까지 감소시킬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었다.

지금까지 연금저축에 대한 세제혜택이 꾸준히 적용되어 왔으나 근로소득자의 연금저축 가입률은 13.2% 수준에 머물고 있으며, 특히 연소득 4,000만 원 이하자의 연금저축 가입률은 4.7% 수준임을 고려할 때 사적연금 가입률을 증가시킬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그리고 앞서 논의된 세제혜택의 한계를 고려할 때 보조금의 지급은 중·저소득층의 사적연금 가입유인을 획기적으로 증대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본 장에서 살펴본 시나리오별 빈곤완화 효과 및 재정소요를 분석한 결과 보조금 지급 규모를 늘릴 경우 재정부담은 커지는 대신 빈곤율 완화 효과 역시 큰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보조금의 지급 규모는 국가의 재정형편 및 지출의 우선순위를 고려한 사회적 합의를 통해 결정되어야 할 부분이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높은 노인빈곤율과, 전체 근로자의 13.2%만이 연금저축에 가입³¹⁾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규모 면에서 현재 연금저축과 유사한 수준의 1안 혹은 2안의 경우 연금저축 가입유인 제고효과가 충분하지 않을 수 있다. 그리고 노인빈곤율 완화 효과 역시 3안에 비해 낮다. 2015년 OECD 기준 우리나라의 국민부담률은 25.3%로, 이는 OECD 국가 중 4번째로 낮은 수준이며 OECD 평균 34.3%에 비해 9%p나 낮은 수준이다.³²⁾³³⁾ 따라서 현재 국민부담률은 여타 선진국대비 높은 수준이 아니므로 국민의 합의가 전제된다면 증세 등을 통한 재원확보가 불가능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31) 국세통계연보(2016).

32) 우리나라보다 국민부담률이 낮은 나라는 아일랜드(23.6%), 칠레(20.7%) 그리고 멕시코(17.4%)뿐임.

33) OECD statistics(2016), "Public sector, Taxation and Market Regulation"; <https://stats.oecd.org/Index.aspx?DataSetCode=REV>.

따라서 현재의 노인빈곤율, 고령화 속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공적연금을 보완할 수 있는 수준의 3안이 연금자산 축적 및 노인빈곤율 완화 측면에서 가장 큰 효과를 볼 수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IV. 공사연계연금 도입 방안

1. 제도설계 개요

가. 보조금 지급 수준 및 가입방식

1) 가입액 및 보조금 지급 수준

보조금 지급 수준은 앞서 살펴본 연금저축형 공사연계연금처럼 적은 수준의 부담금과 보조금을 지급할 경우 가입자의 저축부담은 소득의 4% 수준으로 낮다. 그리고 많은 가입자가 가입할 수 있고 정부의 재정부담 역시 줄어든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노후소득 보장 및 빈곤을 완화 효과는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공적연금 보충형의 경우 정부재정 부담이 크고 가입자의 저축 부담 역시 연소득의 9%로 높은 편으로 나타났다. 한편, 가입자의 보조금 규모가 크고 노후소득 보장 및 빈곤을 완화 효과는 함께 고려된 여타 방안에 비해 큰 것으로 예상되었다. 따라서 보조금을 지급 받기 위한 가입액과 보조금 지급 수준을 높일수록 가입자의 저축 부담과 보조금 혜택 그리고 재정 부담이 증가함과 동시에 노후소득 증가효과도 제고되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 또한 연구에서는 국민연금 가입자 모두가 공사연계연금에 가입하는 것을 전제로 분석하였으나 이는 제도의 효과를 분석하기 위한 이상적인 가정이며, 실제 제도가 도입되었을 경우 가입률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단, 우리나라에 공사연계연금을 도입할 경우에는 독일 리스터연금처럼 총 소득의 일정액을 일률적으로 정하는 방안보다는 뉴질랜드 키위플랜과 같은 방식으로 가입액 수준을 일정 범위, 예를 들면 소득의 4~9% 내에서 가입자가 정하고 보조금

수준 역시 이에 연동되는 방식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독일의 리스터연금의 경우 소득의 일정 수준 이상을 보험료로 하여 리스터연금에 가입하면 보조금은 가족 구성원의 숫자로 결정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는 리스터연금의 도입배경이 공적 연금의 감소분을 보충하기 위한 것으로서, 공적연금의 축소는 모든 소득계층에 영향을 미치므로 고소득층에도 동일한 보조금혜택을 부여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공사연계연금 도입 목적은 은퇴 이후 빈곤층으로 전락할 수 있는 국민의 안정적인 노후소득원 제공임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앞서 분석한 결과에서 공적연금 가입자 전체가 보조금을 수령할 경우 전체 재정지출의 70% 이상이 중산층 이상에 지급될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정책 목표 달성과 재정의 효율적 지출을 위해 공사연계연금 도입 시 소득계층별로 차별화된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안 역시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더하여 현재 소득수준 하위 70% 이하자에 차등적으로 지급되고 있는 기초연금은 그 대상을 점진적으로 줄여 나갈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공사연계연금에 가입할 기회가 있는 연령 계층에 대해서는 기초연금 혜택을 점진적으로 줄여 나가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2) 자동가입 적용

영국, 뉴질랜드 등에서 도입한 직장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사적연금 자동가입 제도 도입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영국의 경우 2011년부터 퇴직연금 자동가입 제도를 도입하면서 전체 소득의 8%를 퇴직연금으로 적립하되 이 중 본인이 4%, 고용주가 3% 그리고 정부가 1%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퇴직연금에 대한 정부 보조금을 지급하였다. 또한 가입을 원하지 않는 근로자의 경우 퇴직연금 가입을 거부(Opt-out)할 수 있도록 하였다.

앞서 소개한 뉴질랜드의 키위플랜 역시 정부가 보조금을 지급하고 고용주와 근로자가 함께 적립금을 납입하되, 이를 원하지 않는 가입자는 가입거부(Opt-out)를 허용하는 자동가입 제도가 함께 도입된 사례이다. 이러한 자동가입 제도 도입 이후 뉴

질랜드의 사적연금 가입률은 획기적으로 증가하였다. 우리나라 역시 보조금이 지급되는 공사연계연금에 대한 퇴직연금 가입자를 대상으로 자동가입 제도 도입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제도의 수용성 측면에서는 보조금 도입으로 인한 가입자의 편익이 크며, 가입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탈퇴가 가능하므로 제도 도입에 대한 저항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며, 기업에 퇴직연금 이외의 추가적인 부담을 요구하지 않을 경우 기업이 근로자를 대상으로 공사연계연금 가입거부를 중용할 유인은 존재하지 않는다.

3) 임의가입 허용

뉴질랜드의 키위플랜과 같이 퇴직연금 가입자 등 자동가입 대상자가 아니더라도, 공적연금 가입을 전제로 공사연계연금 임의가입을 허용할 필요가 있다. 임의가입 허용을 통해 자영업자 및 일용직 근로자 그리고 급여 소득자이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분류되지 않는 공무원 및 교원 등 퇴직연금 대상자가 아닌 국민들도 공적연금에 가입한 경우 공사연계연금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여 노후소득 보장을 위한 적립금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한다.

나. 세제적용

공사연계연금의 세제는 납입기에는 보조금 지급 및 본인부담금에 대한 세제혜택을 부여하고, 적립금 운용단계에서는 비과세하며, 연금수령 시 연금액에 대해 과세하는 EET 방식을 적용한다. 그 이유로는 첫째, 공사연계연금은 납입단계에서 보조금이 주어지므로 본인부담금에 대한 과세가 이루어져 보조금과 과세받은 본인부담금의 혼입이 이루어질 경우 수령기의 과세가 복잡해진다는 문제가 있다. 그리고 이러한 과세의 복잡성은 공사연계연금에 대한 접근성을 저해할 수 있다. 둘째로는 일반적으로 납입 시 세제혜택을 부여하는 것이 수령 시 비과세보다 더 많은 연금 납입

유인을 줄 수 있다는 부분 역시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미 리스터연금을 통해 연금 납입액에 대한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는 독일 역시 납입 시 세제혜택 및 보조금을 제공하고 은퇴 이후 수령하는 연금에 대해 과세를 하고 있다는 부분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다. 제도운영

1) 개인

공사연계연금의 가입취지가 공적연금의 부족분을 보충하기 위한 연금제도이므로 가입자격은 국민연금 가입자(임의 가입자 포함)로 하며, 총 소득의 일정부분 이상(예, 연소득의 4.5%)³⁴⁾을 가입금액(보험요율)으로 한다. 또한 보조금이 가입금액을 넘는 경우에도 일정액을 최소납입금액으로 납입해야 한다.

가입대상자 중 기존 연금저축 가입자의 공사연계연금 가입은 중복혜택을 방지하기 위해 허용하지 않되, 기존 연금저축의 공사연계연금으로 이전가입은 허용한다. 또한 연금저축과 마찬가지로 공사연계연금의 사업자는 자유롭게 이전가입이 가능하도록 한다.

공사연계연금 가입 이후 중도해지는 불가능하며, 연금 수령을 위한 최소 납입기간은 10년 이상으로 하되, 뉴질랜드의 사례처럼 제도 도입 초기 수년간은 연금수령 연령이 10년 이하로 남은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하여 최소 가입기간을 가입 시 연령과 연금수령가능 연령의 차이만큼으로 한다. 적립금 수령 방식은 종신연금으로 수령을 원칙으로 하되, 정해진 기간 동안 수령하는 확정형을 허용할 경우 국민연금 부족분을 보완하는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최소 수령기간은 20년 이상으로 한다. 독일의 리스터연금처럼 일정비율(독일의 경우 30%)은 일시금 수령을 허용하여 연금소득세로 과세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³⁵⁾

34) 4.5%는 현재 국민연금의 납입요율과 동일한 수준임.

35) 단, 한국의 정서상 고령층 노인의 목돈 수령 시 자녀에 대한 증여의 필요 및 압박이 있을 수 있으므로 일시금 수령은 최소화할 필요가 있음.

단, 중도해지 혹은 만기 일시금 수령 시에는 보조금 및 보조금을 바탕으로 발생한 모든 수익과 본인부담금에 대한 세제혜택 분을 모두 반납하며, 본인 납입금과 이로 부터 발생한 수익에 대해 기타소득세를 과세한다. 보조금 및 보조금을 바탕으로 한 수익을 환수하는 것은 가입자가 노후소득원 확충이라는 목적을 가지고 보조금을 지급한 정부와의 약속을 지키지 못하였으므로 환수하는 것이 타당하며, 본인납입금에 대한 과세는 납입 시 세제혜택을 받은 부분이므로 일시금 수령 시 과세는 과세논리상 타당하다.³⁶⁾ 수급권 보호는 공적연금에 준하도록 하여 공사연계연금의 적립금 및 이로부터 수령하는 연금은 채권추심의 대상이 될 수 없다. 가입자의 가입 금융기관 운용자산의 계열사 위탁을 제한하여 어느 한 금융기관이 도산하더라도 적립금을 보존할 수 있도록 한다.

2) 금융기관

적립금의 안전한 운용을 위해 자산 포트폴리오에 관한 안전자산 및 위험자산에 대한 투입비율과 관련한 규제를 두고, 연금 개시 시점에 가입자 및 보조금을 합산한 원본에 대한 원금을 보장한다. 앞서 제시한 바와 같이 연금수령 연령 이전에는 가입자에게 적립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사업비는 일정수준 이상으로 수취할 수 없으며 사업비의 수준은 보험, 은행, 증권 및 우체국 등 금융권별 연금저축 수수료 체계를 참고하여, 연금저축 이상의 수수료를 수취할 수 없도록 한다. 그리고 공사연금 가입자에게 계약 체결비용 및 유지보수 비용 등의 수수료 정보를 명확하고 알기 쉽게 제공해야 한다. 또한 위험자산 투자에 앞서 투자자의 위험자산 투자에 관한 적격성 검사를 실시해야 하며, 일정 개수 이상의 포트폴리오를 비교한 투자 안을 가입자에게 제시하여 투자자가 여러 투자 안을 비교 후 본인의 연금자산 포트폴리오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

36) 납입 시 본인 부담금에 대해 과세가 제외되는 소득공제를 받은 것이 아니라 세액공제를 받은 것이므로 일시금으로 인출할 경우에도 납입 시 적용받은 세액공제를 만큼만 환수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을 수 있으나 이에 대한 논의는 본 보고서의 논의를 벗어나므로 과세율에 관한 추가적인 논의는 생략함.

3) 정부

상품 인증기준 및 가입자격 검증 실행을 위해 공사연계연금 사무국을 개설한다. 공사연계연금 사무국은 소득검증을 위해 국세청, 퇴직연금 가입자 자동가입을 위한 고용노동부 그리고 국민연금 가입검증을 위해 복지부 등과 협업한다.

가입자는 금융기관을 통해 공사연계연계에 가입 신청 시, 가입신청서와 국민연금 가입 확인서, 소득수준 확인을 위한 납세 자료 그리고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를 제출한다. 징구한 서류의 국민연금 가입 및 소득사항은 공사연계연금 사무국으로 전산을 통해 전달되며, 공사연계연금 사무국은 이를 해당 부서와 연계하여 검증한다. 검증이 완료되면 가입자의 해당 월 납입금 납입여부를 확인 후 가입자의 계좌로 보조금을 입금한다. 국세청 연말정산 혹은 종합소득세 신고 자료와 연계하여, 가입자의 소득수준 및 부양가족 현황을 검증하여 매해 보조금 수령액을 조정한다.

2. 소결

우리나라의 노인빈곤율은 높은 수준이며 노후소득 보장을 위한 연금강화가 필요하다. 지금까지 조사 및 분석한 바에 따르면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 선진국은 공적연금 강화보다는 사적연금을 강화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방법으로는 세제혜택 강화 및 보조금 지급 등이 대표적인 방법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본 장에서는 우리나라에 보조금 지급을 주요 지원책으로 하는 공사연계연금을 도입할 경우 고려해야 할 사항들을 논의하였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보조금 지급의 수준은 정부 정책의 우선순위에 따라 제도의 도입 및 지원금 수준이 결정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높은 노인빈곤율과 노후대비 정도를 감안했을 때 기존의 세제혜택을 뛰어넘는 파격적인 보조금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제도의 전달주체인 금융기관과 가입주체인 개인에 일정수준의 인증조건 및 규제를 부과하여 투입된 재정과 납입된 연금자산이 노후소득 보장에 활용되도록 한다는 원칙이 지켜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V. 결론

우리 국민의 안정적인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서 3층 연금체계가 충분히 제 기능을 해야 함은 재론의 여지가 없을 것이다. 1층의 국민연금과 2층의 퇴직연금은 가입 대상자를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하여 제도적으로 노후를 위한 준비를 하도록 하였다. 하지만 국민연금과 퇴직연금을 통해 준비할 수 있는 노후소득원은 충분하지 않으며, 그 부족분을 사적연금을 통해 보완해야 한다는 주장은 이미 많은 선행연구를 통해 논의되고 학계 및 정치권에서 받아들여지고 있다. 하지만 노후소득 보장에 있어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연금저축의 가입률 및 납입액은 아직 낮은 수준이며, 특히 충분한 자산이 있어 노후소득에 대한 걱정이 필요없는 고소득 및 자산가 계층에 비해 중산층 및 저소득층은 연금소득원 확보가 절실하다. 하지만 현재 세금을 깎아주는 세액공제 방식으로는 근로소득자의 절반에 이르는 저소득 면세점 이하자에게는 아무런 연금저축 납입유인을 제공할 수 없다.

물론 중·저소득층에 집중된 보조금 지급에 대한 당위성에 대해 의문을 가질 수 있지만, 고소득층의 직업안정성, 납입보험료에 대한 세제혜택의 정도, 평균수명 등을 다각적으로 고려할 때 소득수준에 따른 공적연금의 수익비를 비교할 경우 명목상의 소득재분배 정도를 하회하는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중·저소득층을 고려한 보조금 지급 제도 도입은 노후소득 보장을 위한 사회안전망 강화 차원에서 이해할 수 있다.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중산층 및 저소득층에 대한 실질적인 연금저축 납입유인을 제공하기 위한 방안으로 독일 등에서 시행되고 있는 연금저축 납입액에 대한 보조금 지급 제도 도입에 관한 분석을 실행하였다.

연구결과 공적연금이 목표로 하고 있는 소득대체율을 충족시키기 위한 수준의 공

사연계연금을 설계하여 보조금을 지급하고, 모든 공적연금 가입자가 공사연계연금에 추가적으로 가입할 경우(다른 조건이 동일하다고 할 때) 노인빈곤율은 최대 6%p 감소할 것으로 나타났으며, 빈곤층이 아닌 중산층의 노후소득 역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동 정책의 도입으로 인해 유인되는 추가적으로 적립되는 연금자산은 재정지출 2~3배 수준이 될 것으로 보이며, 재정지출로 인해 축적된 자산으로 인한 빈곤감소 효과는 기초연금의 효과보다 훨씬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장기적 관점에서 공사연계연금 도입을 통한 보조금의 지급은 노인빈곤율을 줄일 수 있는 정책수단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동 제도의 도입을 위해서는 연금상품의 전달을 위한 민간과 가입자격 및 보조금 지급 등을 위한 정부의 협업이 필요하다. OECD 국가 중 고령화 속도가 가장 빠른 우리나라에서 충분한 노후준비를 하기 위해서는 연금자산의 확대가 매우 중요하다. 하지만 공적부분에서 이를 충족시키는 것은 매우 어렵기 때문에 공적영역이 축소되고 사적영역이 확대되고 있는 것은 세계적인 추세이다. 향후 정책도입 과정에서 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한 공사협력에 많은 고민과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참고문헌

- 강성호(2015), 「노후준비실태와 필요노후소득, 그리고 과제」, 『고령화리뷰』, 2014년 제4호, 테마진단, 보험연구원.
- 강성호·류건식(2016), 「공·사연계연금 도입 필요성과 설계방향」, 『KiRi Report』, 제395호.
- 강성호·정봉은·김유미(2016), 「정년연장의 노후소득 개선 효과와 개인연금의 정책방향」, 정책보고서, 보험연구원.
- 국세통계연보(2016).
- 김병권·우석진·안종길·빈기범(2013), 「세제혜택이 가계의 연금저축 행태에 미치는 인과적 효과」, 『사회보장연구』, 제29권 제3호, 한국사회보장학회, pp. 53~79.
- 김영미(2014), 「독일 자영업자의 노후소득보장제도에 대한 고찰」, 『법학논고』, 46: pp. 406~430.
- 김원섭(2016), “독일 리스터연금 제도의 평가와 시사점”, 한국연금학회 2016년 춘계 학술대회 발표문.
- 김원섭·강성호(2008),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개인연금 활성화 정책에 관한 연구」, 『사회복지정책』, 제32집, pp. 261~292.
- 김원식·김재현·김우철·김상봉(2016), “우리나라 사적연금세제의 정책방향”, 한국연금학회 2016년 춘계학술 대회 발표자료.
- 류건식·강성호·김동겸(2017), 「자영업자를 위한 소득보장체계 구축방안」, 연구보고서, 보험연구원.
- 류건식·이상우(2011), 「저소득층을 위한 개인연금 보조금 지원정책 방향」, 『KiRi Weekly』, 보험연구원.
- 문성훈·김수성(2014), 「연금소득공제의 세액공제 전환이 연금세제에 미치는 영향」, 『세무학연구』, 제31권 제4호.
- 문성훈·정원석·박종상(2015), “사적연금 세제 개선방안”, 금융위원회.
- 보건복지부 보도 설명자료(2013), “기초연금 도입 계획”.

- 이용하·김원섭(2013), 「인수위 기초연금 도입(안)에 대한 평가와 전망」, 『재사회보 장연구』, 제29권 제2호, 한국사회보장학회, pp. 1~25.
- 정원석(2016), 「세액공제 제도 도입 이후 연금저축 행태변화」, 『KiRi Weekly』, 보험연구원.
- _____(2017), 「연금저축 감소 원인과 시사점」, 『KiRi Weekly』, 보험연구원.
- 정원석·강성호(2015), 「연금과세 체계변화에 따른 소득계층별 연금저축 가입효과 분석」, 『재정학연구』, 제8권 제2호, 한국재정학회, pp. 113~142.
- 정원석·김미화(2015), 「고령화에 대응한 생애자산관리 서비스 활성화 방안」, 조사 자료집, 보험연구원.
- 정원석·마지혜(2017), 「소득세제 개편 이후 연금저축 납입 추이와 시사점」, 『KiRi Weekly』, 보험연구원.
- 정원석·문성훈(2016), 「연금저축 세액공제 전환에 따른 소득계층별 사적연금 가입 행태 변화」, 『세무와 회계저널』, 제17권 4호, 한국세무학회.
- 조재훈·양성문(2013), 「정부지원개인연금 도입 효과분석」, 『보험학회지』, 제94집, 보험학회, pp. 113~144.
- 통계청(2015), 경제활동 인구조사.
- Axel Börsch-Supan, Michela Coppola and Anette Reil-Held(2012), “Riester Pensions in Germany: Design, Dynamics, Targeting Success, and Crowding In”, NBER working paper.
- Axel Börsch-Supan & Christopher Quinn(2015), “Taxing Pensions and Retirement Benefits in Germany”, CEPAR and CESifo Workshop on Taxation of Pensions.
- BMAS(Bundesministerium fuer Arbeit und Soziales)(2010). Bericht der Bundesregierung ueber die gesetzliche Rentenversicherung, insbesondere ueber die Entwicklung der Einnahmen und Ausgaben, der Nachhaltigkeitsruecklage sowie des jeweils erforderlichen Beitragssatzes in den kuenftigen 15 Kalenderjahren gemaess §154 Abs.1 und 3 SGB VI(Rentenversicherungsbericht 2010).

- BMGS(Bundesministerium fuer Gesundheit und Soziales)(2003), Nachhaltigkeit in der Finanzierung der Sozialen Sicherungssysteme. Bericht der Kommission, Berlin.
- David Law, Lisa Meehan and Grant M Scobie(2011), “KiwiSaver: An Initial Evaluation of the Impact on Retirement Saving”, New Zealand Treasury Working paper.
- Gasche, M., Bucher-Koenen, T., Haupt, M., Angstmann, S.(2013), “Die Kosten der Riester-Rente im Vergleich”, MEA 269-13.
- Geoff Rashbrooke(2010), “Matching Contributions for Pensions - New Zealand’s Experience with the KiwiSaver scheme”, Worldbank, pp.103~132.
- Geyer, J.(2011). Reister-Rente: Rezept gegen Altersarmut? in: Wochenbericht des DIW Berlin 47: pp. 16~21.
- Kornelia Hagen, Axel Kleinlein(2012), “Ten Years of the Riester Pension scheme: No Reason to Celebrate”, DIW Economic Bulletin.
- Inand Revenue(2015), “KiwiSaver evaluation: Final Summary Report: A joint agency evaluation 2007-2014”.
- OECD, pension at a glance, each year.
- _____, pension outlook, 2014.
- Oekotest(2011). Reise ins Labyrinth, 6/2011: pp. 64~97.
- Schmaechl, Winfried(2004) “Paradigm Shift in German Pension Policy”, Rein M and Schmaehl, W. 2004m Rethinking the Welfare State, Cheltenham, Edward Elgar: pp. 153~204.
- Seeleib-Kaiser(2001), Globalisierung und Sozialpolitik, Frankfurt/Main Campus.
- Stolz and Rieckhoft(2013), Die Riester-Rente im Beitragsjahr 2010: Zulageforderung erstmals fur mehr als 10 Millionen Berechtigte, in: RVaktuell 12/2013, pp. 339~347.
- 뉴질랜드 국세청(<https://www.ird.govt.nz>)
- 독일 사회 노동부(<http://www.bmas.de>)

부록 I : 소득계층별 가입률을 고려한 지원효과³⁷⁾

〈부록 표 1〉 독일 리스터연금의 연도별 · 소득계층별 가입률

(단위: %)

구분	2002	2005	2007	2009
1분위	5	10	16	25
2분위	6	19	28	26
3분위	9	24	36	46
4분위	6	24	40	45
5분위	11	21	41	51

자료: Axel Börsch-Supan et al(2010)를 참고하여 재정리함.

아래에서는 3안으로 검토했던 공적연금 보완형 공사연계연금 모델의 지원 방식을 국내 도입 시 소득계층별 가입률이 2009년 기준 독일 리스터연금의 가입률과 동일하다고 가정하여 제도 도입으로 인한 노후소득 보장효과와 재정효과를 분석하였다. 물론 제도 도입으로 인한 가입률은 제도 변화에 대한 탄력성 등을 활용하여 측정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 되겠으나, 우리나라에서는 사적연금 납입액에 대한 보조금 지급이 시행된 적이 없음을 고려하여 독일의 소득계층별 가입률을 활용하여 분석을 실행하였다.

37) 독일 리스터연금의 5분위 가입률을 활용.

1. 보조금의 탈빈곤 및 빈곤율 완화 효과

가. 계층이동 및 탈빈곤 효과

계층이동의 탈빈곤 효과는 소득분위별 대상자가 공사연계연급에 일정기간(10년, 20년 그리고 30년) 동안 가입 시 소득계층 이동이 발생하는 비율을 살펴본 것이다. 분석결과 가입률이 독일의 가입률과 동일할 경우 10년 가입 시 빈곤층의 0.2%가 빈곤층을 벗어나고, 30년 가입 시에는 0.6%가 빈곤층을 벗어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었다.

〈부록 표 2〉 보조금 지급 전후 소득계층 이동

(단위: %)

지급 후 지급 전	가입기간 10년			가입기간 20년			가입기간 30년		
	빈곤층	중산층	고소득층	빈곤층	중산층	고소득층	빈곤층	중산층	고소득층
빈곤층	99.8 (99.9)	0.2 (0.1)	0.0 (0.0)	99.7 (99.8)	0.3 (0.2)	0.0 (0.0)	99.4 (99.7)	0.6 (0.3)	0.0 (0.0)
중산층	0.0 (0.6)	98.8 (98.7)	1.2 (0.6)	0.0 (1.0)	97.4 (97.8)	2.6 (1.2)	0.0 (1.3)	95.5 (96.7)	4.5 (2.0)
고소득층	0.0 (0.0)	0.0 (1.3)	100.0 (98.7)	0.0 (0.0)	0.0 (2.8)	100.0 (97.2)	0.0 (0.0)	0.0 (4.6)	100.0 (95.4)

주: 〈표 Ⅲ-15〉의 기준과 동일함.

나. 빈곤율 개선 효과

노인빈곤율은 40년 가입 시 최대 2.5% 포인트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었다.

〈부록 표 3〉 보조금 지급에 따른 가입기간별 노인빈곤율 추정

(단위: %)

구분	2013년	가입기간			
		10년	20년	30년	40년
노인빈곤율	49.6	48.9	48.3	47.6	47.2
개선 효과	-	0.7	1.3	2.0	2.5

2. 재정부담 효과 및 평가

소득수준별 공사연계연금 가입률이 독일 수준이 될 경우 전체 지원금액은 약 4조 5천억 원이 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로 인한 개인의 저축은 10조 4천억 원이 될 것이 예상되었다. 이에 따라 전체납입보험료는 지원금액과 본인부담 보험료에서 추가세 제혜택을 차감한 13.3조 원이 될 것으로 분석되었다.

〈부록 표 4〉 보조금 지급에 따른 재정부담 효과

구분		가구 내 기본 보조금	가구 내 자녀수당	추가세제 혜택	지원금액	본인부담 보험료	전체납입 보험료
부부+2인 자녀	평균 (만 원)	40	60	28	128	195	295
	합계 (조 원)	0.5	0.8	0.4	1.7	2.6	3.9
독신가구	평균 (만 원)	20	0	36	56	224	244
	합계 (조 원)	0.2	0.0	0.3	0.5	1.9	2.0
기타	평균 (만 원)	39	19	34	92	232	290
	합계 (조 원)	1.0	0.5	0.9	2.4	5.9	7.4
전체	평균 (만 원)	36	27	33	96	220	283
	합계 (조 원)	1.7	1.3	1.6	4.5	10.4	13.3

부록 Ⅱ : 소득대체율 산출사례³⁸⁾

■ 적용소득

○ 소득(연간) : 전년도 표준소득

※ 리스터연금형(1안)에서는 유로화 환율(1,300원) 적용(소득 = 유로화 × 환율)

■ 보조금 및 보험료

○ 보조금(연간)=기본보조금+자녀수당

※ 각 안별(본문 참조)로 차이 있음.

○ 전체납입보험료(연간) = 보조금+본인부담 보험료

— 본인부담 보험료: 보조금 수준*, 최소기여** 및 최고세액공제***수준에 따라 달라짐.

* ‘소득’ 대비 ‘전체납입보험료’의 비율이 4%가 되는 수준에서 본인부담 보험료가 결정됨.

** 다만, 본인부담 보험료가 최소기여(안별로 다름)보다 적으면 최소기여액이 본인부담 보험료가 됨.

*** 전체납입보험료가 세액공제 최고액(안별로 다름)보다 많으면 세액공제 최고액과 보조금의 차액이 본인부담 보험료가 됨.

■ 적립금 및 연금액(소득대체율)

○ 적립액 = 전체납입보험료 × 가입연수

○ 연금액(연간) = 적립액 / 가입연수

○ 소득대체율=연금액/소득

38) 앞의 <표 Ⅲ-5>의 산출사례를 제시(이하 각 안별 사례도 동일하게 산출됨).

보험연구원(KIRI) 발간물 안내

※ 2017년부터 기존의 연구보고서, 정책보고서, 경영보고서, 조사보고서가 연구보고서로 통합되었습니다.

■ 연구보고서

- 2017-1 보험산업 미래 / 김석영 · 윤성훈 · 이선주 2017.2
2017-2 자동차보험 과실상계제도 개선방안 / 전용식 · 채원영 2017.2
2017-3 상호협정 관련 입법정책 연구 / 정호열 2017.2

■ 연구보고서(구)

- 2008-1 보험회사의 리스크 중심 경영전략에 관한 연구 / 최영목 · 장동식 · 김동겸 2008.1
2008-2 한국 보험시장과 공정거래법 / 정호열 2008.6
2008-3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의 자산운용 / 류건식 · 이경희 · 김동겸 2008.3
2009-1 보험설계사의 특성분석과 고능률화 방안 / 안철경 · 권오경 2009.1
2009-2 자동차사고의 사회적 비용 최소화 방안 / 기승도 2009.2
2009-3 우리나라 가계부채 문제의 진단과 평가 / 유경원 · 이해은 2009.3
2009-4 사적연금의 노후소득보장 기능제고 방안 / 류건식 · 이창우 · 김동겸 2009.3
2009-5 일반화선형모형(GLM)을 이용한 자동차보험 요율상대도 산출 방법 연구 / 기승도 · 김대환 2009.8
2009-6 주행거리에 연동한 자동차보험제도 연구 / 기승도 · 김대환 · 김혜란 2010.1
2010-1 우리나라 가계 금융자산 축적 부진의 원인과 시사점 / 유경원 · 이해은 2010.4
2010-2 생명보험 상품별 해지율 추정 및 예측 모형 / 황진태 · 이경희 2010.5
2010-3 보험회사 자산관리서비스 사업모형 검토 / 진 익 · 김동겸 2010.7

■ 정책보고서(구)

- 2008-2 환경오염리스크관리를 위한 보험제도 활용방안 / 이기형 2008.3
2008-3 금융상품의 정의 및 분류에 관한 연구 / 유지호 · 최 원 2008.3

- 2008-4 2009년도 보험산업 전망과 과제 / 이진면 · 이태열 · 신중협 · 황진태 · 유진아 · 김세환 · 이정환 · 박정희 · 김세중 · 최이섭 2008.11
- 2009-1 현 금융위기 진단과 위기극복을 위한 정책제언 / 진 익 · 이민환 · 유경원 · 최영목 · 최형선 · 최 원 · 이경아 · 이해은 2009.2
- 2009-2 퇴직연금의 급여 지급 방식 다양화 방안 / 이경희 2009.3
- 2009-3 보험분쟁의 재판외적 해결 활성화 방안 / 오영수 · 김경환 · 이종욱 2009.3
- 2009-4 2010년도 보험산업 전망과 과제 / 이진면 · 황진태 · 변혜원 · 이경희 · 이정환 · 박정희 · 김세중 · 최이섭 2009.12
- 2009-5 금융상품판매전문회사의 도입이 보험회사에 미치는 영향 / 안철경 · 변혜원 · 권오경 2010.1
- 2010-1 보험사기 영향요인과 방지방안 / 송윤아 2010.3
- 2010-2 2011년도 보험산업 전망과 과제 / 이진면 · 김대환 · 이경희 · 이정환 · 최 원 · 김세중 · 최이섭 2010.12
- 2011-1 금융소비자 보호 체계 개선방안 / 오영수 · 안철경 · 변혜원 · 최영목 · 최형선 · 김경환 · 이상우 · 박정희 · 김미화 2010.4
- 2011-2 일반공제사업 규제의 합리화 방안 / 오영수 · 김경환 · 박정희 2011.7
- 2011-3 퇴직연금 적립금의 연금전환 유도방안 / 이경희 2011.5
- 2011-4 저출산 · 고령화와 금융의 역할 / 윤성훈 · 류건식 · 오영수 · 조용운 · 진 익 · 유진아 · 변혜원 2011.7
- 2011-5 소비자 보호를 위한 보험유통채널 개선방안 / 안철경 · 이경희 2011.11
- 2011-6 2012년도 보험산업 전망과 과제 / 윤성훈 · 황진태 · 이정환 · 최 원 · 김세중 · 오병국 2011.12
- 2012-1 인적사고 보험금의 지급방식 다양화 방안 / 조재린 · 이기형 · 정인영 2012.8
- 2012-2 보험산업 진입 및 퇴출에 관한 연구 / 이기형 · 변혜원 · 정인영 2012.10
- 2012-3 금융위기 이후 보험규제 변화 및 시사점 / 임준환 · 유진아 · 이경아 2012.11
- 2012-4 소비자중심의 변액연금보험 개선방안 연구: 공시 및 상품설계 개선을 중심으로 / 이기형 · 임준환 · 김해식 · 이경희 · 조영현 · 정인영 2012.12
- 2013-1 생명보험의 자살면책기간이 자살에 미치는 영향 / 이창우 · 윤상호 2013.1
- 2013-2 퇴직연금 지배구조체계 개선방안 / 류건식 · 김대환 · 이상우 2013.1

- 2013-3 2013년도 보험산업 전망과 과제 / 윤성훈 · 전용식 · 이정환 · 최 원 · 김세중 · 채원영 2013.2
- 2013-4 사회안전망 체제 개편과 보험산업 역할 / 진 익 · 오병국 · 이성은 2013.3
- 2013-5 보험지주회사 감독체계 개선방안 연구 / 이승준 · 김해식 · 조재린 2013.5
- 2013-6 2014년도 보험산업 전망과 과제 / 윤성훈 · 전용식 · 최 원 · 김세중 · 채원영 2013.12
- 2014-1 보험시장 경쟁정책 투명성 제고방안 / 이승준 · 강민규 · 이해량 2014.3
- 2014-2 국내 보험회사 지급여력규제 평가 및 개선방안 / 조재린 · 김해식 · 김석영 2014.3
- 2014-3 공 · 사 사회안전망의 효율적인 역할 제고 방안 / 이태열 · 강성호 · 김유미 2014.4
- 2014-4 2015년도 보험산업 전망과 과제 / 윤성훈 · 김석영 · 김진익 · 최 원 · 채원영 · 이아름 · 이해량 2014.11
- 2014-5 의료보장체계 합리화를 위한 공 · 사 건강보험 협력방안 / 조용운 · 김경환 · 김미화 2014.12
- 2015-1 보험회사 재무건전성 규제-IFRS와 RBC 연계방안 / 김해식 · 조재린 · 이경아 2015.2
- 2015-2 2016년도 보험산업 전망과 과제 / 윤성훈 · 김석영 · 김진익 · 최 원 · 채원영 · 이아름 · 이해량 2015.11
- 2016-1 정년연장의 노후소득 개선 효과와 개인연금의 정책방향 / 강성호 · 정봉은 · 김유미 2016.2
- 2016-2 국민건강보험 보장률 인상 정책 평가: DSGE 접근법 / 임태준 · 이정택 · 김혜란 2016.11
- 2016-3 2017년도 보험산업 전망과 과제 / 동향분석실 2016.12

■ 경영보고서(구)

- 2009-1 기업휴지보험 활성화 방안 연구 / 이기형 · 한상용 2009.3
- 2009-2 자산관리서비스 활성화 방안 / 진 익 2009.3
- 2009-3 탄소시장 및 녹색보험 활성화 방안 / 진 익 · 유시용 · 이경아 2009.3
- 2009-4 생명보험회사의 지속가능성장에 관한 연구 / 최영목 · 최 원 2009.6
- 2010-1 독립판매채널의 성장과 생명보험회사의 대응 / 안철경 · 권오경 2010.2
- 2010-2 보험회사의 윤리경영 운영실태 및 개선방안 / 오영수 · 김경환 2010.2
- 2010-3 보험회사의 퇴직연금사업 운영전략 / 류건식 · 이창우 · 이태우 2010.3

- 2010-4(1) 보험환경변화에 따른 보험산업 성장방안 / 산업연구실 · 정책연구실 · 동향분석실 2010.6
- 2010-4(2) 종합금융서비스를 활용한 보험산업 성장방안 / 금융제도실 · 재무연구실 2010.6
- 2010-5 변액보험 보증리스크관리연구 / 권용재 · 장동식 · 서성민 2010.4
- 2010-6 RBC 내부모형 도입 방안 / 김해식 · 최영목 · 김소연 · 장동식 · 서성민 2010.10
- 2010-7 금융보증보험 가격결정모형 / 최영수 2010.7
- 2011-1 보험회사의 비대면채널 활용방안 / 안철경 · 변혜원 · 서성민 2011.1
- 2011-2 보증보험의 특성과 리스크 평가 / 최영목 · 김소연 · 김동겸 2011.2
- 2011-3 충성도를 고려한 자동차보험 마케팅전략 연구 / 기승도 · 황진태 2011.3
- 2011-4 보험회사의 상조서비스 기여방안 / 황진태 · 기승도 · 권오경 2011.5
- 2011-5 사기성클레임에 대한 최적조사방안 / 송윤아 · 정인영 2011.6
- 2011-6 민영의료보험의 보험리스크관리방안 / 조용운 · 황진태 · 김미화 2011.8
- 2011-7 보험회사의 개인형 퇴직연금 운영방안 / 류건식 · 김대환 · 이상우 2011.9
- 2011-8 퇴직연금시장의 환경변화에 따른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운영방안 / 김대환 · 류건식 · 이상우 2011.10
- 2012-1 국내 생명보험회사의 기업공개 평가와 시사점 / 조영현 · 전용식 · 이해은 2012.7
- 2012-2 보험산업 비전 2020 : ㉠ sure 4.0 / 진 익 · 김동겸 · 김혜란 2012.7
- 2012-3 현금흐름방식 보험료 산출의 시행과 과제 / 김해식 · 김석영 · 김세영 · 이해은 2012.9
- 2012-4 보험회사의 장수리스크 발생원인과 관리방안 / 김대환 · 류건식 · 김동겸 2012.9
- 2012-5 은퇴가구의 경제형태 분석 / 유경원 2012.9
- 2012-6 보험회사의 날씨리스크 인수 활성화 방안: 지수형 날씨보험을 중심으로 / 조재린 · 황진태 · 권용재 · 채원영 2012.10
- 2013-1 자동차보험시장의 가격경쟁이 손해율에 미치는 영향과 시사점 / 전용식 · 채원영 2013.3
- 2013-2 중국 자동차보험 시장점유율 확대방안 연구 / 기승도 · 조용운 · 이소양 2013.5
- 2016-1 뉴 노멀 시대의 보험회사 경영전략 / 임준환 · 정봉은 · 황인창 · 이해은 ·

- 김혜란 · 정승연 2016.4
- 2016-2 금융보증보험 잠재 시장 연구: 지방자치단체 자금조달 시장을 중심으로 / 최창희 · 황인창 · 이경아 2016.5
- 2016-3 퇴직연금시장 환경변화와 보험회사 대응방안 / 류건식 · 강성호 · 김동겸 2016.5

■ 조사보고서(구)

- 2008-1 보험회사 글로벌화를 위한 해외보험시장 조사 / 양성문 · 김진억 · 지재원 · 박정희 · 김세중 2008.2
- 2008-2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 도입에 대응한 장기간병보험 운영 방안 / 오영수 2008.3
- 2008-3 2008년 보험소비자 설문조사 / 안철경 · 기승도 · 이상우 2008.4
- 2008-4 주요국의 보험상품 판매권유 규제 / 이상우 2008.3
- 2009-1 2009년 보험소비자 설문조사 / 안철경 · 이상우 · 권오경 2009.3
- 2009-2 Solvency II의 리스크 평가모형 및 측정 방법 연구 / 장동식 2009.3
- 2009-3 이슬람 보험시장 진출방안 / 이진면 · 이정환 · 최이섭 · 정중영 · 최태영 2009.3
- 2009-4 미국 생명보험 정산거래의 현황과 시사점 / 김해식 2009.3
- 2009-5 헤지펀드 운용전략 활용방안 / 진 익 · 김상수 · 김종훈 · 변귀영 · 유시용 2009.3
- 2009-6 복합금융 그룹의 리스크와 감독 / 이민환 · 전선애 · 최 원 2009.4
- 2009-7 보험산업 글로벌화를 위한 정책적 지원방안 / 서대교 · 오영수 · 김영진 2009.4
- 2009-8 구조화금융 관점에서 본 금융위기 분석 및 시사점 / 임준환 · 이민환 · 윤건용 · 최 원 2009.7
- 2009-9 보험리스크 측정 및 평가 방법에 관한 연구 / 조용운 · 김세환 · 김세중 2009.7
- 2009-10 생명보험계약의 효력상실 · 해약분석 / 류건식 · 장동식 2009.8
- 2010-1 과거 금융위기 사례분석을 통한 최근 글로벌 금융위기 전망 / 신중협 · 최형선 · 최 원 2010.3
- 2010-2 금융산업의 영업행위 규제 개선방안 / 서대교 · 김미화 2010.3

- 2010-3 주요국의 민영건강보험의 운영체제와 시사점 / 이창우 · 이상우 2010.4
- 2010-4 2010년 보험소비자 설문조사 / 변혜원 · 박정희 2010.4
- 2010-5 산재보험의 운영체제에 대한 연구 / 송윤아 2010.5
- 2010-6 보험산업 내 공정거래규제 조화방안 / 이승준 · 이종욱 2010.5
- 2010-7 보험종류별 진료수가 차등적용 개선방안 / 조용운 · 서대교 · 김미화 2010.4
- 2010-8 보험회사의 금리위험 대응전략 / 진 익 · 김해식 · 유진아 · 김동겸 2011.1
- 2010-9 퇴직연금 규제체계 및 정책방향 / 류건식 · 이창우 · 이상우 2010.7
- 2011-1 생명보험설계사 활동실태 및 만족도 분석 / 안철경 · 황진태 · 서성민 2011.6
- 2011-2 2011년 보험소비자 설문조사 / 김대환 · 최 원 2011.5
- 2011-3 보험회사 녹색금융 참여방안 / 진 익 · 김해식 · 김혜란 2011.7
- 2011-4 의료시장 변화에 따른 민영실손의료보험의 대응 / 이창우 · 이기형 2011.8
- 2011-5 아세안 주요국의 보험시장 규제제도 연구 / 조용운 · 변혜원 · 이승준 · 김경환 · 오병국 2011.11
- 2012-1 2012년 보험소비자 설문조사 / 황진태 · 전용식 · 윤상호 · 기승도 · 이상우 · 최 원 2012.6
- 2012-2 일본의 퇴직연금제도 운영체제 특징과 시사점 / 이상우 · 오병국 2012.12
- 2012-3 솔벤시 II 의 보고 및 공시 체계와 시사점 / 장동식 · 김경환 2012.12
- 2013-1 2013년 보험소비자 설문조사 / 전용식 · 황진태 · 변혜원 · 정원석 · 박선영 · 이상우 · 최 원 2013.8
- 2013-2 건강보험 진료비 전망 및 활용방안 / 조용운 · 황진태 · 조재린 2013.9
- 2013-3 소비자 신뢰 제고와 보험상품 정보공시 개선방안 / 김해식 · 변혜원 · 황진태 2013.12
- 2013-4 보험회사의 사회적 책임 이행에 관한 연구 / 변혜원 · 조영현 2013.12
- 2014-1 주택연금 연계 간병보험제도 도입 방안 / 박선영 · 권오경 2014.3
- 2014-2 소득수준을 고려한 개인연금 세제 효율화방안: 보험료 납입단계의 세제방식 중심으로 / 정원석 · 강성호 · 이상우 2014.4
- 2014-3 보험규제에 관한 주요국의 법제연구: 모집채널, 행위 규제 등을 중심으로 / 한기정 · 최준규 2014.4
- 2014-4 보험산업 환경변화와 판매채널 전략 연구 / 황진태 · 박선영 · 권오경 2014.4

- 2014-5 거시경제 환경변화의 보험산업 파급효과 분석 / 전성주 · 전용식 2014.5
- 2014-6 국내경제의 일본식 장기부진 가능성 검토 / 전용식 · 윤성훈 · 채원영 2014.5
- 2014-7 건강생활관리서비스 사업모형 연구 / 조용운 · 오승연 · 김미화 2014.7
- 2014-8 보험개인정보 보호법제 개선방안 / 김경환 · 강민규 · 이해량 2014.8
- 2014-9 2014년 보험소비자 설문조사 / 전용식 · 변혜원 · 정원석 · 박선영 · 오승연 · 이상우 · 최 원 2014.8
- 2014-10 보험회사 수익구조 진단 및 개선방안 / 김석영 · 김세중 · 김혜란 2014.11
- 2014-11 국내 보험회사의 해외사업 평가와 제언 / 전용식 · 조영현 · 채원영 2014.12
- 2015-1 보험민원 해결 프로세스 선진화 방안 / 박선영 · 권오경 2015.1
- 2015-2 재무건전성 규제 강화와 생명보험회사의 자본관리 / 조영현 · 조재린 · 김혜란 2015.2
- 2015-3 국내 배상책임보험 시장 성장 저해 요인 분석 -대인사고 손해배상액 산정 기준을 중심으로 - / 최창희 · 정인영 2015.3
- 2015-4 보험산업 신뢰도 제고 방안 / 이태열 · 황진태 · 이선주 2015.3
- 2015-5 2015년 보험소비자 설문조사 / 동향분석실 2015.8
- 2015-6 인구 및 가구구조 변화가 보험 수요에 미치는 영향 / 오승연 · 김유미 2015.8
- 2016-1 경영환경 변화와 주요 해외 보험회사의 대응 전략 / 전용식 · 조영현 2016.2
- 2016-2 시스템리스크를 고려한 복합금융그룹 감독방안 / 이승준 · 민세진 2016.3
- 2016-3 저성장 시대 보험회사의 비용관리 / 김해식 · 김세중 · 김현경 2016.4
- 2016-4 자동차보험 해외사업 경영성과 분석과 시사점 / 전용식 · 송윤아 · 채원영 2016.4
- 2016-5 금융 · 보험세제연구: 집합투자기구, 보험 그리고 연금세제를 중심으로 / 정원석 · 임 준 · 김유미 2016.5
- 2016-6 가용자본 산출 방식에 따른국내 보험회사 지급여력 비교 / 조재린 · 황인창 · 이경아 2016.5
- 2016-7 해외 사례를 통해 본 중 · 소형 보험회사의 생존전략 / 이태열 · 김해식 · 김현경 2016.5
- 2016-8 생명보험회사의 연금상품 다양화 방안: 종신소득 보장기능을 중심으로 / 김세중 · 김혜란 2016.6
- 2016-9 2016년 보험소비자 설문조사 / 동향분석실 2016.8
- 2016-10 자율주행자동차 보험제도 연구 / 이기형 · 김혜란 2016.9

■ 조사자료집

- 2014-1 보험시장 자유화에 따른 보험산업 환경변화 / 최 원 · 김세중 2014.6
 2014-2 주요국 내부자본적정성 평가 및 관리 제도 연구—Own Risk and Solvency Assessment— / 장동식 · 이정환 2014.8
 2015-1 고령층 대상 보험시장 현황과 해외사례 / 강성호 · 정원석 · 김동겸 2015.1
 2015-2 경증치매자 보호를 위한 보험사의 치매신탁 도입방안 / 정봉은 · 이선주 2015.2
 2015-3 소비자 금융이해력 강화 방안: 보험 및 연금 / 변혜원 · 이해량 2015.4
 2015-4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세계경제의 구조적 변화 / 박대근 · 박춘원 · 이항용 2015.5
 2015-5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주택연금 활성화 방안 / 전성주 · 박선영 · 김유미 2015.5
 2015-6 고령화에 대응한 생애자산관리 서비스 활성화 방안 / 정원석 · 김미화 2015.5
 2015-7 일반 손해보험 요율제도 개선방안 연구 / 김석영 · 김혜란 2015.12

■ 연차보고서

- 제 1 호 2008년 연차보고서 / 보험연구원 2009.4
 제 2 호 2009년 연차보고서 / 보험연구원 2010.3
 제 3 호 2010년 연차보고서 / 보험연구원 2011.3
 제 4 호 2011년 연차보고서 / 보험연구원 2012.3
 제 5 호 2012년 연차보고서 / 보험연구원 2013.3
 제 6 호 2013년 연차보고서 / 보험연구원 2013.12
 제 7 호 2014년 연차보고서 / 보험연구원 2014.12
 제 8 호 2015년 연차보고서 / 보험연구원 2015.12
 제 9 호 2016년 연차보고서 / 보험연구원 2017.1

■ 영문발간물

- 제 7 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2008 / KIRI, 2008.9
 제 8 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2009 / KIRI, 2009.9

제 9 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2010 / KIRI, 2010.8
제10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2011 / KIRI, 2011.10
제11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2012 / KIRI, 2012.11
제12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2013 / KIRI, 2013.12
제13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2014 / KIRI, 2014.7
제14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2015 / KIRI, 2015.7
제15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2016 / KIRI, 2016.7
제 6 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Trend 2Q FY2013 / KIRI, 2014.2
제 7 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Trend 3Q FY2013 / KIRI, 2014.5
제 8 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Trend 1Q FY2014 / KIRI, 2014.8
제 9 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Trend 2Q FY2014 / KIRI, 2014.10
제10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Trend 3Q FY2014 / KIRI, 2015.2
제11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Trend 4Q FY2014 / KIRI, 2015.4
제12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Trend 1Q FY2015 / KIRI, 2015.8

■ CEO Report

2008-1	자동차보험 물적담보 손해를 관리 방안 / 기승도 2008.6
2008-2	보험산업 소액지급결제시스템 참여 관련 주요 이슈 / 이태열 2008.6
2008-3	FY2008 수입보험료 전망 / 동향분석실 2008.8
2008-4	퇴직급여보장법 개정안의 영향과 보험회사 대응과제 / 류건식 · 서성민 2008.12
2009-1	FY2009 보험산업 수정전망과 대응과제 / 동향분석실 2009.2
2009-2	퇴직연금 예금보험요율 적용의 타당성 검토 / 류건식 · 김동겸 2009.3
2009-3	퇴직연금 사업자 관련규제의 적정성 검토 / 류건식 · 이상우 2009.6
2009-4	퇴직연금 가입 및 인식실태 조사 / 류건식 · 이상우 2009.10
2010-1	복수사용자 퇴직연금제도의 도입 및 보험회사의 대응과제 / 김대환 · 이상우 · 김혜란 2010.4
2010-2	FY2010 수입보험료 전망 / 동향분석실 2010.6
2010-3	보험소비자 보호의 경영전략적 접근 / 오영수 2010.7
2010-4	장기손해보험 보험사기 방지를 위한 보험금 지급심사제도 개선 / 김대환 · 이기형 2010.9
2010-5	퇴직금 중간정산의 문제점과 개선과제 / 류건식 · 이상우 2010.9
2010-6	우리나라 신용카드시장의 특징 및 개선논의 / 최형선 2010.11

- 2011-1 G20 정상회의의 금융규제 논의 내용 및 보험산업에 대한 시사점 / 김동겸 2011.2
- 2011-2 영국의 공동계정 운영체계 / 최형선 · 김동겸 2011.3
- 2011-3 FY2011 수입보험료 전망 / 동향분석실 2011.7
- 2011-4 근퇴법 개정에 따른 퇴직연금 운영방안과 과제 / 김대환 · 류건식 2011.8
- 2012-1 FY2012 수입보험료 전망 / 동향분석실 2012.8
- 2012-2 건강생활서비스법 제정(안)에 대한 검토 / 조용운 · 이상우 2012.11
- 2012-3 보험연구원 명사초청 보험발전 간담회 토론 내용 / 윤성훈 · 전용식 · 전성주 · 채원영 2012.12
- 2012-4 새정부의 보험산업 정책(Ⅰ): 정책공약집을 중심으로 / 이기형 · 정인영 2012.12
- 2013-1 새정부의 보험산업 정책(Ⅱ): 국민건강보험 본인부담경감제 정책에 대한 평가 / 김대환 · 이상우 2013.1
- 2013-2 새정부의 보험산업 정책(Ⅲ): 제18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제안 국정과제를 중심으로 / 이승준 2013.3
- 2013-3 FY2013 수입보험료 수정 전망 / 동향분석실 2013.7
- 2013-4 유럽 복합금융그룹의 보험사업 매각 원인과 시사점 / 전용식 · 윤성훈 2013.7
- 2014-1 2014년 수입보험료 수정 전망 / 동향분석실 2014.6
- 2014-2 인구구조 변화가 보험계약규모에 미치는 영향 분석 / 김석영 · 김세중 2014.6
- 2014-3 『보험 혁신 및 건전화 방안』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 이태열 · 조재린 · 황진태 · 송윤아 2014.7
- 2014-4 아베노믹스 평가와 시사점 / 임준환 · 황인창 · 이해은 2014.10
- 2015-1 연말정산 논란을 통해 본 소득세제 개선 방향 / 강성호 · 류건식 · 정원석 2015.2
- 2015-2 2015년 수입보험료 수정 전망 / 동향분석실 2015.6
- 2015-3 보험산업 경쟁력 제고 방안 및 이의 영향 / 김석영 2015.10
- 2016-1 금융규제 운영규정 제정 의미와 시사점 / 김석영 2016.1
- 2016-3 2016년 수입보험료 수정 전망 / 동향분석실 2016.7
- 2016-4 EU Solvency II 경과조치의 의미와 시사점 / 황인창 · 조재린 2016.7
- 2016-5 비급여 진료비 관련 최근 논의 동향과 시사점 / 정성희 · 이태열 2016.9

2017-1 보험부채 시가평가와 보험산업의 과제 / 김해식 2017.2

■ Insurance Business Report

- 26호 퇴직연금 중심의 근로자 노후소득보장 과제 / 류건식 · 김동겸 2008.2
 27호 보험부채의 리스크마진 측정 및 적용 사례 / 이경희 2008.6
 28호 일본 금융상품판매법의 주요내용과 보험산업에 대한 영향 / 이기형
 2008.6
 29호 보험회사의 노인장기요양 사업 진출 방안 / 오영수 2008.6
 30호 교차모집제도의 활용의향 분석 / 안철경 · 권오경 2008.7
 31호 퇴직연금 국제회계기준의 도입영향과 대응과제 / 류건식 · 김동겸
 2008.7
 32호 보험회사의 헤지펀드 활용방안 / 진 익 2008.7
 33호 연금보험의 확대와 보험회사의 대응과제 / 이경희 · 서성민 2008.9

■ 간행물

- 보험동향 / 연 4회
- 보험금융연구 / 연 4회

※ 2008년 이전 발간물은 보험연구원 홈페이지(<http://www.kiri.or.kr>)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도서회원 가입안내 』

회원 및 제공자료

	법인회원	특별회원	개인회원
연회비	₩ 300,000원	₩ 150,000원	₩ 150,000원
제공자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구보고서 - 정책/경영보고서 - 조사보고서 - 기타보고서 - 보험동향 - 보험금융연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구보고서 - 정책/경영보고서 - 조사보고서 - 기타보고서 - 보험동향 - 보험금융연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구보고서 - 정책/경영보고서 - 조사보고서 - 기타보고서 - 보험동향 - 보험금융연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원 주최 각종 세미나 및 공청회 자료(PDF) - 영문보고서 	-	-

※ 특별회원 가입대상 :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에 의하여 설립된 공공도서관 및 대학도서관

가입문의

보험연구원 도서회원 담당

전화 : (02) 3775-9113, 9080 팩스 : (02) 3775-9102

회비납입방법

- 무통장입금 : 국민은행 (400401-01-125198)

예금주 : 보험연구원

가입절차

보험연구원 홈페이지(www.kiri.or.kr)에 접속 후 도서회원가입신청서를 작성·등록 후 회비입금을 하시면 확인 후 1년간 회원자격이 주어집니다.

자료구입처

서울 : 보험연구원 보험자료실, 교보문고, 영풍문고, 반디앤루니스

부산 : 영광도서

저자약력

정원석

Indiana University 경제학 박사
보험연구원 연구위원
(E-mail : originalstone@kiri.or.kr)

강성호

성균관대학교 경제학 박사
보험연구원 연구위원
(E-mail : ksh0515@kiri.or.kr)

마지혜

단국대학교 법학과 석사
보험연구원 연구위원
(E-mail : majh3015@kiri.or.kr)

연구보고서 2017-4

저소득층 노후소득 보장을 위한 공사연계연금 연구

발행일 2017년 3월
발행인 한 기 정
발행처 보험연구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6길 38
화재보험협회빌딩
대표전화: (02) 3775-9000
조판및
인쇄 고려씨엔피

ISBN 979-11-85691-54-1 94320
979-11-85691-50-3 (세트)

정가 10,000원

